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7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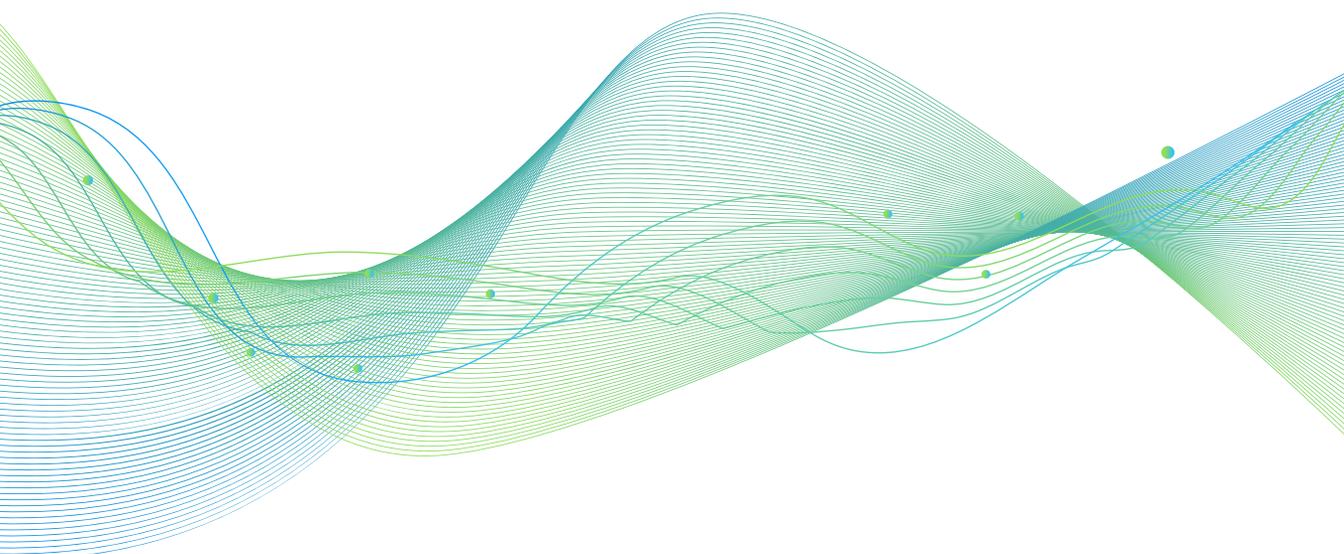


ISSN 1975-3128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인 디지털음성도서
페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nld.nl.go.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정책정보/발간자료/연간보고서'
메뉴에서 페이지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인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로고타입 자체를 간결하게 만들고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으로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조'와 '생명'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의 심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만의 정체성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로고타입과 함께 사용한 심벌은 현대성과 한국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심벌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일러두기

- 1 본문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단체를 '인권·시민사회단체'로 표기하였다.
- 2 본문에서 '월' 앞에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2021년'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 3 본문 표에서 사용된 부호 '-'의 뜻은 해당 숫자 없음(0)을 의미한다.
- 4 본문에 수록된 통계표의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을 의미하며, 특별한 경우 누계 산정기간을 명기하였다.
- 5 본문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약어표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고령자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종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자유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舊 ICC)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2008년부터 4~5년 주기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이 검토하는 제도



“스무살 인권위, 다시 함께,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2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위원회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선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옹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102건에 이르는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7만 5,948건의 상담·민원을 처리하였고, 1만 29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9,28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506건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35만 1,463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 위원회 정기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의 높은 신뢰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상황에서 노숙인, 구금·보호시설 등의 인권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진단검사나 피해 지원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외국 국적 아동 등이 받는 차별적 조치를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였고, 서울특별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확대된 경찰 수사권에 의하여 새로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논란이 컸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원회가 발간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기간제교사 경력이 공개경쟁시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인정되었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스무살 인권위”,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 2022년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 입법으로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2021년 한 해 동안의 위원회 활동 내용과 주요 결정례 등을 담아 스무 번째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간보고서가 위원회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는 유익한 자료로 쓰이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3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8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10
제4장 평가와 과제	32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45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46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46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49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71
4. 전원위원회 및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99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103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103
2. 인권증진 사업	118
제4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142
제5절 평가	153

CONTENTS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155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159
1. 인권상담	160
2. 진정 접수	165
3. 면전진정	166
4. 민원	167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169
1. 기초조사	169
2. 조정	170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71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71
2. 직권·방문조사	175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182
가. 검찰·경찰·법원	182
나. 군	186
다. 구급시설	191
라. 다수인보호시설	199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202
바. 각급 학교	211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25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25
2. 직권조사	231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23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234
나. 성희롱	238

다. 장애에 따른 차별	239
라. 나이에 따른 차별	245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247
바. 종교에 따른 차별	251
사. 병력에 따른 차별	254
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255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257
차. 혼인여부, 가족상황,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58
카.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260
타. 전과	262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264
제6절 행정심판	268
제7절 평가	269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276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79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279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281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284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96
5. 인권도서관 운영	300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305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307
제3절 평가	317

CONTENTS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32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322
1.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322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330
3. 국제회의 개최	335
제3절 평가	336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338
제2절 주요 활동	339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339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340
3. 진정사건 처리	341
4. 인권교육	345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346
제3절 평가	359

03

부록

-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67
-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84
- 3. 2021년 결산 395
- 4. 2021년 상담·진정 통계 396
- 5. 2021년 업무 총괄도 398
- 6. 2021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399
- 7. 2021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421
- 8. 위원회 간행물 422
- 9. 보도자료 425
- 10. 사진으로 보는 2021년 433
- 11. 위원회 소관 법규 441
- 12. 위원회 활동일지 445



표 목차

[표 1-1-1] 위원회 정원	5
[표 2-1-1] 최근 5년간 인권에 관한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46
[표 2-1-2] 2021년 피권고기관별 수용률 포함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	47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처리 및 권고수용현황	156
[표 2-2-2] 2021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57
[표 2-2-3]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159
[표 2-2-4] 최근 5년간 유형별 상담 현황	161
[표 2-2-5]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162
[표 2-2-6]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163
[표 2-2-7]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65
[표 2-2-8]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166
[표 2-2-9] 최근 5년간 접수 경로별 민원 처리 현황	167
[표 2-2-10]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현황	168
[표 2-2-11] 진정사건 기초조사 배정 및 종결 현황	170
[표 2-2-12]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70
[표 2-2-13]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171
[표 2-2-14]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173
[표 2-2-15] 2021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74
[표 2-2-16]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26
[표 2-2-17]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27
[표 2-2-18] 최근 5년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29
[표 2-2-19] 2021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30
[표 2-2-20]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268

[표 2-3-1]	2021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283
[표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5
[표 2-3-3]	2021년 공공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288
[표 2-3-4]	2021년 학교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289
[표 2-3-5]	2021년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291
[표 2-3-6]	최근 5년간 인권특강 운영 현황	291
[표 2-3-7]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92
[표 2-3-8]	2021년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운영 현황	293
[표 2-3-9]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현황	295
[표 2-3-10]	2021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299
[표 2-3-11]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301
[표 2-3-12]	위원회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인권도서관 홈페이지)	302
[표 2-3-13]	인권도서관 분관 장서 현황	302
[표 2-3-14]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303
[표 2-3-15]	2021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306
[표 2-3-16]	홍보 매체별 이용자 현황	310
[표 2-3-17]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명단	311
[표 2-3-18]	2021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313
[표 2-3-19]	2021년 제10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314
[표 2-3-20]	2021년 결정례 동영상	316
[표 2-4-1]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323
[표 2-4-2]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현황	324
[표 2-4-3]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현황	325
[표 2-4-4]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325
[표 2-4-5]	2021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328

CONTENTS

[표 2-5-1] 인권사무소와 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	338
[표 2-5-2]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339
[표 2-5-3]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40
[표 2-5-4]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341
[표 2-5-5] 2021년 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345



그래프 목차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160
[그래프 2-2-2]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172
[그래프 2-2-3]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 기타 제외)	228
[그래프 2-3-1]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1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3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8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10
제4장	평가와 과제	32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설립과 주요 기능

위원회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만들어졌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단체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공론화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하였고, 1999년 4월 7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3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인 2001년 11월 25일 독립적 국가기구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통해 기존의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와 서로 보완하는 준사법적 기구이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이라는 점과 파리원칙이 정한 권한과 책임, 구성과 활동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준국제기구의 성격이 있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주요 4대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기능은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 등이다. 조사·구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인권교육과 홍보 업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이고, 국내외 교류 협력 기능은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하는 업무이다.

2. 조직

인권위원회는 총 11명이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11명의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 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요 업무의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 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서 침해구제제1위원회(검·경·군·국정원·입법부·사법부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기타 인권침해 분야), 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 분야),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장애차별,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분야), 아동권리위원회(만 19세 미만 아동,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분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위원회 조직은 정무직 4명과 사무총장, 2관 3국 17과 3팀 5사무소 1출장소와 임시 조직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정원은 총 234명이고 본부 190명(정무직 4명 포함)과 소속 기관 44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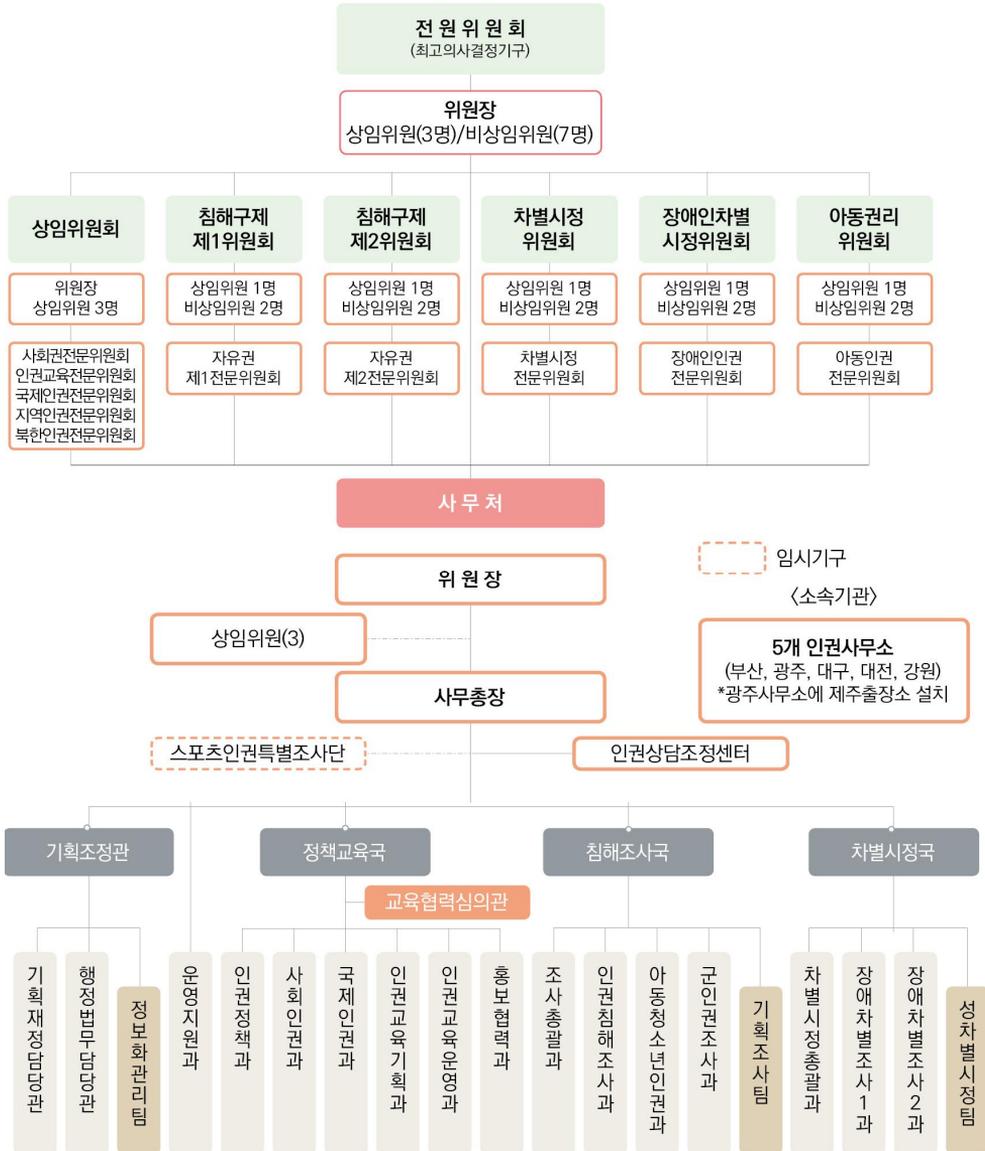
[표 1-1-1] 위원회 정원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계	234	4	6	3	19	14	57	57	44	8	20	1	1
본부	190	4	6	3	14	14	47	48	34	3	15	1	1
소속	44	-	-	-	5	-	10	9	10	5	5	-	-

■ 위원회 조직도



3. 2021년 예산

1) 경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0년(B)	증감(A-B, %)
	본예산	추경(A)		
계	37,931	37,931	36,669	3.4%
인건비	19,002	19,002	17,885	6.2%
기본경비	8,519	8,519	8,587	△0.8%
주요사업비	10,410	10,410	10,197	2.1%

2)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21년 예산	
		본예산	추경
총계		10,410	10,410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453	1,453
	① 인권의식 향상	1,138	1,138
	② 지역 인권문화 확산	315	315
인권교육 활성화		1,672	1,672
	③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672	1,67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2,372	2,372
	④ 상담 서비스 접근성 제고	160	160
	⑤ 취약 분야 인권개선	1,270	1,270
	⑥ 장애인 인권증진	637	637
	⑦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305	305
인권제도 선진화		1,542	1,542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380	1,380
	⑨ 북한인권 개선	162	162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577	1,577
	⑩ 국제교류협력	1,288	1,288
	⑪ 국내교류협력	289	289
인권위 정보화		1,794	1,794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047	1,047
	⑬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747	747



제2장 2021년 대내외 환경

위원회 설립 20주년이 된 2021년, 위원회 앞에는 기존의 인권문제와 함께 기후위기,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불거진 인권문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정보인권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과제들이 놓여 있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인권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으로 범죄 예측, 채용 면접, 자율주행 등 개인의 삶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반면,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안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2021>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을 강조하였다.

2021년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전되어 2021년 12월, 위원회에 군인권 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군인 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2022. 7. 1. 시행)이 통과되었다.

노동계에서 수년간 요구해 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2020년 위원회가 마련한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하 「평등법」) 시안에 기초한 3개 법안이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다각적

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등법」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2021년에는 형사사법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월 1일 시행되면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었고,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내 경찰 업무와 일부 수사를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오랜 진통 끝에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였다.

한편 허위·조작 정보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입법화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위원회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시대적 인권과제 수행에 앞장서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 입법으로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제3장 2021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1. 기본 방향

위원회는 2020년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5년 단위의 목표설정체계인 ‘인권 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마련하고, 3대 전략목표와 21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 이를 기반으로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또한 업무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적 대응 강화,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 인권증진행동전략 전략목표별 추진 성과

가. 급변하는 인권 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

1) 재난 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우려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방역 강화가 인권보호보다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역체계를 검토하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기본권의 보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과 노동의 불안정, 의료 공백,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 상황 시 안전취약계층의 권리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진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사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장애인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나 가족 및 보건소 등이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새롭고 범분야적 이슈인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관련 법률의 제정 등 국내 정책 동향 및 해외 판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보완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사에게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보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정보처리 신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명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인정보의 활용을 전제로 한 각종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정보인권의 보호와 증진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등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호와 증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 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안면인식기술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인권과 관련한 각계 주요 전문가로 <정보인권포럼>을 구성하여 3차에 걸쳐 운영하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유엔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제4기 인권 NAP 관련 정보인권 과제 등 정보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호트 격리 과정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거나 시설 내 노인의 생명권, 건강권, 가족 면접권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인권포럼>을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운영하며 국제사회 노인인권의 동향,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Ageism: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등) 철폐와 인식 제고 및 권리 주체인 노인의 인권증진 공론화에 활용하기 위해 노인인권에 관한 주요 문헌을 번역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고, 위원장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였다.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매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 취약한 노동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노동 취약 계층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국가 폭력이 야기한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위원장 성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위원장 환영 성명,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였다.

한편 기업과 인권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보호, 존중, 구제의 이행/ESG 시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하였다. 또한 전자 도서 <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를 발간하여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2019년 진행한 <스포츠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상종목 선수, 장애인 체육선수 및 여성 체육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더불어 83개 기관 현장점검을 포함, 286개 기관에 대한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2020년 시행한 초·중·고 학생선수 정책권고와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선수 정책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한국 사회 스포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경기대회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9개 종목의 전국대회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인권친화적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운영 관련 지침 표준안>을 마련·배포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한편 스포츠인권의식 확산을 위하여 인권사무소와 함께 지역 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은 스포츠인권의 지속적 이슈화와 스포츠계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시즌3까지 캠페인을 장기프로젝트로 추진하였고, '#즐거워야 스포츠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여 인권이 먼저인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본래 목적인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그 결과, 2021년 4,100여 명이 선서에 참가하여 2019년부터의 누적 인원은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즐거워야 스포츠다'에 동의하며 캠페인을 통해 결집한 스포츠계의 바람과 일반국민의 지지가 스포츠 현장 곳곳에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위원회는 제76차 유엔 총회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 채택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고, ‘북한인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 역량을 보강하고 다양한 북한인권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4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앞두고 <인권NAP 권고 등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국제인권기구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과제와 방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인권증진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북한인권의 개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1)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국회의 「평등법」 제정 지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별 법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권고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담은 「평등법」 제정을 위해, 위원회는 2006년 꺼졌던 불씨를 되살리는 노력을 지난 2020년부터 계속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등법」 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입법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주한대사 간담회,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콘퍼런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위원회가

마련한 「평등법」 시안에 기초한 3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¹⁾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법 발의 이후에도 「평등법」 입법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6월 21일 및 11월 10일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원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것은 물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동의 10만 국민청원 지원, 송두환 신임 위원장 취임 후 국회의장,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 당대표, 원내 대표 등 주요 인사 면담 과정에서 「평등법」 제정 협조 요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사무소(제주, 부산, 대구, 광주) 공동 시민공청회 진행 등 유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평등법」 제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자료집 <평등법 팩트 체크> 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평등법」 제정 추동 활동을 진행하였다.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 대응

위원회는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2020년 교육, 언론·미디어 영역에서의 자율 규제 대응 선언에 이어 학원·학부모·교원·학생 등을 위한 혐오차별 대응 교재 개발, UCC·만화 공모전, 학교 생활규정 정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인터넷 자율기구(KISO)의 어학사전 혐오표현 대응 협력, 표준국어대사전 장애차별적 용어 수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 홍보물에 나타난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송부하는 한편 계속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1)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2021년 6월 16일 총 24명 의원 공동발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1년 8월 9일 총 13명 공동발의),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2021년 8월 31일 총 17명 공동발의)

2)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위원회는 2021년에도 정부 정책이나 각종 법령이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권고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불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한 데 대한 정책권고,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의 공공성 강화 및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나 건강권,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인신매매·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해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환영 성명, 아프간인 관련 환영 성명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이주민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3)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혐오표현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혐오차별 예방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희롱·성적괴롭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 민원 대응,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의견표명, <성평등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젠더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1월 25일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여성가족부·경찰청 등에 권고하였고,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2018년 3월 12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젠더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여 성차별 관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성차별시정과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신설한 성차별시정팀을 2022년 2월부터 과 단위 정규 부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성평등 및 성희롱 시정 업무, 여성인권 및 성소수자 인권증진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였다.

4)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제14차 당사국 회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과제와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의견 조화에 대한 검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선택의정서 비준 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과 비준 후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해 당사자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정책 보도자료와 언론 등에 나타난 장애인 혐오·차별 조장 용어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이후 정신장애인 인권 상황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제2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정책권고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장애인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끌어내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연구 및 방향 모색 토론회>, <시각장애인의 전자결제 과정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특히 장애차별 진정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기준을 검토하고, 그 외 진정사건 판단 기준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와 함께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 지적장애인가거주시설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였다.

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아동의 학습 격차, 학력 손실 등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아동의 등교 증지는 아동의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정서 등 여러 부분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21년 아동인권 모니터링 주제를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아동 교육권 실현’으로 정하고, 정책·현장·당사자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보호자·교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교육권이 학습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아동 모두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권을 누리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및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 제도개선 권고,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으며,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의 제도적 개선 권고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아동 긴급지원금 지급 시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에 대한 평등권 침해, 외국 국적의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별 진료를 거치도록 한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강화하였다.

6)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및 국제인권기구 협력

위원회는 ‘유엔자유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의 정부 이행 현황, 유엔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심의 절차 대응 준비를 하였다. 또한 미가입 조약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위한 쟁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신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 조약²⁾ 감시기구³⁾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절차 및 심의 차수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누구나 국제 인권 자료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총 7개, 미가입 2개)

3) 각 인권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해당 조약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의제가 주목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을 주제로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하여 ‘혐오·차별 대응과 평등법 제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등 인권 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회신

위원회는 2020년 2월 26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 목록 의견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해 5월 7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 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2021년 3월 16일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쟁점 목록에 대한 항목별 답변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회신하였다.

다.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1) 조사구제 활동의 내실화

진정사건 조사

2021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1만 29건으로 전년 대비 1,013건(11.2%) 증가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활동 축소로 일부 영역의 진정접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백신접종 증명 등 방역 조치 관련 진정사건 증가,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처리 건수는 9,287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권리구제 건수는 1,172건으로 전년 대비 440건(27.3%) 감소하였고, 권리구제율도 12.6%로 전년 대비 4.7%p 하락하였다.

한편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1년 6월 ‘위원회 장기사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조사부서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장기사건을 처리해 나갔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장기사건 비율이 24.1%로 감소하고 장기사건 수도 723건으로 감소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2021년 인권침해분야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7,430건으로 전년 대비 873건(13.3%)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였던 교육기관, 경찰, 중앙행정기관 사건 수가 회복되거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6,839건으로 전년 대비 460건(7.2%) 증가하였고, 권리구제 건수 또한 695건으로 전년 대비 64건(10.1%)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권리구제율 역시 10.2%로 2020년에 비해 0.3%p 상승하였고, 2020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21년에도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어졌다. 수사권 조정 후 고소인에게 불송치 사유 미통지로 인한 알권리 침해, 해경의 북한피살 공무원 관련 수사 내용 공개, 군 복무 중 사망 병사 순직 인정 권고,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및 중징계로 인한 인권침해, 교정시설 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사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 공개, 침몰 선박에 대한 추가 심해 수색 미추진, 학생에 대한 일괄적인 자전거 통학 금지에

대한 인권침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한 권고 및 대응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에 힘을 기울였다.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2021년 차별분야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2,559건으로 전년 대비 174건 (7.3%) 증가하였다. 감염병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외부 활동 축소 등으로 장애차별 진정 접수는 2020년에 이어 연속 감소하였으나,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과 공정·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증가로 기타 사유 차별 진정이 지속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차별분야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2,410건으로 전년 대비 469건 (16.3%)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누적된 장애차별 진정 감소에 따른 처리 건수 자연감소와 더불어 2021년 처리 난도가 매우 높은 6개월 이상 장기미결 사건 처리에 주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과 달리 인용 또는 조사중해결로 처리될 수 있는 장애, 출신 국가 차별 관련 대규모 집단진정이 예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2021년 권리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2020년 대비 499건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인권이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차별 및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어졌다. 지자체의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와 혐오표현 현수막 미조치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학력을 사유로 한 임금차별 개선 권고,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미흡,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중증 지적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미보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재 거부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등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힘을 기울였다.



기획조사 강화

위원회는 인권침해 현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직권조사 7건을 개시 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 직권조사 6건을 포함하여 10건을 종결 처리하였는데, 이 중 9건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한편 방문조사는 7건을 개시 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 조사 사건을 포함하여 7건을 종결 처리하였는데, 이 중 6건에 대하여 정책 권고를 하였다.

조사 역량 강화 활동

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조사개선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매뉴얼>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더불어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조사기법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기법 그리고 해외 인권조사기구의 조사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위원회 조사에 접목하려 노력하였다.

한편 <차별사건 조사 주요 쟁점별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차별사건 조사에서 통일되고 체계적·효율적 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외에도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 연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연구 용역>, 차별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중 주요 사례⁴⁾에 대한 번역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위원회 판단 및 결정에 유의미한 참고자료를 확충하는 등 사건처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4)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no. 41288/15, 14 January 2020,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nos. 32949/17 and 34614/17, 24 October 2019 등 7건

2)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의 확산에도 공공·학교·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을 지속하였고, 각 교육과정에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예방 과목을 필수 배치해 「평등법」 제정 등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 공론화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의 인권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공공·학교·시민사회 영역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권교육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인권교육전문위원회, 한국인권교육포럼,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등 협의체계를 활성화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전문화에 힘썼다.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로 경찰의 인권 역량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로 인권교육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시의성과 활용성 높은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공공·학교·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활성화로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권 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의식 증진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섯 개의 시선>으로 시작된 14편의 인권영화 제작 프로젝트, 다양한 인권 정보와 의제를 쉽고 친근한 산문·만화·사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한 <인권>지, 시민 참여형 사업인 인권작품공모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양한 매체의 출현에 대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인권문화 콘텐츠를 보급하였다. 2018년부터 청년층이 즐겨 시청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티밍〉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생활 속 인권문제를 다룬 〈슬기로운 인권생활〉 영상 시리즈 9편을 제작하였다.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인권을 다룬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 중 우수 콘텐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함께N’에 게시되는 등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EBS 지식채널e팀과 협업하여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TV에 방영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인권 현안에 대응하여 혐오·차별 언어표현 인식개선 콘텐츠, 다양한 가족 구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과 KTX 역사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위원회의 주요한 활동으로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변화를 짚어보는 기획 홍보를 주요 언론사와 연속 기획으로 추진하였다. 격월간지 〈인권〉에서는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출범 이후 위원회 주요 권고와 그에 따른 제도·정책의 변화, 국제인권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향후 역할 등을 다뤘다.

3)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 거버넌스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 설립의 주요한 기반으로, 위원회는 설립 후 인권·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는 장애, 입양가족, 스포츠인권, 지역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1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며 일상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업무계획과 실태조사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단체의

제안 내용을 업무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위원장과 인권위원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택’ 및 ‘대체복무제 관련 교도소’ 등 인권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4)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 역량 강화

위원회는 오랜 기간 지역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모두 제정되었고, 인권업무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지정되었으며,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의 인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 주체가 각 지역에서 등장하고, 활동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8월 25일 ‘한국사회 인권 현황과 전망 -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1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지자체 인권위원, 지역인권단체 활동가, 대학인권센터 및 권리옹호기관 관계자 등 19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 주체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각 주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권사무소의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부산인권사무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와 광주인권사무소 <인권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간담회>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사무소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권업무를 발굴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며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역인권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지역인권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였다.

5)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2014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한 ‘윤일병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제시된 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제시되었고, 위원회는 국제군음부즈맨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군대의 상황과 군인권보호관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인권 보호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21대 국회에도 총 4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2021년 군내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전되어 12월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군인 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2022. 7. 1. 시행)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에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군부대 방문조사 권한(제50조의4),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에 즉시 통보 및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 요구권(제50조의6), 각하 특례(제50조의7)와 조사방법 특례(제50조의8), 피해자 보호조치(제50조의9) 등이 규정되어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여 년간의 군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권고, 조사 및 권리구제 등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군인의 인권 보호·증진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군대 내 구급시설에 대한 정기 방문조사를 통해 구급시설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을 국방부 등에 제시하였다. 또 군 훈련소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과도한 방역지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본적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진단 및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군 장병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6)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추진

위원회는 2023년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활발히 협업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권전문가·활동가 10명, 인권위원, 위원회 사무총장 등으로 제4차 인권NAP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세부 과제 검토를 위해 20개 분야(자유권·교정, 정보인권, 사회보장, 노인, 주거권, 노동권, 기후위기, 젠더폭력, 성별 격차, 가족다양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군, 아동·청소년, 재난·감염병, 국제인권, 교육, 기업과 인권, 환경권) 전문가들의 서면 자문, 10개 분야(노동권, 기후위기, 기업과 인권, 젠더폭력, 성소수자, 가족다양성, 장애인, 군, 이주, 성별격차)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추진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기존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에서 인권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통계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인권통계 생산을 통해 향후 지표(지수) 개발에 토대가 되는 국가인권통계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7)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입법 추진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회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환경 역시 급변하는 상황을 살펴볼 때, 국가 인권전담기구로서 위원회에 요구되는 시대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과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인권교육의 강화, 인권전문인력 육성 등 국가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원위원회에서 2월 22일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권위원 선임 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국가재정법상」상 독립기관 지위 명시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위원회 의견 청취, 인권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인권교육원 설치, 국가인권통계체계 도입 등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 및 군부대 방문조사 제도 신설, ‘성희롱’ 정의 규정 정비, 방문조사 시 ‘가시불청 원칙’ 도입, 진정사건 시효 연장

등 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외부와의 협력 확대를 명시하였다.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 및 군부대 방문 조사 제도는 신설되었으나, 앞으로도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및 20년사 편찬

위원회는 11월 25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표어 아래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기념식을 통해 설립 이후 2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았고,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취의 근원에는 수많은 분의 열정과 헌신,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념식을 통해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시대적 인권과제 수행에 앞장 서겠다고 선언하였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 인권 증진의 새싹이 움트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 전문가가로 구성된 필진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지난 20년간 위원회 활동과 우리 사회 인권상황 변화를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성찰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4장 · 평가와 과제

재난과 위기 상황, 급변하는 인권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위원회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가 인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위원회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불안정, 의료와 돌봄 공백, 혐오와 차별 등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전 지구적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 동향 조사,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적응 정책을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발전에 따라 침해되기 쉬운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제도 검토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과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와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회 변화와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정보인권, 노동인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대상인 청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청년 취업난, 주거문제 등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초고령 사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실태조사와 방문 조사를 연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10년 12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고 스포츠 관련 당사자들 스스로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 그 채택 및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2021년에는 <2010년 스포츠인권현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정비)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학생선수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취약종목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해외선진제도 연구결과 등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활동 성과를 집약하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를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인권친화적 경기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을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 같은 스포츠 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2021년 8월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또한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선수와 국민 모두 결과보다는 도전하는 과정에 열정과 성원을 나타내는 성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점도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겠다.

2019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존속 기간이 2023년 2월까지 연장되었으나, 스포츠계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가 중요하므로, 위원회의 상시적인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시 기구로 ‘북한인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더불어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선 과제와 방향,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에서 인권증진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참석자들과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향후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위원회는 2021년 12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 정기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의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였고,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가 국내에서 더욱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권고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미가입 협약 등의 가입을 촉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에 공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평등법」 입법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건강한 포용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해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위원회가 마련한 「평등법」 시안에 기초한 3개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교육 영역 혐오차별 자율 대응을 위한 교재 개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정부 홍보물 모니터링,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등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위원회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접근성’을 화두로 성과목표를 세운 바 있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한 인권보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장애인 인권 관련 주제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2020년에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수어 통역 제공 권고로 방송 화면에서 수어 통역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2021년에는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권고와 함께 전자정보 접근성 관련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으나, 감염병 상황 장기화의 영향으로 곳곳에 키오스크 같은 무인 단말기가 증가하는 등 자동화 가속화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2022년 업종별(공공기관, 편의점, 무인 주차장 등)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무인 단말기의 장애인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실시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정착 강화>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2009년 제1차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여간의 정신장애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현존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실태와 법과 제도에서 발견되는 차별적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제2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마련하여 권고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언론과 정부 보도자료 등 국민 인식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 환경에서 나타나는 차별·편견 글을 모니터링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년 7월, 임시조직 형태로 신설된 성차별시정팀을 2022년 2월부터 과 단위 정규 부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성평등 및 성희롱 시정 업무, 여성인권 및 성소수자 인권증진 업무를 한층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구축되었다. 지난 2021년 위원회가 다수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의견표명,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회신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실태조사를 적절히 수행하여 이를 정책권고로 연결한 점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나, 향후 <성평등포럼>을 더욱 활성화하여 좀 더 선도적이고 구체적인 성평등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페미니즘 백래시’ 또는 ‘남성 역차별’ 관련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젠더 갈등 국면에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을 토대로 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종 차별이나 혐오문제가 여전히 내재함을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나 정책·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난민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사례에서 보듯 국내외 정세에 따라 난민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지 첨예한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그 결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 보호 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 현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2021년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행되는 첫해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하여 고소사건의 불송치종결 미통지 등의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집중하여 개선을 권고하였고, 경찰 수사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인 현행범 체포 등 적법절차 관련 권리구제 권고 활동을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남용 등의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인권보호규칙」에 교육 의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 규정을 마련하여 2022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였다. 향후 경찰청이 위원회 권고 이행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잇따른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인권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침내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 군인권 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제도 정착과 군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한 것은 현재 상임위원의 산적한 업무량과 군인권보호관의 전문성 차원에서 향후 상임위원을 증원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불시방문권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작전 임무 수행 등의 사유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군인권보호관의 존재나 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중단 요구 사유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 과정과 별도로 위와 같은 법률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22~2023년 진행될 유엔자유권위원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유엔인권기구의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쟁점 목록에 대한 항목별 답변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법무부에 회신하였다. 한편 국제인권조약기구 및 유엔인권이사회가 과거 발행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인권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위원회 20년, 새로운 도약과 역할 강화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정책, 조사구제,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2021년은 위원회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환경 역시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 입법으로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하고,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인권보호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시 조직 형태의 성차별시정팀이 2022년 2월부터 과 단위 정규 부서로 전환되고, 한시 조직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존속 기간이 연장되었다. 지난 2020년 예산을 확보했던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위원회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를 편찬하였다. 아울러 11월 25일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표어 아래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기념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외부인사가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 7만 5,948건의 상담·민원을 처리하였고, 1만 29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9,28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506건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35만 1,463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102건에 이르는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2021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1만 29건으로 전년 대비 1,013건(11.2%)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활동 축소로 일부 영역의 진정접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백신접종 증명 등 방역 조치 관련 진정사건 증가,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처리 건수는 9,287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권리구제 건수는 1,172건으로 전년 대비 440건(27.3%) 감소하였고, 권리구제율도 12.6%로 전년 대비 4.7%p 하락하였다.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개시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1건(7.1%) 감소하였으나, 권리구제 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6건(66.7%) 증가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권고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반복적인 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미결 사건을 집중 처리하여 2021년 12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미결 사건 수가 전년 대비 191건(15.9%) 감소하였다.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인 진정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와 함께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진정사건 조사의 전문성 제고와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학교·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차질 없는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응하여 그간의 비대면 교육 경험을 살려 대면-비대면 교육의 통합적 실시 등 교육운영 방식 개선 모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1년은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은 해로 위원회 설립 20주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언론사에서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특집기사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기후위기와 인권 등의 현안에 대한 위원회 결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문지면 반영 및 방송사 뉴스 제작을 유도하는 등 기획보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과 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전통 방식 홍보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인권>지, 웹드라마, 인권 캠페인 동영상, 결정례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접근 채널을 다양화하여 조회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혐오의식이 팽배해진 사회환경에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하여 내외부 협의를 강화하고, 혐오차별 예방과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온라인상에서의 인권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인권단체의 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후원, 축사 등 다양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시민사회 등 외부와 소통하며 일상적 협력체계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계획과 실태조사 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였다. 앞으로 인권현장 방문 등 인권 현안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인권옹호자회의’ 참여 대상을 지자체 인권위원, 지역인권단체 활동가, 대학인권센터 및 권리옹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인권옹호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1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45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55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76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320
제5장	인권사무소	33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1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2021년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2020년보다 1건 많은 26건이고, 의견표명은 76건으로 2020년 대비 17.4%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9년보다 많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2021년에도 위원회는 인권 현안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21년까지 정책권고 누적 권고수용률은 87.2% 이고, 2020년(87.5%)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권고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1] 최근 5년간 인권에 관한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정책권고					수용률(%)			의견 표명	의견 제출
		소계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전체 수용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누 계	1,096	439	210	157	54	19	87.2	49.9	37.3	627	30
2021	102	26	6	3	-	18	100.0	66.7	33.3	76	-
2020	118	25	10	11	3	1	87.5	41.7	45.8	92	1
2019	102	25	7	16	2	-	92.0	28.0	64.0	75	2
2018	63	28	15	11	2	-	92.9	53.6	39.3	32	3
2017	64	30	20	10	-	-	100.0	66.7	33.3	33	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통계작성기준 전부수용률은 (전부수용)/(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100

일부수용률은 (일부수용)/(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100

전체수용률은 (전부수용+일부수용)/(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100

※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지침」(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09호)에 따라, 수용률 계산에 있어 '검토중'인 사안은 제외

2021년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피권고기관은 법무부 15건(전년 16건), 보건복지부 15건(전년 16건), 국회 7건(전년 11건), 국방부 6건(전년 2건), 교육부 5건(전년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주, 교정, 장애, 아동 등 위원회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많은 권고와 의견표명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정책권고의 경우 보건복지부 7건, 법무부 5건으로 다른 기관 대비 정책권고 건수도 많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 권고 및 의견표명이 2건으로 전년 11건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6건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지속적으로 5건의 권고 및 의견표명이 있다.

[표 2-1-2] 2021년 피권고기관별 수용률 포함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단위: 건, %)

대표 피권고기관	계	권고						수용률(%)			의견 표명	의견 제출
		계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소계	전부	일부			
							소계	전부	일부			
합	계	126	43	11	1	1	31	92.3	84.6	7.7	83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1	-	-	-	-	-	-	-	-	-	1	-
검찰청	3	-	-	-	-	-	-	-	-	-	3	-
경찰청	3	-	-	-	-	-	-	-	-	-	3	-
교육부	5	3	1	-	1	1	50	50	-	-	2	-
교육청	4	2	1	-	-	1	100	100	-	-	2	-
국무총리	3	2	-	-	-	2	-	-	-	-	1	-
국방부	6	1	-	-	-	1	-	-	-	-	5	-
국토교통부	1	-	-	-	-	-	-	-	-	-	1	-
국회	7	1	-	-	-	1	-	-	-	-	6	-
기획재정부	1	-	-	-	-	-	-	-	-	-	1	-



대표 피권고기관	계	권고						수용률(%)			의견 표명	의견 제출
		계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소계	전부	일부			
대 통 령	2	-	-	-	-	-	-	-	-	2	-	
문화체육관광부	3	2	1	-	-	1	100	100	-	1	-	
방송통신위원회	2	-	-	-	-	1	-	-	-	2	-	
법 무 부	15	5	-	-	-	5	-	-	-	10	-	
법원행정처 등	3	-	-	-	-	-	-	-	-	3	-	
병 무 청	1	-	-	-	-	-	-	-	-	1	-	
보 건 복 지 부	15	7	2	-	-	5	100	100	-	8	-	
여 성 가 족 부	3	1	-	-	-	1	-	-	-	2	-	
외 교 부	1	-	-	-	-	-	-	-	-	1	-	
중앙선거관리 위 원 회	1	1	-	-	-	1	-	-	-	-	-	
중앙재난안전 대 책 본 부	1	1	-	-	-	1	-	-	-	-	-	
통 계 청	1	1	-	-	-	1	-	-	-	-	-	
해 양 경 찰 청	1	1	-	-	-	1	-	-	-	-	-	
해 양 수 산 부	1	1	-	-	-	1	-	-	-	-	-	
행 정 안 전 부	2	2	-	-	-	2	-	-	-	-	-	
통 일 부	1	-	-	-	-	-	-	-	-	1	-	
기 타	39	12	6	1	-	5	100	85.7	14.3	27	-	

※ 기타: 지방자치단체(14), 사기업(7), 개별 학교(4), 공공기관 및 협회(11), 지역의회(2), 시설(1)

※ 권고·의견표명의 피권고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대표권고기관과 모든 피권고기관 포함

법무부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국가기관의 검사 신규임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 대한 정책권고, 교도소의 부당한 징벌, 구금시설 화장실 시설 및 처우 등 교정시설 관련 의견표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 관련 법안 의견표명 및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정책 권고,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등 장애 관련 정책권고,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혐의자 등록 시 소명 기회 미부여 의견표명 등이다.

국회의 경우, 「인신매매,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 기본법안」,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 제·개정 관련 의견표명,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2. 정책권고 주요 내용⁵⁾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2020년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위원회는 1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5) 정책권고 목록은 부록 참고.



기반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20-직권-0001200).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 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교육전문직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 미인정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1월 22일 교육부 장관과 ○○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진정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에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0-진정-0561900).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면서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의 정규교원으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기간제교사 경력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해당하고,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교사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교육전문직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근무경력 산정 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개정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9개 시·도 교육감은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 통지 또는 교육부 규정 개정 이후 기간제교사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채택 및 활용 권고

위원회는 2019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2009, 국가인권위원회) 이행점검 실태조사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가 수용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치료·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 환경 개선의 청사진을 제시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작성, 2월 8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제3부까지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개요,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 및 주요 변화를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처리 및 정책권고 현황통계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4부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4대 기본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고, 각 핵심추진과제 안에는 27개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제5부에서는 각 정책과제를 담당 부처별로 정리하였다.

보고서 정책과제는 8차례에 걸친 연구위원회 토론, 3차례에 걸친 당사자 간담회,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되었다. 정책과제는 입·퇴원 절차에서부터 정신의료기관 치료 환경, 지역사회 회복 기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특히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준사법적 역할을 하는 심판원제도로 개편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의 복지서비스 장을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 중장기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응급 잠자리 및 무료급식이 일시 중단되거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숙인에 대한 응급진료 등을 거부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2021년 1월 서울특별시 관할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 분류와 격리 및 이송이 지연 처리되는 등 업무처리절차(지침)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지침이 부재한 상황, 응급 잠자리 시설의 과밀 수용이나 밀폐 구조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 문제, 급식 제공 축소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 노숙인 대상 의료지원의 축소 운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서울특별시 8월 19일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 공간 내에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 설치, 대응 매뉴얼 수정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 숙소 제공, 급식 지원 사업 확대,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 의료시설 진료 실시 등에 대한 권고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불허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위임한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노동자인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불허하여 국내 장기 체류 중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건강보험제도가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0-진정-0732400). 그러나 이 진정과 관련된 사안이 「헌법」 제6조의 취지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제도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일시 방문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취지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일정 사유가 발생하여 체류자격이 G-1으로 변경되었을 뿐인데, 일시 방문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와 동일하게 대우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G-1 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 여지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될 수 없지만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3월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차별 없는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음성 판정 확인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11월 22일 전원위원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차별 없는 방역정책 시행 권고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판단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는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2020년 7월 22일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감염병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5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감염병 예방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외국인보호시설을 지원하고, 보호시설의 보호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보호외국인이 의료기관 등의 검진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적시에 외부 진료가 가능하도록 계호 인력을 확충하고, 단기간 보호 목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실의 보호외국인이 장기간 수용되지 않도록 일시보호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이상으로 보호외국인의 일반 면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일반 면회 실시 기준을 재검토하고, 방역상 면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화상 면회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6월 10일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박해 사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라는 다섯 가지 사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위 다섯 가지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권협약 및 지역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이들을 난민인정자와 유사하게 처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제정된 「난민법」 제2조 제3호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정의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2,370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있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 특성상 장기 거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G-1) 체류자격 부여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 구입, 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서의 절차적·경제적 어려움이 식별되었으며, 인도적 체류자들은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국적 취득의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 및 유럽연합의 결정과 지침,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 간의 보호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보충적 보호를 받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가능한 한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적 체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 권고

위원회는 6월 21일 ○○교통공사 사장에게 공사에서 시행하는 직원채용 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교통공사(이하 '피권고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0-진정-0182300 등 2건 병합).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 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지방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10월 12월 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

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 및 이행 실적을 포함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다.

차.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집단거주시설을 비롯한 다수인보호시설의 코호트 격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0년 7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과 인력 기준, 감염병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은 7~8인실 이상의 다인실 구조, 병실 내 위생 기구 부재, 통풍 및 채광이 안 되는 구조로 코호트 격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간호사 1명당 평일 주간에는 22명을 케어해야 하고, 야간 주말에는 간호사 1명이 40여 명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으로 코호트 격리는 물론 병원 인력만으로는 감염병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외출, 외박, 면회, 실외 산책 등이 전면 중단되었고, TV를 제외한 전화·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밀집도 완화, 보호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비대면·비접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카. 대학교의 부당한 학교규칙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7월 2일 ○○○○○○원 총장, ○○대학교 총장 등에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배포, 집회, 학생회·단체 조직 시 대학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 4개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해당 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각하하였다(19-진정-0386000). 그러나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이 「헌법」 제21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 규정이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임을 감안하더라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따른 기본권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안전사고 방지 및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사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해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학생회 및 단체를 조직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학칙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7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 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성인과 소년의 분리수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년사법제도 곳곳에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여 법률 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파.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시 공공성 강화 및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7월 26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과 「선원법」을 개정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며, 임금유보와 임금체불, 여권 등 신분증 압수 관행, 숙소 내 감시 및 외출 금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 하였다.

2020년 위원회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요구하고,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가 14시간 이상을 쉬지 못하고 휴일 없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임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와 식수·생활공간 사용 등에서 차별을 겪어도 송입업체 등의 이탈 방지책에 의해 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및 NGO 등은 ‘강제노동’ 또는 ‘채무에 의한 구속’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라 한국 국적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모집 과정, 인권상황, 이탈방지책이 야기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하.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8월 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것과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따라 교육의 운영 수준이 상이하고, 각 기관의 교육을 총괄·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대내외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교육과정, 콘텐츠, 강사진 등 인권교육 운영 자원에 대한 대내외 정보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인권보호규칙」에 교육 의무화 및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 규정을 마련하여 2022년 2월 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 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인권교육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 가능하도록 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인권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거.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2021년 ○○○○○○복지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시설 4개소 등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시설 입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한계 등 정상적인 학습권 보장이 미흡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지원의 부재, 생활인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10월 7일 시설 입소 생활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복지공단 및 민간 법인시설 이사장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철거,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너.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11월 18일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에 대하여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병행함에 따라 노숙인이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현행 의료급여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시설에 지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설장이 노숙인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할 지자체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4곳이며,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더. 국가기관의 검사 신규임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11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신규 임용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임용 예정자에 한하여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검사 임용 지원 시 가족관계등록부 상세형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진정에 대해, 진정인이 검사 신규임용에 지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하였다(21-진정-0192600). 그러나 검사 임용 지원자가 임용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신원조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관행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검사 임용 절차에서 임용 예정 단계라 할 수 있는 ‘조직 역량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검사 임용 절차상 신원조사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검사 임용 지원자 전원에게 지원 단계부터 신원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 수집의 적정 범위를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관행과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러.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6일 청소년의 정치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의 투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하나,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 현장에서 모의 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 사항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머. 교육청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12월 16일 ○○도교육감에게 특수교육지도사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등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반드시 1:1 전담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021년 2학기부터는 특수교육 협력교사가 대부분 피해자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진정을 기각하였다(21-진정-0172200).

그러나 ○○도교육감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2021년 4월 1일 기준 전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을 보면, 해당 광역지자체의 경우 특수교육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276명으로 파악되지만, 학급당 보조인력 비율은 58.9%로 전국 평균 7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12월 2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 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에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동성 커플은

주거, 연금, 의료, 건강보험, 세제 혜택 등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여 일반 커플에 비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민법 개정을 포함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19-진정-0871500 등 2건 병합). 그러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는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고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권고하였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제기한 진정에서 진정인들은 한국에서는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 측면은 물론, 배우자나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른다. 이처럼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허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혼 중심의 가족 개념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또한 위원회는 2021년 말 현재 전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헌법」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은 성과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며 더불어 가족 정책에 대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성소수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서. 트랜스젠더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위원회는 12월 23일 국무총리에게 정부 정책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정책의 대상으로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조사, 보건복지부의 국민정신건강현황 조사 등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 그리고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 항목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통계청장에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하여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적 조치, 법적 성별 정정 등에서 파급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트랜스젠더의 인구학적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상황을 다루거나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21년에 고(故) 변희수 하사를 비롯해 트랜스젠더 활동가와 작가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트랜스젠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교육·고용 영역뿐 아니라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 투표 참여나 군 복무 등과 같은 행정서비스의 이용, 의료적 조치 및 일반적 의료 접근 등 일상적으로 성별 정체성에 따른 혐오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57.1%), 공황장애(24.4%)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건강상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실제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응답자의 30%가 나쁘다고 답변하고 있다.

어. 해양경찰청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9월 17일 2008년 이후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해양경찰서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2021년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를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방문조사단은 전체 유치장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4개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 유치인에 대한 신체 안전 및 의료조치, 유치인보호관 운영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12월 28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체 검사실에 (외국어)안내문을 게시·제공할 것, 신체검사, 유치장부책 작성, 유치인 처우 보장 등 유치인보호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유치인보호관이 입·출감지휘서 및 신체확인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CCTV 운영·관리 기록부를 두어 유치장



CCTV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할 것, 유치장 CCTV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영상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유치인에게 식사나 집필을 위한 안전한 재질로 된 밥상 및 책상을 지급할 것,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유치실 내부에 설치할 것, 별도의 보호유치실을 마련할 것, 여성 유치인이 입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우선 배치할 것, 외국인 유치인을 위하여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권리, 유치장 생활, 위원회 진정 절차 안내, 신체검사 등에 대하여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유치인에게 위원회 진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유치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진정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군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군인사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6개 부대 교정시설(미결수용실)을 방문하여 냉난방·거실·화장실·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 접견 및 전화 사용, 수용자 권리 및 구제절차의 고지, 의료조치, 식사, CCTV 촬영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12월 28일 ‘미결수용자 서명 등록부’를 작성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서명과 무인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화상 접견 내용을 일괄 청취하고 기록하는 부분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군 교정시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 계획이나 운영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자체 조치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군사경찰대 건물 내부에 별도의 면회실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면회객이 수용자를 면회하는 경우 일반 장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여서 개선 필요성도 확인하였고,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근무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의견표명 주요 내용⁶⁾

가.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신매매·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하여,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Trafficking in persons”에는 착취목적·수단·행위라는 개념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률안은 이 중 ‘착취’만 선택하여 “인신매매·착취”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재검토할 것,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판단 주체와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할 것,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만큼이나 비중이 크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노동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를 식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할 것 등의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직업소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6) 의견표명 목록은 부록 참고.



최근의 인신매매는 채무 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노예적 지위’에 고착시켜 착취의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하는데, 그동안 현행 「형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 성립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으나 가해자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부합한 처벌 입법이 신속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재단에서 신입사원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시간 연장 미제공, 시험 종료 전 답안지 대필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3월 17일 ○○재단 이사장에게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투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35300).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국가공무원 등 선발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여부를 모집단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와 관련하여, 관련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의 시험 과정에서 지원 전형별 차이에 따른 차등적인 편의 제공 기준이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공고되지 않았고, 피진정인이 사전에 결정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안내되지도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시험시간 연장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응시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별도의 내부 지침이 없었던 까닭에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준용한바, 국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에서 인사혁신처의 기준 및 지침 등은 적절성 및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은 적용 기준이 되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적용한 인사혁신처의 기준이 “장애인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 시간 연장 편의 지원이 제공된다.”라고 정하여, 모집단위별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의 기존 편의 제공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모집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국가공무원 등 선발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여부를 모집단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편의지원 안내 자료와 관련하여, 관련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와 관련하여, 관련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영·유아용품의 색깔 및 역할의 성별 구분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3월 22일 제조업체의 대표들에게 영·유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상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한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여아놀이로 취급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상품의 종류나 성별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하는 등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차별행위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0-진정-0004000 등 8건 병합).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영·유아 상품의 상당수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꿉놀이나 인형 등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색 계열로, 자동차나 공구세트와 같은 기계류 등은 파란색 계열로 제작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색깔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고,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행동, 가치관 및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구성된 젠더(gender)에 부합하는 성역할(gender role)을 학습하게 되고,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어 성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유아기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습득하는 등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시기이기에 제공되는 놀이, 경험 등의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며, 그 결과로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놀이와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재능 또는 가능성이 아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인대회 개최에 따른 성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미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불금파티’, ‘미스○○선발대회’ 같은 용어가 포함된 것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성차별과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3월 25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진정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은 차별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19-진정-0447500). 그러나 지자체가 후원하는 미인선발대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의 신체를 등급화하여 전시하는 미인선발대회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단체장으로서 예산이 집행되는 목적, 내용,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에 기여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 정책 및 사업 운영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미인선발대회 등 매년 동일한 내용의 지역 축제 사업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지자체 사업 운영에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마.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20년 12월 8일 국회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위원회는 4월 12일 의견표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 데이터에 대해 정보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3조 제2항은 개인정보 목적 명확성 및 이용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기본법안」에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분석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확인권(열람권) 및 삭제권, 처리정지권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이동 및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제15조 제3항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규정 마련,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정보 주체의 철회 및 삭제 권리 마련 등을 지적하였다.

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제도 전면 재검토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42조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2여년간 부친의 동의로 동의입원 되었다가 퇴원을 요청하니 퇴원이 거부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장애인이라도 입원 계약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기각하였다(20-진정-0676300).

그러나 이 진정 이외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동의입원’과 ‘퇴원 거부’에 대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동의입원에 대해 「헌법」의 기본권 침해와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반한 입원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를 상회하고 있고, 위원회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동의입원’과 ‘퇴원 거부’에 대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면서 퇴원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해야 퇴원이 가능한 것 자체가 입법 목적과 모순되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위원회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처리해 까다로운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의입원을 활용하는 등 본래 제도 이행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위원회는 4월 22일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타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감안할 때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현행 경범죄 처벌 최대 금액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가 클 수 있고, 타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감안할 때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현행 경범죄 처벌 최대 금액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소, 가담 인원 등에 따라 성희롱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효과적 범죄의 제지와 범죄인 검거라는 측면에서도 현행법 체포 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재단의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23일 ○○○○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직위 및 임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직군별 보수기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재단(이하 ‘피진정재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인사 발령되어 그 수행 업무와 책임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부소장 직무수행 당시와 비교해 임금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과 타 지역사무소 근무 소장인 비교 대상 근로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소장 인사발령 시 적용된 취업규칙’(「무기계약직 운영 기준」 제정 전과 후)이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진정인과 비교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상이’하다는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9개 차별금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차이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19-진정-0456600). 그러나 진정인이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인사발령 되어 그 수행 업무와 책임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부소장 직무수행 당시와 비교해 임금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을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재단이 2014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2015년 「무기계약직 운영 기준」을 제정하면서 내부에 이미 직위 및 임금에서 구분이 실재하는 무기행정직 직원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단일한 체계로 설정한 행위, 그에 따라 진정인과 같이 부소장에서 소장으로의 직위 변경이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향후에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진정재단 ○○○○단 내부에 존재하는 직위 및 임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직군별 보수기준표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자. 호봉 산정 시 기업 규모를 이유로 민간경력 불인정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23일 ○○○○○○○공단 이사장에게 종사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경력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서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공단(이하 ‘피진정공단’)이 진정인의 채용 전 30인 미만 기업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직원 채용 시에 과거 민간 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피진정기관이 2008년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를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민간기업 근무경력 인정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하였다(20-진정-0458300).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당초 기업 규모 50인 미만 민간기업의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다가 2008년 4월 인사 규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의 근무경력을 60%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이에 배제되는 기업들이 존재하며 그 기업들이 모두 전문성이 없다거나 종사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단의 업무에 대해 감독하는 공기업으로 공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중요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를 일정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 경력은 그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100%를 인정하면서, 민간기업 경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사원 수라는 기업의 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위원회는 4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관한 사항인 제6조에서 제2항 단서 조항은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인 제15조에서 제1항 제4호는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관한 사항인 제35조의2에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5조의3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관리·감독 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제37조의2에서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은행창구 업무 이용 배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5월 20일 ○○은행장과 △△은행장에게 외국인 고객에 대한 다양한 거소 확인 방법이 포함된 업무처리지침이 해당 은행의 각 지점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은행과 △△은행(이하 ‘피진정은행들’) 일부 영업장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기존 통장이나 카드를 활용한 ATM 은행 거래는 계속 허용하면서도 통장 재발행, 비밀번호 오류 입력 시 재사용 요청, 퇴직금 관련 급여거래내역 서류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의 거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진정은행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거소 확인 방법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고 향후 해당 지침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였다(20-진정-0251200).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은행들의 일부 영업장에서 해당 지침이 기능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장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외국인 고객에 대해 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안내하는 등의 해당 지침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타. 성별을 이유로 한 미술학원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5월 24일 “남자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와 같은 영업 문구를 사용한 ‘남아 전문’ 미술학원 대표에게 성적 고정관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교육과 홍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남자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술학원 등록을 불허 당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피해아동이 피진정학원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집 주변의 다른 미술학원들이 있어 미술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피진정인이 영업 전략으로 남아만 가르치는 것은 영업의 자유의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별행위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하였다(19-진정- 0587900).

그러나 전국에 피진정학원이 여러 개 있고, 피진정인이 남아만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자 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와 같은 영업 문구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하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은 성평등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 영역에 대한 교육은 ‘개별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색채 감각, 소근육, 공감 능력, 공간지각 능력 등의 차이는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규정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미술교육에서는 특정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아동 각각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남아 전문’이라는 표현은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언제나 적합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교육 방법이 미술 전문가의 일치된 합의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남아만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남아의 특징’을 갖는 여성 아동에게는 기회를 제한하거나, ‘남아의 특징’을 갖지 않는 남성 아동에게는 ‘남성다움’을 기르도록 사회적으로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미술학원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키는 방식의 교육과 홍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파.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치 징벌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7월 2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연속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금치 징벌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부터 금치 징벌을 102일 동안 연속해서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교도소가 징벌 집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행위여서 피진정교도소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기각하였다(21-진정-0108800).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그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 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가 2018년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상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인 금치 집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 선거과정 및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위원회는 7월 22일 ○○○당대표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당규인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각종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시장 예비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광장과 같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1-진정-0140600).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고,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 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위원회는 7월 22일 ○○○○시장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혐오 발언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1-진정-0178600). 그러나 공무원들의 행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성원에게도 혐오표현이 가진 사상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방송사의 영화 방영 시 성소수자 차별

위원회는 7월 22일 ○○○○○ 대표이사에게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작, 편집, 방영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방송사가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1-진정-0098000).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진정방송사가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방송사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지방의회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위원회는 9월 2일 ○○○○○○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등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21-진정-0016500). 그러나 향후 이와 유사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의 행위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



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해당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지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거. 침몰 선박에 대한 추가 심해 수색 미추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8월 23일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 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추가 심해 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 수색의 미실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각하하였다(20-진정-0197500).

그러나 위원회는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4인의 인권위원은 의견표명 결정에 반대하고, 정부가 실시한 심해 수색 시

조타실에 대한 수색과 유해 추정 물체의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해기록 저장장치(VDR)를 수거하였으나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실종자 가족들의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신원권(애도권)을 침해한 것으로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너. 이슬람 사원 부당한 공사 중지, 혐오표현 현수막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위원회는 9월 2일 ○○시 ○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혐오표현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1-진정-0426300).

○○시 ○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진정 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 “사람을 죽이는 악마종교” “테러리스트” “전쟁지휘소” 등과 같이 무슬림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인종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아 시정을 권고하였다.

○○시 ○구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2021년 10월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자체 정비반을 편성하여 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는, 해당 지역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는 법원이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하였다.

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9월 13일 국회의장에게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입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유통되는 모든 뉴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하게 취급함

으로써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위·조작 보도’의 개념에는 적어도 ① 허위성, ②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③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④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기존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되, 이 경우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러. 교사에 대한 육아시간 사용 불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9월 27일 교육부 장관에게 담임교사를 하는 교원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육아시간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담임교사가 육아시간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가 진정인의 육아시간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의 자녀 돌봄의 권리와 학생들의 학습권, 피진정학교장의 인사상 재량권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기각하였다(21-진정-0314700). 그러나 교원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진정인과 같은 사례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 당국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련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제한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의한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담임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특정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직기간 중에는 육아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육아시간의 실질적 보장이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자녀양육권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포섭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온 우리 사회의 인식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머. 영화 상영 시 화면 해설 및 자막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0월 7일 피진정인 영화관사업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자로서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관람에서 차별받지 않게 영화관사업자가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 제공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관람을 하려 하였으나, 화면 해설과 자막이 없어 영화관람을 하지 못하거나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각하하였다(19-진정-0555800 등 2건 병합). 그러나 자막과 화면해설에 대한 표준장비가 없고 제공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표준화와 예산 지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영화관사업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인들은 영화관사업자 매출액 1위(50%)와 2위(30%)로 전체 영화관 사업에서 80%를 차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여전히 제한된 시간과 장소, 제한된 영화만을 볼 수 있어 문화생활에 제약이 존재함을 고려하였다.

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0월 8일 ○○○○도지사 및 ○○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시설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고, 도지사 및 군수에 대한 진정도 센터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권고 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21-진정-0429900).

그러나 위원회는 시설 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점, 해당 시설이 피해자에 대해 내린 정직 및 해고의 징계 조치가 피해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반복성 등 징계수단의 상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이거나 그 자체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바,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22일 국회의장에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중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

법률안은 모든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 아닌 자’로 잘못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노무 제공 방식의 변화와 정보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그 반대의 입증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법률안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운영되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 외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권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연대책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집단적 힘으로 단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법률안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일감 1회당 지급받는 대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플랫폼 운영자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인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일의 세계에서 괴롭힘을 규율하는 취지는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괴롭힘의 피해는 대인 서비스 노동의 증가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법률안과 같이 ‘괴롭힘등’ 금지 규정의 수범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괴롭힘등’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 제14조의2 제1항에서 「난민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자’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2021년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그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에서 난민인정자 처우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초기생활정착 자금 및 고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별기여자가 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 규정만으로는 특별기여자들이



난민인정자 수준의 처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특별기여자 지원에 대한 제약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이 그 입법 취지와 달리 특별기여자들에게 난민 인정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의 ‘난민인정자 처우규정 준용 부분’은 「난민법」뿐만 아니라 각 개별 법률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 생명과 직결된 백혈병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심사·결정을 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 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김리아주(Kymriah)’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바, 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각하하였다. (21-진정-0714500).

그러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약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서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고 할 것인바,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신체 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 유지 활동을 지원받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 요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난민법」 및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기간,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민지원금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단발성 사업이고, 사업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다수의 국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혜적 성격이 강하여 사업 시행 주체에게 매우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외국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외국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기각하였다(21-진정-0668500 등 5건 병합).

하지만 「헌법」, 「난민법」,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할 때 난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외국의 소득 지원 사례를 보면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재난 상황에서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 극복 지원대책에서 외국인의 지원 범위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4. 전원위원회 및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가. 전원위원회 성명

■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1년,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난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 만인 2020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4명이 위원회의 법 시안을 바탕으로 한 「평등법」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6월 11일 위원회가 주최한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여러 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전에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법 제정 이후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여건이 형성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차별 대응 법제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2020년 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평등법」 제정이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는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의견표명 이후 1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혐오와 차별 심화,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 등 「평등법」의 부재로 더욱 안타까운 고통의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위원회는 6월 21일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전원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10일 다시 한번 위원장 성명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촉하였다.

나. 위원장 성명

날짜	제목	요지
1월 5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성명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
1월 14일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원칙 발표 환영 성명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지만 대응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은 모범적 사례.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하여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
1월 22일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성명	위원회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이고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필수적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 지속 제기.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 간곡히 요청
2월 4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성명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후 35년간 복직투쟁을 이어온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한국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잘못된 과거 청산이자 인간 존엄성 회복 위해 복직 필요
2월 15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환영 성명	법무부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특별법 형태로 추진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에 더는 사각지대가 없고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

날짜	제목	요지
2월 26일	고(故) 김기홍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 성명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성소수자가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근절 당부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3월 4일	고(故) 변희수 하사 죽음을 애도하며	군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함.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기대
3월 18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이나 온라인상 혐오 댓글, 언어폭력, 서비스 거부,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 행위, 폭행 등 범죄행위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이주민 대상 정책 수행 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필요
3월 31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 환영 성명	국회가 인권위 권고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 및 고객 등 제3자로부터의 보호 규정 등을 신설한 것에 대해 환영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성명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당사자와 이들의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히고,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당부
5월 5일	제99회 어린이날 성명	아동은 독립된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
5월 2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성명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68년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
6월 8일	군 외부 통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성명	공군 부사관의 성폭력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모든 장병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과 피해자 보호와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을 촉구함



날짜	제목	요지
6월 18일	세계 난민의 날 성명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국으로 송환 시 박해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인도적 체류자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성명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뜻하는 노인 치매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촉구
8월 27일	아프간인 관련 환영 성명	아프간인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국내로 이송된 현지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정착이 이루어지고,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
10월 2일	노인의 날 성명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노인이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려 노인 인권 보호 대책 시급
10월 19일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성명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촉구
11월 10일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 촉구 성명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 및 평등 실현 관련 4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월 10일 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유감 표명과 함께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재촉구
12월 17일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성명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결의에서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가.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 동향 파악,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적응 정책 분석 등을 하고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80.4%가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93.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2.1%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후위기로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47.5%가 농어민이라고 답했고, 경제적 취약계층(21.5%), 야외노동자(14.0%)가 뒤를 이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한 응답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33.3%), 인력과 예산의 확대(21.1%), 인식 개선과 홍보·교육(19.9%)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와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적응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였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건설노동자, 마트 배송 노동자, 농민 등 취약계층 당사자가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과 노동의 불안정, 의료 공백, 돌봄 공백, 혐오와 차별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노동시장 지위, 코로나19 감염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노인·여성(임산부)·장애인·노숙인·이주민·성소수자·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위 취약계층 집단별로 6~21인, 총 154인을 사례로 선정하여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건강권, 방역·위생, 소득보장·생계유지권, 노동권, 주거권, 돌봄권, 사회적 관계,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 안전권, 혐오방지과 비차별권, 기타 등 14개 영역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공의료체계 및 공공돌봄체계 강화, 상병수당, 유급휴가를 통한 건강권 증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보편성 강화, 방역 안전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다.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격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거나 시설 내 노인의 생명권, 건강권, 가족면접권 등 중요 인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코호트 격리 현황(격리시설 수, 격리 기간, 격리 효과 등)을 조사하고, 이 중 코호트 격리 경험 시설 19곳,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험 시설 29곳, 미격리시설 12곳 등 60개소의 시설장 29명, 종사자 125명, 입소자 28명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코호트 격리 실시에 관한 근거 법령 정비 필요성, 방역수칙 범위 내 외부교통권의 보장, 입소자와 종사자 인권을 위한 인력 기준 강화 및 배치 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정책 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라.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 사회 노인은 빈곤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년에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생 가장 오랜 기간 일하지만,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심각한 빈곤 상황으로, ‘노인’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의 사회적 배제와 한국 사회의 성별 노동 분리 규범 속에서 남성과 다른 생애 경험으로 인하여 남성 노인보다 많은 수의 여성 노인이 더욱 심각한 노후 빈곤을 겪고 있다. 여성 노인은 가족의 빈곤으로 만성적인 빈곤에 처하거나 노년기 이후로는 사별이나 발병 등 생애 특정 사건들로 인하여 만성적 빈곤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노인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2018년 10월)에서,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 소득 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 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하여 노인빈곤 등 인권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피력한 바 있고,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성과목표의 하나로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빈곤층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년의 존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노인 빈곤의 고착화,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 심화 현상인 ‘여성의 빈곤화’ 및 ‘빈곤의 여성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위원회는 심층면접조사 및 생애구술사 분석을 통하여 빈곤한 노인의 생애사 연구, 사회구조적 요인 규명과 주요 경제위기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6~12월)하였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이 연령주의(Ageism,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차별 등)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으며, 성인지 관점에서 설계되지 못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하여 빈곤한 다수의 여성 노인이 노년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한 노인의 생존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측, 채용 면접, 자율주행 등 개인의 삶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여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윤리 기준)은 원론적이고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인권적 핵심 기준과 적용 가능한 인권적 대응 방안(제도)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 및 판단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의무,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차별 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 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 방안 실태조사

위원회는 최근 지능형 CCTV(소음, 급격한 움직임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촬영하는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특정인의 얼굴 특징을 추출 학습한 뒤 불특정 다수인의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활발히 개발·이용되는 반면,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 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우선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제도, 국제 인권규범을 살피고, 실제적으로 개발 활용되는 기술 동향,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입 및 설치 실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따른 정보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코로나19 상황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야간 근로 및 장시간 근로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 재해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된 생활물류센터가 안전에 취약한 구조임이 드러난바, 이에 위원회는 생활물류센터 작업환경 및 노동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류 분야는 사회 기능 유지 및 국민의 안정적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대표적 필수 노동에 해당하지만, 화재사고의 빈발 및 고용불안정을 비롯한 심야·새벽 근로 및 장시간 근로 문제 등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에 놓여 있는바,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콜센터 산업구조와 고용 현황, 관련 법·제도 및 해외 사례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고서로 정리되었는데, 특히 콜센터 산업을 부문별(공공/민간), 운영 형태별(직접/간접)로 비교 분석하고 고용 형태(정규직/간접 상용직/비정규직)의 변인도 범주화하여 더욱 세밀하게 콜센터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2008년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콜센터 노동 현장의 변화 추이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문 비교 분석은 콜센터의 운영 방식이 간접고용(외주화, 민간위탁 등)

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된 이후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된 사례를 통해 콜센터 노동자의 근본적 노동인권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자. 인권 NAP 권고 등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연구용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범국가적인 인권 정책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4기 NAP 수립을 앞두고 그동안 인권 NAP의 과제로 포함된 북한인권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NAP 권고 등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제4기 NAP에 포함될 정책과제에 대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인권교육 및 홍보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4기 NAP 수립 권고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사례연구

국내에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위원회는 성소수자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최신 입법 현황 및 결정례를 제공하기 위해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유엔 등 해외 인권기구 결정례, 차별 금지 규정, 모범



정책 등을 분석하여, 성소수자 차별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만한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였다. 또한 성별 관련 차별 금지 규정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으로 확대하여 해석한 판례, 오인·연계 차별을 인정한 판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갖는 한계를 인정한 판례 등을 소개하고, 세계적 이슈 및 정책 변화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 검토가 필요한 차별 영역에 대한 단서를 마련하였다.

또한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현황에 대한 연구(미국의 경우 청소년 홈리스 20~40%가 성소수자인 것으로 나타남),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난민신청자, 이주민 등의 현황에 대한 연구, 성소수자 의료 접근성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등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해외의 각종 사례를 연구하고 정리함으로써 추후 성소수자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연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배제·거부·억압하는 사회적·물리적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핵심 수단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외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접근성 개념 및 정당한 편의에 대한 기준, 해외 12개국의 판례 및 정책 사례, 국내 법령, 법원 판례, 위원회 결정 등 분석을 포함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내부적으로는 차별사건의 판단 기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타.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당사자와 종사자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정책 검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의 열악한 인권상황 파악 및 권리 영역별(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로 장애 이전에 아동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돌봄지원체계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권 영역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4가지 원칙(① 예방: 원가정 지원 강화를 통한 시설 입소 지양, ② 발달: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향, ③ 통합: 지역사회 통합에 초점을 둔 퇴소 후 자립 지향, ④ 다양성: 돌봄 주거 형태 및 지원 방식의 다양성 지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권리 영역별 증진 방안(사생활 보장,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학습권·놀이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존중 등) 마련과 성인기 전환·자립 방안 및 통합 양육 환경 구축 지원체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위원회는 2021년 장애인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중간 주거인 자립생활주택과 체험홈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체험홈은 294개, 자립생활주택은 278개소로 총 1,969명의 장애인이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번 실태조사는 이 중 체험홈 25개소, 자립생활주택 25개소 총 83명의 이용인을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초점집단면담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도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체험홈과 자립주택이 중간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건 있었으며, 추후 자립생활을 위한 미래 계획 수립에 대해 약 17%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자립생활 이행과 적응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립생활교육이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운영기관에서 자유로운 외출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 이용인들이 여전히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체험홈과 자립주택의 장애인들은 탈시설 정책에 대해 주택 제공, 활동 지원, 직업 활동, 장애인 주치의, 교육 활동, 긴급 돌봄, 인권보장 순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탈시설 전환 서비스에 대한 정책 검토와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 실태조사

위원회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발전에 견주어볼 때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국, 호주 그리고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대만, 일본 총 4개 국가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탈시설·탈원화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탈시설·탈원화의 성공은 무엇보다 국가의 전략계획 그리고 입원 절차 및 기간을 강화하는 법·제도,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반 등이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탈원화·탈시설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 욕구와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종사자들의 인식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별로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당사자, 가족, 종사자들의 탈시설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예방함과 더불어 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피해 당사자, 관계 종사자,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현행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나누어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관련 디지털 성폭력 매뉴얼 15종,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5종, 아동·청소년 권리 및 옹호 매뉴얼 4종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디지털 성착취의 정의, 유형 및 사례, 특징, 예방 수칙, 피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지원기관 안내 등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에 담아야 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를 마련할 예정이다.

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삶 실태를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 당국의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부모·아동 돌봄기관 종사자·교사·전문가·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 인권 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인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을 제시하였고,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의미와 원칙, 재난 대응 시 필수 검토 사항,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의 필요성, 위험 해소, 일상 유지, 재난 회복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기능과 운영이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교육 및 역량 개발, 아동돌봄체계 구축,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통계 플랫폼 구축 등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2년 이후 위원회에 제기된 군 훈련소 관련 민원 및 진정사건은 총 530여 건으로, 이 중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진정이 12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인명사고 은폐사건(17진정0029200), 훈련소 연대장의 국공사격에 의한 안전권 침해사건(17진정0660900), 공군훈련소 훈련병 식발 사건(19진정0348500) 등 훈련소 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는 ‘군인화’ 교육을 이유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 제한, 폭언, 얼차려 등 유·무형의 인권침해 행위가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군대 내 폭력 문화가 일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아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포함한 훈련병 생활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육군훈련소를 포함하여 육·해·공군 9개 부대 신병훈련소를 대상으로 1,818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관계자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생활관·화장실·급식·일용품 등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 의료 인력 충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의료지원체계 개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가 필요성, TV 시청, 흡연 등 훈련병 인권보장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추가적인 정책 검토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러.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위원회는 국회(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인권교육 개선안을 마련하여 인권친화적 의정 활동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국회의정연수원이 국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인권교육은 부재하고, 성폭력 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출석률은 매우 부진하며, 이수 현황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국회사무처에서 별도의 인권교육 실시, 국회의정연수원이 개설하는 연간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회 구성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공개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머.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위원회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만으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인권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전담부서(과 단위 5곳, 자치행정과 내부팀 12곳)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보통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뿐이고 그마저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순환보직이 잦아 인권교육 기획과 수행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확립, 인권전담부서의 독립성 강화, 인권교육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 배치 및 전문관 인사제도 활용을 통한 인권교육 전문성 축적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위원회는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 및 해당 인권교육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여,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원이 67.4%에 그치고, 지식 위주 구성,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콘텐츠 부재,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 등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교급별 교육 내용 구분 및 기초·기본·심화 단계별 교육

등 맞춤형 콘텐츠 구성,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인권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 소규모 참여형 수업 방식 확대 및 학습자 중심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과 같은 교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제공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교원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인권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도화되고, 다양한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66.3%가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의 경우 기관 평가 항목에 부모교육 시행 여부가 포함되어 연 2회 이상 부모교육을 시행하지만, 평가지표상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혹은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방법 연구용역

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지만 조사 영역마다 조사해야 할 자료 및 대상이 다르고, 조사접근법 등 조사 방법이 달라 체계적인 조사 절차와 방법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방법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사기관 등 타 국내 조사기관의 조사기법과 해외 인권기구의 조사기법 등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기법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조사 중 어려움을 겪은 사례와 필요한 기법 등에 대해서 조사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타 기관의 조사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조사기법과 관련된 노하우를 위원회 조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인조사기법(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과 디지털 자료 분석 등 대물조사기법, 그리고 증명력 제고를 위한 조사기법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이러한 기법을 위원회 조사에 적용하고 보완하여 위원회 조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2. 인권증진 사업

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성희롱 국민의식 조사

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2021년에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는 성별·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국민의 성희롱 의식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번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 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초등학교(5, 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총 1만 212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60대와 10대 남성 높아〉

국민은 성희롱에 대한 연상 단어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의 단어들을 꼽는 등(16개, 53.5%) 성희롱의 법적 개념, 즉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달리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여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하여 ‘조직 내 관계’에 주목하고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 차이는 중고생보다 성인과 대학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2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차별 의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 높을수록 높아〉

이번 조사에서 연구진은 성희롱이 성차별적 문화나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 및 성차별 의식에 대해 조사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등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에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고생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다.

“남자가 일을 잘해서 여자보다 승진이 빠르다” “여자는 동기 모임 등 비공식 네트워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등 성차별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적 사고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고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성별 격차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대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

성희롱 대처 방법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73.8%)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회사 내 처리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구제기관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해 2차 피해 우려와 사내 절차에 대한 낮은 신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위원회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과소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의 하나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대 여성의 사회참여율 높아〉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회시위, 정당 가입, 정치인 후원, 온라인 청원, SNS 해시태그 운동 참여 등 사회참여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세대를 교차해서 분석한 결과, 20대·30대·5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남성은 73%, 여성은 86%로 13%p의 성별 격차가 나타났는데 20대 여성은 시민단체 후원, 온/오프라인 청원 참여, 온라인 청원 링크 공유, SNS나 온라인 게시물 작성, 해시태그 운동 참여, 물품 구입, 프로젝트 모금이나 후원,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할당제엔 우호적, 여성할당제엔 성별 경향 뚜렷〉

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지역구 공천 청년할당제 도입, 비례대표제 공천 청년할당제 도입, 청년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비율로 공천,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등 청년할당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남성들은 주로 “여성할당제 대신 능력에 따른 선출을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는 소수(엘리트)여성에게만 유리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높았으나 남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의원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이 다른 세대 여성보다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한편 위원회는 설문조사와 함께 전·현직 국회의원 및 보좌진, 전 시의원 등 정치 관계자, 20~30대 출마자와 선거운동원 37명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하였다.

〈공천제도, 거대 정당 여성 후보에게는 장벽〉

2015년 이후 새로운 정치 주체들이 활동하는 장이 온라인에서 정당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정당 공천은 거대 정당 여성 후보에게 주요한 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여성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인력 부족을 우선적인 어려움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역구 기탁금 1500만원이 후보 등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성 중심 네트워크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남성연대, 연고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여성이 선거에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당 내 경선’이 본선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할당제가 무력하고 현행 경선제도는 지역구 관리비용이나 자원이 부족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답변하였다.

〈「공직선거법」, 여성에게 불리〉

또한 「공직선거법」은 명함을 줄 수 있는 주체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후보의 사진 및 기호가 포함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할 수 있는데, 결국 배우자가 있고 직계존비속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비후보자가 더 많은 사람과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면접 참여자들은 이러한 선거법 조항들은 선거제도가 가부장적 토대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정치 대표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부장적 규범이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비수도권의 경우 남성 중심의 학연, 지연, 문종의 질서 등 비공식적 규범이 강력하게 남아있어 여성이 지역의 대표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사례로 들었다.

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 아동인권 모니터링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아동인권 영역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현장·당사자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21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아동교육권 실현’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정책 모니터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교육권 실현을 위한 현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등을 논의하였고, 이후 학교에서 아동의 교육권,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학습)권, 아동의 디지털 교육권 등의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이 주제별로 현황 및 문제점, 법·정책·제도적 대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현장 모니터링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 담당교사와 교육공동체 사업 관련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교육권,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미래사회의 아동교육권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당사자 모니터링은 전국 10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108명이 모니터링단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의 아동·청소년 1,610명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권 현황’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교 운영이나 교육 관련 결정에 참여할 권리,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권리, 원하는 교육을 더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아동인권 보고대회

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1 아동인권 보호대회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 대응을 주제로 6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첫날인 22일에는 개회식, ‘교육의 주체는 아동인가?’라는 주제로 당사자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고, 현장 모니터링의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아동교육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아동교육권을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3일에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보장체계 개선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아동교육권 보장 방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24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간 발전시켜 온 현실 세계에서의 아동인권 가치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참석자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참여를 하고,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위원회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이를 시청하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특성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할 수 있었으며, 사전 등록 이벤트 등 사전 홍보를 통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발했다.

다. 노인인권 증진

■ 노인인권포럼 개최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노인 인권 의제에 대한 공론화 및 주요 현안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협업하여 전문가 회의체 <노인인권포럼>(포럼 회원: 노인 및 인권 관련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70명)을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노인인권의 국제적 흐름과 최근 동향, 노인 복지와 인권의 긴장과 친화성, 노인 빈곤 원인과 대안 및 해법 모색 등을 주제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노인인권포럼>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향 제시, 노인의 정의·연령·정년기준 등 사회적 의제 공론화, 현행 노인복지 정책 진단과 인권적 개선 방안 모색, 유엔 등 국제사회 노인인권 활동에 정부 참여 독려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헌 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Ageism: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함) 철폐와 인식 제고, 그리고 권리 주체인 노인의 인권 증진 공론화에 활용하기 위해 노인인권에 관한 주요 문헌을 번역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이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헌 자료집>에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 보고서,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유엔 특별절차) 보고서, 코로나19가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등이 담겨 있다. 이 자료집은 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바, 위 협약 성안을 위한 협력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라. 장애인 인권증진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 토론회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년을 기념하여 4월 28일 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원칙과 방향, 재화·용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정당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본 법률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개정 방향으로 접근성의 의무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명시적 구분, 차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할 때 ‘효과성’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

자유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자체가 본질이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 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구금시설의 장애유형별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2020년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구금시설에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고, 영국 등 해외 사례 청취 등을 통해 국내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7월 5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 구금시설 장애인 인권 및 차별 현안, 영국의 구금시설 장애인 사례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향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12월 2일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함께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주축이 된 인권모니터단이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기사와 콘텐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활동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2021년 6월 정신장애인 당사자 12인, 가족 1인을 선발구성하여 언론과 미디어 콘텐츠를 모니터링해 왔는데, 5개월간 약 111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은 현행 언론보도가 언론사의 자극적이고 잘못된 선입견을 주는 보도 행태, 사진에서부터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조현병 환자가 무서운 범죄자라는 선입견 조장, 조현병 환자나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적 노출, 조현병과 사이코패스의 혼동,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일반인보다 더 많고 잔혹한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2021년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크게 문제가 된 영화 <F20>에 대해서도 “조현병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결과발표회에 함께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보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언론보도준칙 등이 마련될 필요성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는 12월 7일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이나 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12월 9일 <제2차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회>를 당사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일할 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마.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선원 이주노동자 여권 압수 관련 현장 모니터링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 이주노동자의 여권 등 대리 보관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위원회는 9월 7일부터 26일

까지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국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여권 압수’라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확률표집의 하나인 눈덩이 표집 방식⁷⁾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의 본인 소지 여부, 여권 압수 상세 내용 및 반환희망 여부 등에 대해 총 221명의 유효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 221명 중 대부분(198명, 90%)이 여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62명(31%)으로 조사되었는데,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두려워서”(48%), “소용없을 것 같아서”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11월 2일 관계기관 간담회,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심층면담(11명) 등 현장 모니터링을 제주지역에서 실시하였고, 2022년 모니터링 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실태 파악을 거쳐 여권 압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위원회는 2021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주제로 ‘난민신청 절차’를 선정하고,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 향후 난민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현장활동가를 비롯한 전문가 11인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표준 설문지를 개발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6명의 난민신청자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설문 대상은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리아 등 11개 국적

7) 눈덩이 표집 : 처음에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이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 방법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확률표집의 한 유형임.

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난민신청 절차와 관련한 정보 접근, 난민신청서, 불인정사유서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 관련, 출입국 과정에서의 난민심사 관련, 난민소송절차 관련 어려움, 아동권리 관련, 「출입국관리법」상 조사, 사실 조사, 동향 조사 관련, 난민신청 철회 관련, 심사기간 연장 및 체류상 어려움 관련 등의 주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난민신청자가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2022년 모니터링 시 추가적인 실태 파악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관련 인식 및 제도개선 등

위원회는 2020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고 단행본 원고를 개발해 왔고, 2021년 기획도서로 <있지만 없는 아이들> (작가: 은유)을 발간한 데 이어,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스튜디오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비대면 온라인(유튜브)으로 송출하였다.

북콘서트를 통해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차별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이주·난민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존재를 알리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쇼트 다큐멘터리(캠페인 영상)를 제작하였으며, 영상 제작 시 인터뷰를 기사 형식으로 재편집한 ‘글콘텐츠’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정부는 2021년 8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2022년 1월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2020년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12월 8일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실태조사 연구진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및 법무부 등 관계기관도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해 발언하는 등 생동감 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일정 부분 확대되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대 합가 불가로 인한 보험료 부담, 체류자격과 연계된 체납 제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발표자들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HIV 감염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인권단체의 요청에 따라 10월 19일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및 관련 인권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HIV 감염 수용자 인권 현황, 교정본부의 관련 보호조치 현황, HIV 수용자 인권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병력정보 노출 철저히 관리 및 관련 지침 개정 전파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교정시설 내 HIV 감염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문제 해소 필요성 등 인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 군 인권 증진

■ 군 인권 집중 홍보사업

위원회는 군 인권을 증진하고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1일부터 31일(1개월)까지 군 인권 홍보 콘텐츠 배포 사업을 진행하였다.

군 인권 집중 홍보는 서울교통공사(지하철) 승강장 모니터, 역사 내 기동박스, 열차 내부 LCD모니터 등을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 1~4호선(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교대역, 사당역, 영등포구청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신도림역, 합정역, 이대역, 역삼역, 명동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잠실역, 교대역, 양재역, 명동역 등 18개 역) 승강장 내 총 영상 기기 50개(개당 44초)에 1개월간 13만 9,500회 영상을 노출했다.

5~8호선(목동역, 잠실역, 장지역 등 20개 역) 및 9호선(전 구간)에 대하여 기동형 CM보드에 20개소 40면, LCD모니터 432기에 66만 9,600회 이상 영상을 노출했으며, 위원회 인근 전철역(2호선 을지로3가역)과 국방부 인근 전철역(6호선 삼각지역)에는 대형 조명 포스터를 1개월간 상시 노출해 위원회와 국방부를 찾는 이들에게 군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는 2022년에는 군 인권 홍보를 강화하고 또 다른 교통수단 및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 방문

정문자 상임위원과 이상철 상임위원이 6월 18일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천안교도소를 찾아 생활관, 급식 상황 및 복무 환경 등을 살펴본 뒤 복무 당사자 및 복무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2020년 11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기관에 배치된 이후 위원회 차원의 첫 방문이다.

대체복무제는 위원회가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 13년 만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도입되었고, 2021년 6월 방문 당시 기준 300여 명이 전국 7개의 교정시설에서 무기나 인명 살상과 관련 없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등의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 노동자 인권보호

■ 플랫폼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위원회는 2월 5일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입법 방식에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 및 발의된 법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 및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술 발전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플랫폼노동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등 일상생활의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배달·택배 등 연결 산업을 확대시키고, 실업과 휴업의 장기화는 플랫폼 영역으로 노동인력이 이동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플랫폼노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 인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바, 위원회는 정책간담회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9일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구방문 노동자란 설치·수리 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 검침, 영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사적이고 폐쇄적인 고객의 집에서 혼자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가스안전점검과 방문요양보호와 관련하여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위원회는 9월 29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노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요청’을 내용으로 한 진정사건이 2019년 7월 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라 위원회는 2020년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구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노조 결성을 이유로 집단해고 혹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노동3권 실현을 위하여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기업과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위원회는 <인권경영포럼>을 해마다 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보호, 존중, 구제의 이행/ESG 시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과제’를 주제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하반기 포럼에서는 제4차 NAP의 핵심 내용이 되는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제기구(UN Global Compact)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국내 학계·업계 및 해외(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 <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 발간

2020년 말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확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ESG 경영을 새로운 경제 기조로 선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내의 흐름이 유럽과 주요국이 추진한 인권·환경·지배구조 실사 법제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ESG가 묻고, 인권경영이 답하다>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ESG 시대와 주제에 부합하도록 전자도서 형태로 국내 주요 e-book 플랫폼에 배포하였다.

자. 정보인권 증진

■ 정보인권포럼 구성 및 개최

위원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규 정보처리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지능 정보 사회에서 제기되는 정보인권 관련 신규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자문기구인 <정보인권포럼>을 구성하였다. 2021년 <정보인권포럼>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회 개최되었다. 제1차 포럼(3월 29일)에서는 신기술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기준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다. 제2차 포럼(5월 28일)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견, 빅데이터 시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 원칙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다. 제3차 포럼(8월 10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유엔 신기술과 인권결의안, 제4기 인권 NAP 관련 정보인권 과제 제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다. 제4차 포럼(12월 2일)에서는 정보인권보고서(안), 2022년 정보인권 업무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에도 <정보인권포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정보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2차 정보인권포럼



제4차 정보인권포럼(위원장 인사)



차. 북한인권 증진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9일 제1세션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4기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30일 제2세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인권증진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북 과정과 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 등 국제인권기구, 영국·루마니아·호주·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주한 외국 공관, 통일연구원, 남북하나재단, 국제앰네스티, 엔케이워치 등 북한인권 유관 기관 및 단체,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 기독교일보, 헤드라인 뉴스 등 국내외 언론이 참여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은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 위원회 북한인권 업무에 반영될 예정이다.

■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남북관계의 특수성,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기구 성격의 ‘북한인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북한인권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1년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제4차 인권 NAP 수립 관련 북한인권 정책,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등 위원회 주요 북한인권 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정기 심사 대응 준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는 2006년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핵심 인권감시 체계로 유엔 회원국(193개국)을 대상으로 각 회원국 상호 간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사·점검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구두 발언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UPR 권고를 도출하며, 정부에 UPR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증진 및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 초 예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제4차 UPR 심의 대응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제3차 UPR 권고 사항 이행 현황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UPR 권고 이행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위원회가 향후 제4차 UPR 의견서에 제시해야 할 주요 쟁점 및 권고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1년 12월, 정부가 작성한 제3차 UPR 이행에 관한 중간 점검 보고서 초안에 대해 권고 이행 실적의 구체적 적시 필요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제3차 UPR 권고 이행을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제3차 중간 보고서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준비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본심의회를 2022~2023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국가 보고서 심의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독립보고서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국제인권 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2021년 6월,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자유권위원회 심의 대응을 위해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위원회가 2020년 7월 의견표명한 내용이 제5차 국가보고서에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위원회가 향후 독립보고서 작성 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 및 권고안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1년 2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위해 위원회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에 위원회의 독립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 유엔인권기구 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접근성 제고

위원회는 인권옹호자 및 우리 국민이 국제인권기구 발간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수집·정리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등 7개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생산한 약 40년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심의 차수별·절차별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 통보 결정문(국·영문),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제1차~제3차, 국·영문),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보고서(국·영문)를 수집·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 회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화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의제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과제와 관련된 정책 사안들을 분석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 개최된 제47차(6월 21일~7월 13일), 제48차(9월 13일~10월 11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총 85건, 주요 결의 총 38건을 검토하는 한편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프라이버시권리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결과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문,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과 관련이 깊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리 보고서> 등을 국문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상기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국제인권 → 국제인권규범 → 유엔인권이사회·UPR] 메뉴를 통해 찾을 수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모니터링 및 선택의정서 비준 공론화

위원회는 2021년 7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차 당사국 회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각국의 장애인 인권 과제와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8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한 검토, 9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김예지 의원실 주최), 10월에는 선택의정서 비준 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타. 기타

■ 국가인권통계 구축 사업

통계에 기반한 정책 입안과 평가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수 사항으로, 국내 인권 상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인권통계(지표) 구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작으로 인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인권통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기존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에서 인권 관련 통계를 발굴하고, 기존 승인통계와 자료에서 발굴할 수 없는 개인의 주관적 인권 경험·인식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총 448개(발굴통계 381개, 조사통계 67개)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한 이후, 매년 통계의 적절성 평가를 통해 삭제, 갱신 및 신규 통계를 개발하여 2021년 현재 총 474개(발굴통계 424개, 조사통계 50개)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률’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불평등 지표, 한국 사회지표의 사회통합 지표로 사용되는 등 한국 사회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3년간에 걸쳐 구축된 국가인권통계는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외연을 점차 확장해 가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위원회는 9월 29일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을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과제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한 내용은 2021년 방문조사 계획에 반영하였고, 중장기 추진계획에도 고려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은 다수인보호시설 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현장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4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가. 개요

1) 추진 배경

2019년 1월 빙상계를 통해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이는 형식적 개선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이에 2019년 2월, 위원회는 관계 주요 부처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운영하게 되었다.

특별조사단은 2019~2020년 각급 학생선수 및 일부 종목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 주요 분야 실태조사,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을 통해 스포츠인권 분야의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은 물론 피해 당사자 등의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 각 기관, 다양한 단위의 체육 단체에 대한 정책권고를 통해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화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단 활동을 2023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2) 목적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피해 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주요 활동⁸⁾

■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2019년 <빙상종목 인권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월 18일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먼저 빙상계 폭력 문화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한층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빙상종목 특별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등에게 학교 및 경기단체 등에서 징계받은 자와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제한 규정 마련, 지도자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정기적인 인권상황 점검, 학교 밖 학생선수 관리·감독 및 인권보호 방안 마련, 빙상장의 독점화와 편법 이용을 방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빙상종목 인권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법률·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 규정 및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개 지방자치단체(부산 남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김해시, 창원시, 안양시) 또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자처벌경력자 등에 대해 제한 규정 마련과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스포츠인권 관련 정책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주요 결정례 수록

(이하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체육시설법이 제정된 1989년 당시와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 교습에 따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된 점,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의 지식·기술·예능 개인 교습이 관리·감독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육부의 불수용 의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실시 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4월 8일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체육 분야의 다양한 인권침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장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 기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의무와 관련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장애인 사법 서비스 제공 규정을 준용하여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모두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운동시설 전체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후 현행 편의시설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선수단 교육 등 계기별로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애인선수 신고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시 지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의 특화 등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선수 대상 조사 매뉴얼 개발 등 장애인의 신고·조사 등 접근성 증대를 위한 환경과 시스템 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약으로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사후관리 도모 등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지침 제정 및 장애인선수 스포츠인권 보호 가이드북 마련과 정례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2020년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여성 지도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12월 23일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여성 지도자 양성 지원 강화, 여성 지도자에 대한 성평등한 채용 방안 마련, 여성 지도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 정책권고 이행상황 점검

위원회는 정책권고가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피권고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이행을 독려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학생선수, 직장운동부 선수, 유도선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하였다.

첫째,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은 교육부 등 20개 피권고기관 및 초·중·고 학교운동부 관계자(학생

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였다. 점검 결과, 각 피권고기관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휴식권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대회·훈련 관련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축소하였으며, 체육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으로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선수 상담 및 인권교육,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자(교사, 담당 장학사 등)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에 좀 더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242개 피권고기관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및 방문 점검을 병행하였다. 점검 결과, 각 피권고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6종)를 개발하고,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으로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었다.

다만 합숙소 인권침해 환경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대다수 기관이 원거리 선수에 대한 복지 제공 등을 이유로 중장기 합숙소 폐지 권고에 대한 이행이 부진했으며, 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선수의 합숙소 입소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도 다수 기관이 주거비 지원 등의 실질적 선택지가 없는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어 합숙 훈련 참가에 대한 선수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피권고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및 방문 점검을 병행

하였다. 점검 결과, 각 피권고기관은 스포츠인권 향상 교육·홍보사업을 확대하고, 투기종목 선수 대상 스포츠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은 권고 이행 여건(예산, 인력 등)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통지한 이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권고를 부진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경기대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경쟁이 치열한 전국 규모 학생 경기대회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 사전 예방 및 점검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21년 3월 경기대회 인권 상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9개 종목의 전국 대회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2021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온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그간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경기대회 인권보호체계 미흡,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배려 부족, 선수대기실, 연습시설 미구비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그에 대한 원인으로 인권친화적 대회 운영에 대한 관심 및 참가 선수에 대한 배려 부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승부에만 집착하여 대회 분위기 과열, 인권친화적 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등 매뉴얼 부재 등으로 분석하였다.

경기대회 인권상황 개선 검토과제로서 경기대회 인권보호체계 마련, 선수 건강권 보호 기준 마련, 경기대회 필수 시설 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포괄하는 인권친화적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운영 관련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체육회 및 개별 종목 단체에서

종목별 특수성을 반영한 「종목별 경기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경기대회 운영 지침」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스포츠인권현장·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현장의 인권친화적 행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수들의 폭력·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등 제한된 영역에 한해 <스포츠인권현장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 권고하였다.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인권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현장 및 가이드라인의 정비(개정)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전문 체육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단체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경험과 인식 관련 표본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선수들의 경우 자신이나 주변 동료들 가운데 폭력·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에 달했으나,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 관련 대처 방안과 처리 대응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선수는 83%에 이르렀다.

이는 스포츠 관련 입법 노력과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스포츠인권의 법체계가 정비되고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스포츠인권현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선행연구와 외국의 스포츠인권 주요 선언과 지침 등을 검토하고 기존 현장과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과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스포츠 인권현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에는 기존의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외에도 모든 스포츠 참여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와 학생 및 여성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스포츠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지침 등으로 더욱 확장된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전화·메일·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용 신고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선수들의 운동시간 등 훈련 일정에 따라 야간시간(18~24시) 상담 및 신고가 용이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24시까지 업무를 연장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에 대한 구제는 12월 31일 기준, 92건의 개별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조치 권고 8건, 조사중해결 2건 등을 포함, 138건을 종결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염려를 불식하는 가운데 축적되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높은 구제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주요 권고 사례로는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 및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중학교 ○○부 감독의 학생선수 폭행에 대한 인권침해,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대학의 집단행위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 ○○지도자 간 성희롱 및 소속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사후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가 있다.

■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7월 13일 ○○○○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운동경기나 연습



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할 때 불필요한 물리적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계 문화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19-진정-0696700).

피진정학교는 ○○부 코치가 일부 학생선수에게 꿀밤(머리를 쥐어박는 행위)을 준 일은 있으나, 이에 대해 학생들이 코치가 폭행,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여거나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진정학교 ○○부 코치가 경기 내용을 이유로 학생선수에게 꿀밤을 준 사실이 있으며, 특히 4학년 및 5학년 선수들 중에는 코치가 선수들의 머리를 손이나 ○○공, 작전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코치의 행위가 단지 가볍게 머리를 쥐어박는 수준을 넘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피해자들 스스로 ○○코치의 행위를 폭행이나 심각한 행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운동경기나 연습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할 때 불필요한 물리적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계 문화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체육대학의 집단행위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0월 8일 ○○○○체육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체육대학교 학칙」 제8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319700).

피진정체육대학은 체육대학교 학칙 제81조의 취지는 ‘교육’과 ‘학업’이라는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모든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향후 총학생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식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학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학칙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한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바, 피진정체육대학이 본래 엘리트 국가대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체육학과 학생들은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체육대학 학생들의 인권이 좀 더 제한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체육대학 학칙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위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 본연의 운영 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학칙으로 규제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칙은 확대 해석의 소지가 상당하고,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중학교 ○○부 감독의 학생선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5월 25일 ○○체육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경고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528200).

체육교사인 피진정인은 운동선수들이 학교 주변 주택가 등지에서 여러 차례 음주와 흡연을 하여 학생 지도 차원에서 체벌을 하였는데, 이후 피진정인이 미안한 감정에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운동부 지도자인 피진정인이 학생선수들을 선도하는 차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교육적이고 사회 통념에 어울리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생선수들을 체벌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스포츠계 및 일반 국민 대상 스포츠인권 홍보활동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스포츠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스포츠인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모음으로써 스포츠계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스포츠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립된 첫해부터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2021년은 스포츠인권의 지역 현장 확산을 위하여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역 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성, 메시지의 통일성 그리고 참여 방식의 주체성에 있다.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스포츠인권의 지속적인 이슈화와 스포츠계의 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년부터 2021년 시즌3까지 캠페인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였고, ‘#즐거워야 스포츠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여 인권이 먼저인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본래 목적인 즐거움을 향유하고 함께 인권을 지켜갈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 이슈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온라인에 각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과 나만의 선서문을 등록하고, 이를 개인의 SNS에 공유하여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나 대대적인 현장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선서 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2019년 2,400여 명, 2020년 3,600여 명, 2021년 4,100여 명으로 누적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제5절 평가

2021년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새롭게 나타나는 인권침해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였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한편 이주민, 아동·청소년, 스포츠 인권 현안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시 공공성 강화 및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병상종목 선수 정책권고를 하였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랜스젠더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정신 장애인 인권보고서 채택 및 활용 권고,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상황에서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보호시설, 갯생보호시설, 군 교정시설, 해양경찰청 유치장,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에도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와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록 법적 요건 미비, 형식적 흠결 등으로 각하·기각되는 사건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정책권고, 의견표명을 통해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인권침해 주요 사례로는, 검사 신규 임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련 개선 권고, 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요구 관련 의견표명,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 관련 개선 권고, 침몰 선박에 대한 추가 심해 수색 미추진 관련 의견 표명, 사회복지시설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불허 관련 제도개선 권고, 교사에 대한 육아시간 사용 불허 관련 의견표명,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 관련 의견표명,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미보장 관련 의견표명 등이다.

차별행위 주요 사례로는, 지자체의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와 혐오표현 현수막 미조치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무기계약직 보수 체계 개선 의견표명, 교육전문직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 미인정 제도개선 권고, 영·유아용품의 색깔 및 역할의 성별 구분으로 인한 차별 관행 개선 의견 표명, 성소수자 혐오표현 방지 관련 의견표명, 언론 기사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다.

인권 관련 법령 분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데이터 기본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인신매매, 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하였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다양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에도 입법과 정책 현황 분석,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 정책과 제도개선 의제를 더욱 활발하게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⁹⁾·공직유관단체¹⁰⁾와 구금·보호시설이 그 업무의 수행¹¹⁾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단체·사인(私人)이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진정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진정 제기로 개시된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등 제3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구술·전화로 진정하기 어려운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받는 면전진정¹²⁾ 제도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1)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조치 등을 권고한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2021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1만 29건으로 전년 대비 1,013건(11.2%) 증가한 반면, 처리 건수는 9,287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권고 건수가 504건으로 전년 대비 79건(13.6%) 감소하였는데, 2020년과 달리 장애 차별 집단진정이 대폭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21년까지 진정사건 누적 권고수용률은 91.4%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권고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처리 및 권고수용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권고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 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 수용 (B)	불수용		
누 계	161,013	156,816	5,898	5,395	4,216	717	462	503	91.4
2021	10,029	9,287	504	210	173	17	20	294	90.5
2020	9,018	9,272	583	433	347	57	29	150	93.3
2019	9,768	9,147	492	437	380	35	22	55	95.0
2018	9,288	10,188	547	544	468	47	29	3	94.7
2017	12,336	11,012	357	356	267	66	23	1	93.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통계작성기준 전부수용률은 (전부수용)/(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100

일부수용률은 (일부수용)/(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100

전체수용률은 (전부수용+일부수용)/(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100

※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지침」(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09호)에 따라, 수용률 계산에 있어 '검토중'인 사안은 제외

2021년 진정사건 피권고기관은 교육기관 139건(전년 124건), 지방자치단체 75건(전년 78건), 경찰 60건(전년 70건), 중앙행정기관 60건(전년 60건), 공공기관 44건(전년 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인보호시설, 군, 교정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검찰 등은 권고수용률이 100%로 나타났다.

[표 2-2-2] 2021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건, %)

구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 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 수용 (B)	불수용		
합 계	512	223	190	17	16	289	92.8
검찰	5	2	2	-	-	3	100.0
경찰	60	35	33	-	2	25	94.3
국정원	-	-	-	-	-	-	-
군	20	13	12	1	-	7	100.0
중앙행정기관	60	29	24	3	2	31	93.1
입법기관	-	-	-	-	-	-	-
사법기관	3	-	-	-	-	3	-
기타국가기관	2	1	1	-	-	1	100.0
지방자치단체	75	28	24	3	1	47	96.4
공공기관	44	20	17	-	3	24	85.0
교육기관	139	41	32	5	4	98	90.2
교정시설	15	7	6	1	-	8	100.0
다수인보호시설	28	16	15	1	-	12	100.0
출입국관리기관	3	1	1	-	-	2	100.0
의료기관	3	3	2	-	1	-	66.7
비영리법인 및 단체	15	6	5	1	-	9	100.0
기업 등 영리단체	27	14	10	2	2	13	85.7
개인 및 개인사업자	10	7	6	-	1	3	85.7
기타	3	-	-	-	-	3	-

※ 진정사건 1건별 권고 수용 현황이 아닌 피권고기관별 수용 현황이다.

진정사건 권고 1건에 피권고기관이 1개 이상인 경우를 감안하여 피권고기관별 수용 현황을 파악한 통계이다.



긴급구제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정된 4건 중 1건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피해자를 피진정시설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시설로 전원 조치하라는 권고였다.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직권조사 7건을 개시 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 직권조사 6건을 포함하여 10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구제조치 권고 8건, 징계권고 1건, 직권조사 종결 1건이다.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시설 방문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7건에 대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 조사건을 포함하여 7건을 처리하였다.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방문조사,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갯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등 6건에 대해서는 정책권고를 하였고,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해당 시설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종결하였다.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위원회는 권리구제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단계에서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감염병 방역 강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1.2% 증가하였다.

진정사건은 1만 29건, 상담 3만 6,343건, 민원·안내(조사 대상 및 접수 절차, 타 기관 안내 등) 4만 4,137건이 접수되어, 2020년보다 진정은 1,013건(11.2%), 상담은 8,129건(28.8%) 증가하였으며, 민원·안내는 3,869건(8.0%)이 감소하였다.

[표 2-2-3]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 / 안내	합계
누계	161,013	466,921	608,232	1,236,166
2021	10,029	36,343	44,137	90,509
2020	9,016	28,214	48,006	85,236
2019	9,768	33,440	44,959	88,167
2018	9,288	32,278	45,622	87,188
2017	12,336	36,370	42,925	91,63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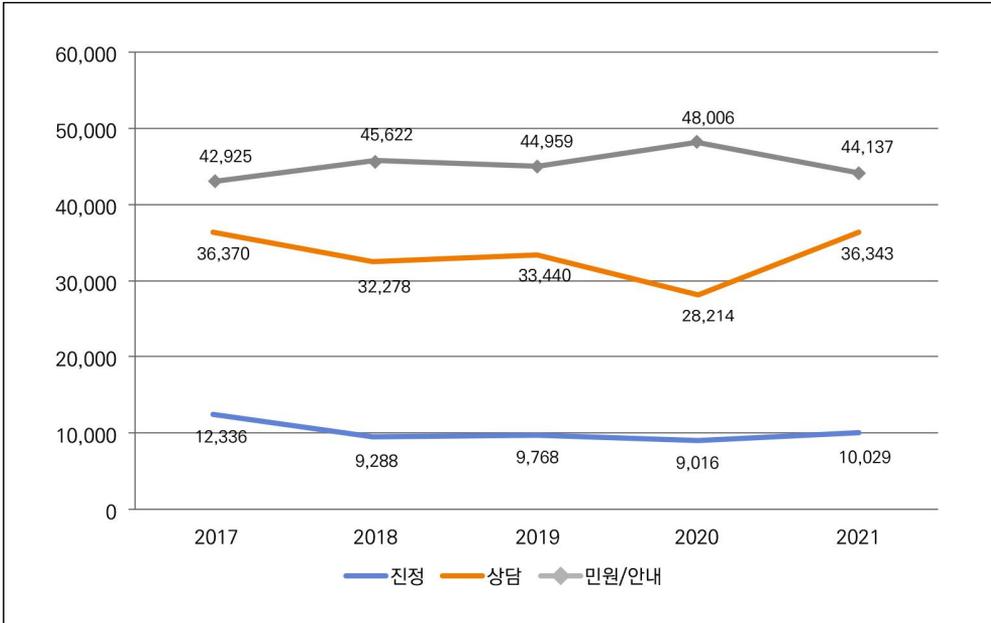
※ 상담은 면진진정 상담종결 건수를 포함한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단위: 건)



1. 인권상담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권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부터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내담자의 수요가 많은 법률·노무·인권일반으로 분야로 집중하고, 상담예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수어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가.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21년 12월 말까지 처리한 상담은 46만 6,000여 건에

이르며, 2021년에는 3만 6,343건으로 2020년 대비 28.8% 증가하였다. 2021년 상담의 유형별 분석 결과,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전체의 45.5%, 차별행위 관련 상담이 7.7%, 면전진정 상담종결건이 3.7%, 기타 상담건이 43.1%를 차지하였다. 2020년과 비교하여 전체 상담건에서 인권침해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4.4% 증가하였고, 차별행위 관련 상담은 0.6% 감소하였다. 한편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 간 침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 관련 사항 등이다.

[표 2-2-4] 최근 5년간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합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면전진정 상담종결	
누계	466,921	180,889	38.7	39,025	8.4	216,974	46.5	30,033	6.4
2021	36,343	11,615	32.0	2,054	5.7	21,602	59.4	1,072	2.9
2020	28,214	12,231	43.4	2,177	7.7	12,727	45.1	1,079	3.8
2019	33,440	13,743	41.1	2,767	8.3	15,874	47.5	1,056	3.1
2018	32,278	12,970	40.2	2,772	8.6	15,365	47.6	1,171	3.6
2017	36,370	14,737	40.5	3,236	8.9	17,095	47.0	1,302	3.6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나. 인권침해 상담

2021년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4,030건 (3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8년 49.5%, 2019년 43.5%, 2020년 39.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매년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상담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2017년 5월)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 심사가 강화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 효과로 분석된다.



다수인보호시설 다음으로 경찰 관련 상담이 1,885건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인권상담이 2019년 4건에서 2020년 610건, 2021년 68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도 801건으로 2020년 718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상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시설 특성상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서면이나 면전진정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대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289건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 인권침해 빈도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장병 등의 위원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5]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누계	2021	2020	2019	2018	2017
합 계	180,889	11,615	12,231	13,743	12,970	14,737
검찰	5,414	191	218	250	231	265
경찰	34,567	1,885	1,777	2,405	1,933	2,281
국정원	283	14	14	4	10	11
중앙행정기관	1,796	79	116	45	58	147
지방자치단체	11,227	796	783	799	747	826
사법기관	2,474	157	168	149	136	143
입법기관	118	7	5	8	3	13
기타 국가기관	9,199	351	454	774	499	630
교정시설	4,828	247	277	370	302	428
다수인보호시설	80,073	4,030	4,776	5,973	6,418	7,324
군	5,350	289	294	362	366	397
교육기관	10,543	900	813	1,253	1,078	1,171
출입국관리기관	969	65	37	51	52	70
공공기관	5,268	801	718	553	543	539

구분	누계	2021	2020	2019	2018	2017
의료기관	659	274	295	4	5	13
기업 등 영리단체	973	452	384	15	12	13
비영리법인 및 단체	291	158	123	6	1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1,336	685	610	4	5	5
기 타	5,521	234	369	718	571	460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상담 건수에서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이다.

다. 차별행위 상담

2021년 역시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전체 차별행위 상담의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희롱 관련 상담이 474건(23.1%), 그 뒤를 이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229건(11.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07건(5.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90건(4.9%) 등의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매년 장애차별 관련 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¹³⁾ 등을 통한 차별시정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6]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누계	2021	2020	2019	2018	2017
합 계	39,025	2,054	2,177	2,767	2,772	3,236
성 별	1,270	72	96	110	98	122
종 교	303	7	21	22	27	32
장 애	12,923	614	639	955	998	1,065

13)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③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구분	누계	2021	2020	2019	2018	2017
나 이	2,316	107	90	123	133	144
사 회 적 신 분	3,373	229	262	262	189	231
출 신 지 역	255	12	23	15	15	12
출 신 국 가	963	90	83	50	46	49
출 신 민 족	65	13	8	5	1	1
용모 등 신체조건	548	19	34	29	33	54
혼 인 여 부	198	4	7	5	10	19
임 신 · 출 산	680	48	33	63	53	75
가 족 상 황	287	16	14	14	17	33
인 종	82	14	7	5	3	6
피 부 색	22	1	1	2	1	-
사상·정치적 의견	119	2	6	10	9	4
전 과	471	17	20	19	27	34
성 적 지 향	101	8	10	9	6	12
병 력	1,132	83	62	62	57	115
학 별 · 학 력	443	21	24	23	13	32
성 희 롱	10,068	474	542	759	835	963
기 타	3,406	203	195	225	201	23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상담 건수에서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이다.

라. 진정함 점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에 의무로 부과된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까지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 대부분의 수용자가

편지지 및 봉투, 필기구를 소지해 개인별 우편을 이용하고 있어 진정함 이용 실적이 저조하며, 교도소 진정함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진정함을 이용한 진정건은 거의 없다. 이에 진정 접수 경로별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의 진정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16만 1,013건인데, 이 중 75.8%인 12만 2,093건이 인권침해, 22.7%인 3만 6,504건이 차별행위, 1.5%에 해당하는 2,416건이 기타 사건이다. 2021년 접수한 진정사건 1만 29건 중 인권침해는 7,430건(74.1%), 차별행위는 2,559건(25.5%)이다.

2020년 대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1,013건(1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감염병 방역 강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갈등이 빚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표 2-2-7]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합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합계	기타		
누계		161,013	122,093	75.8	36,504	22.7	2,416	1.5
2021		10,029	7,430	74.1	2,559	25.5	40	0.4
2020		9,016	6,557	72.7	2,426	26.9	33	0.4
2019		9,768	6,986	71.5	2,730	28.0	52	0.5
2018		9,288	7,054	75.9	2,209	23.8	25	0.3
2017		12,336	9,132	74.0	3,170	25.7	34	0.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3. 면전진정

200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구급·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은 총 6만 4,420건이 접수되었다. 2021년에 종결 처리된 면전진정 2,318건 중에 323건(13.9%)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1,072건(46.2%)이 상담종결, 923건(39.8%)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 처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건수는 면전진정 접수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으며, 상담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문의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관여할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2021년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면전진정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처리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면전진정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전진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2-2-8]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별	접수	처리						
		소계	진정 접수		상담종결	철회		
누계	64,420	63,969	15,860	24.8	30,033	46.9	18,076	28.3
2021	2,411	2,318	323	13.9	1,072	46.2	923	39.8
2020	2,529	2,376	314	13.2	1,079	45.4	983	41.4
2019	2,669	2,649	573	21.6	1,056	39.9	1,020	38.5
2018	2,648	2,654	570	21.5	1,171	44.1	913	34.4
2017	2,765	2,858	672	23.5	1,302	45.6	884	30.9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4. 민원

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 접수 및 조사 업무 이외에도 각종 민원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민원 처리 건수는 총 3만 9,6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 이용 수단을 살펴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2만 1,815건(55.1%)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1만 3,119건(33.1%), 우편/FAX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4,528건(11.4%) 순이다. 범정부 통합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포함하면 88.2%의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표 2-2-9] 최근 5년간 접수 경로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합계		인터넷		대통령 비서실		국민 신문고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계		303,894	63,980	21.0	133,000	43.7	737	0.2	104,926	34.5	1,251	0.4
2021		39,605	4,528	11.4	13,119	33.1	34	0.1	21,815	55.1	109	0.3
2020		33,668	3,975	11.8	9,513	28.3	2	0.0	20,044	59.5	134	0.4
2019		30,280	4,754	15.7	8,545	28.2	1	0.0	16,788	55.4	192	0.6
2018		29,607	4,785	16.2	9,909	33.4	18	0.1	14,705	49.7	190	0.6
2017		25,626	5,399	21.0	7,612	29.7	24	0.1	12,472	48.7	119	0.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표 2-2-10]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누계	2021	2020	2019	2018	2017
합계	303,894	39,605	33,668	30,280	29,607	25,626
진정 접수 절차 안내	27,458	1,317	2,739	2,627	2,077	1,622
조사 대상 안내	68,364	4,418	4,839	3,493	6,220	3,949
진정 내용 보완 요구	4,369	239	361	530	982	489
진정사건 처리 안내	1,627	38	111	122	153	51
법령 등 자료 송부	703	4	17	2	3	2
질의 회신	785	-	-	-	-	-
면전진정 안내	509	23	26	10	6	7
타 기관 이송*	64,083	17,617	16,315	12,818	11,218	8,410
타 기관 안내	1,832	91	653	145	18	74
진정 접수 안내	58,894	5,611	4,502	4,619	3,513	6,959
민원인 취하	1,104	68	31	141	23	72
공람종결	2,038	33	26	199	263	52
처리종결(회신무)	27,157	1,935	1,253	1,182	1,263	1,236
민원 회신	37,105	7,993	2,198	4,231	3,811	2,633
기타	7,866	218	597	161	57	70

*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타 기관으로 이송한 민원 포함이다.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제3절 기초조사 및 조정

2018년 2월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국의 조사관별 보유 사건 증가로 사건의 적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조사력 상당 부분이 각하사건 처리에 투입되어 오히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주요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접수 초기 단계에서 각하·조정·합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개편하고 진정사건의 기초조사 및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초조사·조정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기초조사

기초조사·조정팀이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전체 진정 접수 3만 2,067건의 13.5%(4,329건)를 배정하여 같은 기간 전체 종결 3만 1,855건의 13.6%(4,329건)를 처리하였다.

2021년에는 전체 종결 건수 9,287건 중 782건(8.4%)을 처리하였다. 2021년도의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의 민원 업무 증가로 기초조사팀이 민원 업무에 투입되어 기초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활한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도부터 인권상담조정센터 기초조사 업무를 조사부서로 이관하였다.



[표 2-2-11] 진정사건 기초조사 배정 및 종결 현황

(단위: 건)

기간	배정 진정사건 수		종결 진정사건 수	
	전체 배정 건수	기초조사팀 배정 건수	전체 종결 건수	기초조사팀 종결 건수
합계	32,067	4,329(13.5%)	31,855	4,329(13.6%)
2021	10,029	745(7.4%)	9,287	782(8.4%)
2020	9,016	1,210(13.4%)	9,272	1,234(13.3%)
2019	9,768	1,799(18.4%)	9,147	1,787(18.9%)
2018. 8. ~ 12.	3,254	575(17.7%)	4,149	526(12.7%)

2. 조정

2021년 조정사건은 14건 접수하여 모두 각하 처리되었다. 2017년에 조정 신청이 38건이 접수되어 19건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조정 성립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2-2-12]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소계 (①+②+③)	조정 성립 ①	조정 불성립 ②	조정갈음결정		각하 ③
					성립	이의신청	
누계	184	184	74	32	(10)	(6)	78
2021	14	14	-	-	-	-	14
2020	6	6	2	3	-	-	1
2019	9	9	1	1	-	-	7
2018	22	26	7	3	(4)	-	16
2017	38	43	19	4	(1)	-	20

* 조정갈음결정의 () 안 숫자는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제4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진정사건 접수

2021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총 7,430건이 접수되어 2020년보다 873건(13.3%)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였던 교육기관, 경찰, 중앙행정기관 사건 수가 회복되거나 증가한 영향이 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용모 및 복장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교육기관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격리, 백신접종, 음성확인제 등 방역 관련 조치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증가하였다. 반면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2-13]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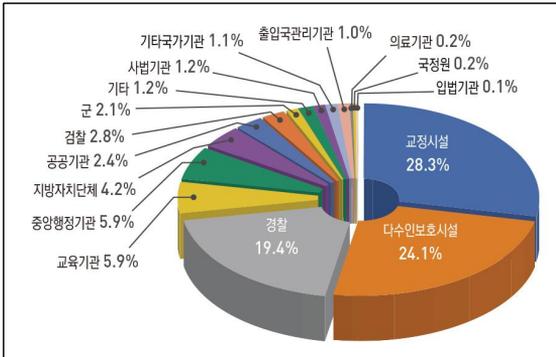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합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중앙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정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다수인보호시설	의료기관	기타
누계	122,093	3,387	23,674	268	2,510	7,189	106	1,420	1,316	5,144	2,952	7,175	34,590	1,161	29,451	290	1,460
2021	7,430	97	1,259	12	238	511	10	92	38	484	362	877	1,830	91	1,223	52	254
2020	6,557	118	1,192	4	200	332	9	70	28	392	276	535	1,714	57	1,426	59	145
2019	6,986	146	1,320	10	190	447	4	85	28	405	294	669	1,693	50	1,499	26	120
2018	7,054	128	1,259	12	187	263	3	59	15	273	208	583	1,827	67	2,091	11	68
2017	9,132	219	1,543	12	251	451	10	102	30	412	286	745	2,269	74	2,636	22	70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그래프 2-2-2]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21년 말까지 인권침해 진정 누적 건수는 12만 2,093건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접수 현황을 피진정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정시설 관련 진정이 3만 4,590건(28.3%)으로 가장 많고,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 2만 9,451건(24.1%), 경찰

관련 진정 2만 3,674건(19.4%), 중앙행정기관 관련 진정 7,189건(5.9%) 순이다. 구금·다수인보호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진정사건 처리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2021년 6,839건 처리하여 2020년에 비해 460건(7.2%) 증가하였다.

2021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는 695건으로 2020년 대비 64건(10.1%)이 증가하였는데, 구제조치 권고와 조사중해결이 2020년 대비 각각 52건, 33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반면 징계권고와 합의종결은 각각 13건, 9건 감소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기관(▲92건), 중앙행정기관(▲23건)의 권리구제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권리구제율¹⁴⁾은 2020년 9.9%에서 2020년 10.2%로 상승하였다. 권고 건수 역시 2020년에 비해 39건 증가하였다.

14) 권리구제율: 권리구제 건수/처리 건수(%)

[표 2-2-14]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법률 구조 요청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누계	122,093	119,210	13,753	147	3,455	20	15	1,890	8,226	68,636	1,582	34,623	616
2021	7,430	6,839	695	-	343	1	-	28	323	3,799	34	2,257	54
2020	6,557	6,379	631	-	304	-	-	37	290	3,930	39	1,765	14
2019	6,986	6,641	530	3	244	-	-	24	259	4,167	125	1,817	2
2018	7,054	7,705	667	3	209	-	-	122	333	4,697	74	2,248	19
2017	9,132	8,575	874	8	209	-	4	59	594	5,414	96	2,166	2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한편 2021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처리 건수는 교정시설 1,774건, 다수인보호시설 1,238건, 경찰 1,119건, 교육기관 767건, 지방자치단체 453건, 중앙행정기관 434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권리구제 건수는 교육기관 235건, 경찰 109건, 다수인보호시설 79건, 교정시설 58건, 중앙행정기관 46건, 공공기관 41건, 군 40건, 지방자치단체 40건 순으로 많았다.



[표 2-2-15] 2021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중결	조사중 해결				
합계	7,430	6,839	695	-	344	-	28	323	3,799	34	2,257	54
검찰	97	93	6	-	4	-	-	2	49	-	38	-
경찰	1,259	1,119	109	-	64	-	2	43	448	8	545	9
국정원	12	11	-	-	-	-	-	-	6	-	5	-
군	238	161	40	-	23	-	2	15	70	2	48	1
중앙행정기관 ¹⁵⁾	511	434	46	-	21	-	1	24	223	4	161	-
입법기관	10	8	-	-	-	-	-	-	6	-	2	-
사법기관	92	69	4	-	2	-	-	2	48	1	14	2
기타 국가기관 ¹⁶⁾	38	32	1	-	1	-	-	-	14	-	17	-
지방자치단체	484	453	40	-	17	-	2	21	250	4	154	5
공공기관 ¹⁷⁾	362	337	41	-	8	-	3	30	189	2	103	2
교육기관 ¹⁸⁾	877	767	235	-	133	-	4	98	335	1	194	2
교정시설 ¹⁹⁾	1,830	1,774	58	-	24	-	-	34	1,011	4	691	10
다수인보호시설 ²⁰⁾	1,223	1,238	79	-	32	-	10	37	920	3	213	23
출입국관리기관	91	75	16	-	6	-	-	10	26	-	33	-
의료기관	52	47	5	-	1	-	2	2	29	1	12	-
기타	254	221	15	-	8	-	2	5	175	4	27	-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15) 부·처·청 등 중앙행정부처 및 그 소속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군, 교정시설, 출입국관리기관 등 제외)

16)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기관

17)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및 지정되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

18)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 각급 학교 및 관련 법인, 특수학교, 기타 학교, 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19)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교도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군 교도소 제외)

20)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2. 직권·방문조사

가. 직권조사

■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직권조사

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군 장병 두발규정에서 공군 간부들에게는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조사 중 두발규정 차등 적용 문제는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유사 취지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1일 전군으로 확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 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및 병사 면접조사 시에도 전시 상황을 대비한 두발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등을 두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납득)되기 어려우며,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1월 2일 각 군에서 마련한 두발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이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병사에게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군 임무 수행을 고려해 간부와 병사들 간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두발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교정시설 내 중증질환수용자 사망관련 직권조사

2월 22일 중증질환자 상태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기소 이후 건강이 악화하여 4월 15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4월 30일에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6월 4일, 피해자가 수술 직후 구속되었고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의 열악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 경과와 부검 결과를 고려할 때 응급조치나 의료조치 미흡이 의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된 의료조치 내용의 적정성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망 전후 조치 사항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 등 직권조사

위원회는 4월 정신의료기관 내 과도한 행동 규칙 등으로 입원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접수된 내용 외에도 피진정기관의 과도한 행동 제한으로 인한 입원 청소년들의 피해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해당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 환자는 모두 청소년이며,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었다. 피조사기관장은 이 병원과 대안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조사기관장은 청소년 환자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 규칙을 정하여 부당한 수업 제한, 격리·강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면회 제한 등 수십 가지의 행동을 제한하였다.

위원회는 12월 16일 개별화된 행동 조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행동 제한을 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조사기관장의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과 병실과 교실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해 청소년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교육감에게 청소년의 치료·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피조사기관에 피해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행동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5월 30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하 ‘피조사시설’) 거주 장애인의 ‘위공장문합 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가 피해자의 위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 6월 1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였고, 해당 기관은 6월 3일 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하였다. 이에 6월 4일 관련자와 면담한 결과, 피해자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술 집도되는 “위공장문합 부위 천공은 통상 위궤양, 이물질, 외부 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피해자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점,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었던 점,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수술 시 위장 내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폭행으로 인한 위 천공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피조사시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한 결과, 5월 30일 오전 8시경 피해자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후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종사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남성휴게실 안에서도 제압 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피조사시설 내부 자료 및 관계인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당일 아침 식사도 평상시처럼 마쳤는바,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를 피해자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 6월 21일 피조사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원인 불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위원회는 11월 3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동일 병원 내 부당한 입·퇴원 반복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2개의 진료과(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 운영 중인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도 서류상 퇴원 처리 후 같은 날 가정의학과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사 의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한 결과, 피해환자의 수가 140여 명에 이르고 병원장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직원의 진술 등 관행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정황과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가 있고, 피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27일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조사 대상은 피조사병원의 최근 3년 이내 입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환자 대부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병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원일 수에 따라 정액 수가가 변동 요인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피해환자가 142명 1,234건에 달하였다.

위원회는 1월 20일 피조사기관의 장을 경찰에 의료법위반 혐의(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등)로 2021년 1월 20일 수사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료비 청구 내역을 재심사할 것과 자의입원 환자 38명 45건에 대해서는 자의입원 환자임에도 2개월 간격으로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을 지속한 행위,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입·퇴원 처리가 되어 있는 환자가 45명 등은 전문의 대면 진료 없이 부당 입원 처리한 행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부당 입·퇴원 처리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행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는 12월 16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방문조사

■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위원회는 매년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교정시설 의료처우 상황 점검, 의료자원 보유 및 운영 실태, 의료 및 건강권 관련 위원회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방문조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교도소,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교도관, 의무관 면담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관행·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 2021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위원회는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보호외국인의 보호시설 생활환경과 외부교통권 보장 여부, 수용 환경, 의료지원, 권리구제 절차 보장 여부, 장기보호 대안에 대한 노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위원회는 8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보호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부 조사단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단을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외국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요청하였고, 관행·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 2021년 아동양육시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2020년 아동양육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이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3개 시설에 대한 조사 후 잠정 중단되었으나, 2021년 3월에 2개소, 다시 10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계기로 5개소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총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아동의 권리보장체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자립지원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파악 등 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및 보장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역시 2020년 각각 10개소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조사가 잠정 연기되었다가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021년 5월과 6월, 11월 등에 걸쳐 전국 단위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입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 보호가 미흡한 점, 과밀 수용으로 인한 개인 공간의 부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이동권과 외부교통권의 제한, 신분증이나 통장 관리의 대행, 인권지킴이단의 형식적 운영, 자립생활 지원 미흡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11월과 12월에 걸쳐 전국 단위 9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내 학대 사안, 시설 내 인권보장체계 등에 대한 조사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소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 사이 교통권이 제한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위원회는 이 밖에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노숙인일시보호소 방문조사, 갯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²¹⁾.

21) 방문조사 내용은 <제1장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정책권고 주요 내용'에 작성함.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가. 검찰·경찰·법원

■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주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조사를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2월 24일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주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 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219400).

조사 결과, 피해자가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 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하였고,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였으므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이전에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인실 병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내 사회적 지지 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관계 규정에 따라 영사 기관원과 접견·교통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경찰의 신분증 미제시 등 부당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2월 24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20-진정-0615400).

조사 결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권고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관들이 미대사관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들을 제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4월 27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19-진정-0842800).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나 시위 개념에 들지 않지만, 릴레이 형식의 1인 시위 및 시위 모습을 촬영하는 협조자가 있는 경우 등을 1인 시위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머물렀더라도 시위자를

조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2인 이상이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로 간주하면 집시법 적용을 피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 온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피켓 내용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같은 곳에서 1인 시위가 있었던 점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관 지역에서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경비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해양경찰청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6월 22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한 관계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20500).

조사 결과, 해양경찰청은 2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피해자의 채무 총액과 도박

채무액을 공개하고,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피해자의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는데, 위원회는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밝힌 피해자의 채무 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고, 당시 발표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보더라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인의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경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유 미고지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7월 22일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줄 것과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122500).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사항이 담긴 「형사소송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사건 결과를 통지하면서 불송치 사유에 대해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 ○○○, ○○○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다. 위원회는 별지에 기재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서 일부 송치한 근거나 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8월 19일 대마초를 흡연하여 긴급 체포된 진정인에게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 진행 시 수갑을 사용한 채 조사를 받게 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자를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07600).

피진정인들은 대마초 흡연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큰 폭의 감정기복으로 인해 조사 중 진정인의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크고, 공범과 공모하여 피진정인 및 참여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조사 내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의 질문에 순응하며 답변하는 모습만 보일 뿐 진정인의 감정기복의 변화와 공범과의 공모, 기타 도주 우려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갑을 사용할 경우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수갑 사용 필요성과 요건이 관련 규정에 부합했음을 입증해 보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군²²⁾

■ 공군의 색약자에 대한 지원 차별

위원회는 4월 1일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현역병 선발 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08200).

22) 군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주요 결정례 수록

피해자는 2020년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공군은 색약자에 대해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 지원만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과와 무관한 피해자는 결국 공군 현역병에 지원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공군이 현역병 모집 시 일반 지원자에 비하여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현역병 모집제도는 징병제 속에서도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군 생활과 향후 진로의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향후 인생 목표와 능력, 희망에 따라 지원 시기, 지원 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공군은 육·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색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제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5월 27일 해군사관학교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다(21-진정-0114900).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교제 전면 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이성교제 금지 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군사관학교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징계 생도에 대한 권리회복 조치를 하였고,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전면 개정하여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군 복무 중 사망병사 사인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 사건

위원회는 6월 22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복무 중 당직근무 등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부대 측이 신상관리 및 생활관 내 고충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휴가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심사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267900).

이 사건 피해자인 병사는 사망 한 달여 전인 2020년 6월경 당직근무에 3일 연속 배치되어 피로감을 느끼고 이를 일기장 등에 기록하였으며, 생활관에서 햇살로 인한 숙면의 어려움을 호소(이는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내무실 병사들의 공통된 반응임)하면서 블라인드 커튼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군 생활 중 잠이 부족하여 근무 중 졸다가 지적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사망과 군 생활 및 교육훈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순직 여부의 심사는 군 수사기관의 직·간접적인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나 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차원의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자살사건의 경우 상급자에 의한 폭언·욕설 등과 같은 병영 부조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되고, 순직은 사망자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던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사망은 '군 복무(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순직으로 인정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이런 판단이 현재의 법령상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망자가 군 복무 상황으로 말미암은 급격한 심리 변화와 불안정한 상태를 겪었음을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한 신(新) 인성검사와 같은 국가의 제도가 그 위험을 감지해 내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인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군 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군 입대로 인한 피해자의 환경 변화, 정신적·심리적 어려움 가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 고려하여 피해자를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재심사를 권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순직을 인정하였다.

■ 육군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 시 남성 배제로 인한 차별

위원회는 9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3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69300).

이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3명의 자녀를 둔 여성과 임신한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게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육군은 모든 자녀가 아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는 모성 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서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장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고,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으로 판단하였다.

■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신원정보 조회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신원조회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의 부대 출입에 있어 군사보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면소, 실효된 범죄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고 신원특이자의 부대 출입 시 필요한 유형별 보안대책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74400).

조사 결과, 현행 신원조사 업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 그리고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등의 신원조사 위임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공항, 한국은행 등과 같이 중요 국가안전보장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관은 모두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를 토대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경찰청의 경우에는 신원조회기관에서 대상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및 통보 시 그 범위와 통지 내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그러한 노력 없이 군사보안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평생의 범죄경력 전체를 회보하고 있다는 점, 신원특이자에 대한 유형별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없이 신원특이자로 통지된 사람의 경우 부대 출입이나 공무원 임용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신원조회 시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금시설

■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다수의 진정사건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 처우라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였다. 조사 결과,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의 최소 수용면적은 1인당 2.58㎡이나 수용 기간 중 1.40㎡인 상태로 생활한 기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처우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7조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3월 31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소속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914100).

피진정기관은 2020년 12월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검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확진 수용자의 경우에는 구분 수용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알려준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호할 의무는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의 의무이며, 진정인의 경우 검사 이후 본인에게 발생하는 증상이나 피진정인의 처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당시 피진정기관 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라 할지라도 1인 격리를 하지 못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받아 불안을 해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기관은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 구치소의 코로나 유증상자 혼거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3월 3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을 또 다른 밀접접촉 수용자와 같이 수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등 심리적 고통을 겪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구치소에 대하여 기관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72200).

■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8월 10일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지방교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148200 등 2건 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진정인들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용자에 대한 방송 인터뷰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교도소장이 수용 중인 진정인에 대한 인터뷰와 촬영을 목적으로 A 방송사가 발송한 협조 공문을 불허하여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9월 17일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방송 인터뷰 촬영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70600).

위원회는 확정판결을 부인하는 수용자 주장에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형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기관이 이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에서 한정된 수단을 사용하여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러 제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크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사법 질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공익은 그 효과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만약 수용자가 표현하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외부의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사후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인터뷰를 허용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아무런 여과도 없이 수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방영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 공익 저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 구치소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위원회는 9월 17일 해당 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 정지 등 피구금자 건강상태의 중대한 변화를 피구금자의 보호자 및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37700).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피해자는 2020년 12월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피진정기관이 ○○○○지방검찰청에 형집행 정지를

건의하고, 12월 24일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허가하는 결정과 석방지휘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일시 수용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진정기관은 12월 26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하였으나 피해자는 12월 27일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정도의 사람만이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였고, 피해자의 경우도 그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반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사실 미통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단순히 감염병 확진 소식뿐만 아니라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형의 집행이 정지되어 외부 병원에 이송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신속하게 건의되고 다음 날 형집행 정지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코로나19 및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구금자의 보호자나 가족에게 건강상태에 대한 통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0월 8일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일명 ‘새우깍기’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과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51000 등 2건 병합).

이 사건은 진정 접수에 앞서 진정인의 행동과 보호장비 사용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수차례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위원회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조사 결과,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른바 ‘새우껍기’)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수갑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 포승에 대해서는 유의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 및 규정 미비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보았다.

한편 법무부는 위원회 결정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외국인보호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는 영장주의에 준하는 인신구속 절차, 적발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이동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위원회는 10월 22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소홀의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교도소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744200).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해자의 건강상 이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양손수갑을 사용하게 한

것은 보호장비 사용 요건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사망일 전날 14시 25분경부터 사망일 06시 20분 피해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양손수갑을 총 15시간 15분 사용하고 약 40분간 일시 중지하였는데, 일시 해제 중에도 피해자가 식사 및 용변을 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사유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당시 야간근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장비가 사용 중임을 인지할 수도 없었고, 동정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볼 때,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기관 교도관의 조치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 점이 인정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5일 법무부 장관에게 감호병과자의 형기종료일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후에 이송을 실시하는 관행을 중지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09301).

위원회는 보호감호가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 다르므로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처우 또한 달라야 하며, 국가형벌권의 최종적 실현인 형의 집행은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형기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시설의 기능이 없는 교정기관에서 계속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라고 보았다.

또한 2009년 법무부의 지시 및 그에 따라 굳어진 관행에 따라 감호병과자의

형기종료일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후에 이송을 실시하여 보호감호시설이 아닌 교도소에 수용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보호감호병과자 전담기간 이송 시기 관련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직전 평일에 이송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2월 3일 해당 구치소장에게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실시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2050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르면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이 규정에 따른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처벌 목적의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황이나 표징이 없음에도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라. 다수인보호시설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동선 신고 요구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예상 이동 동선 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910600).

조사 결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공문을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사전에 예상 동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은, 감염위험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방문 및 관련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퇴근 이후나 주말과 휴일 등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요양병원 종사자인 진정인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덜 인권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모든 종사자에게 사전에 예상 동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이나 제한·금지 등 조치를 받도록 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선 신고 사례를 전파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단순한 수범 사례 제시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의료기관의 인증, 지도와 명령, 감염병 예방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의 업무는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가지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강제력과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5월 17일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다(21-진정-0243700).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장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보호 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중증 지적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원회는 6월 21일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 요청을 불허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하였다(21-진정-0072700).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4,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언어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입원 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도, 퇴원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피진정인은 동의입원제도 신설 후 한 번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본 적 없는 진정한(피해자의 부친)과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를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불허하였다. 이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편의 목적의 동의입원제도 악용 사례이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 연장 사례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입원 되어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지침 개발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노동부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3일 ○○병원이 작업치료 명목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 세탁, 음식물 분리수거, 설거지, 배식 등 업무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 부과 중단 등 작업요법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20-진정-0852400).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병원의 노동 부과 작업치료가 일부 환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명목상 작업치료 방법으로 실시되었더라도, 작업 내용이 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단순노동에 해당하고,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한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으며,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아 주기적인 재활 평가 등 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들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작업요법 업무개선 및 권고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마.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코로나 자가격리지침 위반 개인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3월 31일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458000).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군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이 개인주택을 신축하자 ○○군수가 진정인의 주택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1월 27일 피진정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537700).

피진정인은 ○○군 주재기자를 지낸 진정인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던 중 진정인의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며, 나중에 진정인이 시아버지에게 도색 작업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아버지에게 군 이미지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개인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 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하 지휘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기반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5월 12일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 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87900 등 3건 병합).

조사 결과,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이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고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서약서 제출이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고,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 산재 치료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5월 12일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 과정에서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관련 업무 처리 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 하고,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55100).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1항 제3호는 “일시 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은 각서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없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에게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해당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7월 2일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262600).

진정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면서 최장 6개월마다 원격업무 지원서비스(EVPN)를 신청해야 하는데, 매년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교육부가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약서의 내용 중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미 이와 같은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 국가기관의 소청심사결정문 송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원회는 8월 27일 ○○부 장관에게 소청심사결정문을 소청 내용의 처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726700).

피진정인들은 소청사건 심사 결과 및 진정인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파악 등 조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진정인이 전보된 부서로 송부하였으며, 소청사건 결정문 파일에 암호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정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담당 부서에 소장부분이 송달되어 자연히 제소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현 소속 부서에 제소 여부 파악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진정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실을 현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파악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 문서는 단순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소청 이유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를 송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이 인사고충을 제기한 사실 및 진정인의 사생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전파한 것으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 공무직에 대한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8월 27일 ○○○○부 장관에게 혼인 여부 및 육아 휴직 여부를 파악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190300).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직의 혼인 여부 및 육아휴직(예정) 여부 등을 공무직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파악하여 피진정인에게 ‘○○팀 기·미혼 및 임신 여부 조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혼인 및 임신 여부 또는 그 계획 등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이고,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직장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굳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설령, 인사관리에서 결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려는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휴직 예정 기간 등을 넘어 혼인과 임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정보 수집이며, 이는 진정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8월 27일 ○○시장에게 제3자에게 임의로 진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318400).

이웃 주민이 구두로 피진정기관에 진정인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메일로 이웃 주민에게 진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사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 제공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소송 과정에서야 이를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진정인이 이웃 주민과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기는 하나,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이웃 주민의 정보공개 처리 관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은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이웃 주민에게,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상대로 한 고발장 등 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 및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진정인의 동의나 통보 없이 임의로 정보공개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17일 ○○○○시의회 의장에게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33300).

피진정인은 지방의회의원이고, 피진정인이 속한 지방의회는 2020년 진정인 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직무에 남녀의 구별을 둔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가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의록(속기록) 또한 영구보존물로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하여 국민에게 공개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직업훈련원 사감의 훈련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위원회는 10월 22일 ○○○○교육원장에게 교육원 기숙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퇴실 점검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17900).

피진정기관은 기숙사생들에게 호실 열쇠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감이 퇴실 점검이라는 이유로 호실 문을 열고 있으며, 진정인은 탈의 중인 상태로 속옷만 입고 있던 상황에서 노크 소리를 듣고 “잠시만요”라고 다급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문을 열어서 진정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사감의 호실 점검은 근무수칙에 따른 일상 업무이며, 점검 전 기숙사 구내방송을 통하여 고지 후 실시하고 있는데, 사감이 아무 때나 호실 개방을 요구한다든지 불시에 호실을 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발생 혹은 소음 등 민원 발생, 퇴실 점검 때문에 호실 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상기 사건은 진정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열게 되어 발생한 사안이며,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피진정기관 차원에서 충분한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숙사가 공동생활 공간임과 동시에 개인이 사생활을 영위하는 거주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 목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타인의 거주 공간을 확인·방문·점검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 하며, 이 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진정인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 되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에도 교육생들이 학과 수업을 위해 호실에서 퇴실한 후 사감이 매일 행하는 퇴실 점검 업무가 지속되고 있는바, 피진정기관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각 호실별 '재실·퇴실' 명판을 제작하고, 호실 점검 시 방송 안내 등 예고를 충분히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긴급한 안전관리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단지 퇴실 점검을 위한 호실 방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2월 3일 ○○시 ○○○소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소속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10900).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고,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변경할 수 없고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생체 정보이며,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중대하므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항상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소속 직원들의 지문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함에 있어 단순히 연명부 형식으로 동의서를 징구함에 그쳤을 뿐이고, 해당 동의서 내용을 살펴볼 때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한 고지'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 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문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복무관리 이외에

ID 카드 등 다른 대체 복무관리 수단을 마련한 뒤,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복무관리에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는 12월 17일 ○○도청 청원경찰들이 진정인에 대한 폭언, 과도한 비난 및 질책, 모욕적 발언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관련 피진정인들을 주의 조치할 것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청원경찰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22500).

피진정인은 주로 진정인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갈등을 빚었는데 진정인과 직급 및 권한상의 차이가 있거나 진정인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 않음에도 과도한 비난,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조와 말투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진정인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권고하였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12월 27일 ○○○○○○○ 장관에게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할 것과 ○○○○공단 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715700).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주변 지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출의 방법이나 양상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고립감이나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연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져서 일반적인 탄원서 제출로 볼 수 없고, 성폭력의 2차 피해를 가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탄원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헌법」 10조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나아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각급 학교²³⁾

■ 학교의 교직원에게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분리자에 대해 근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 공간으로 진정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1월 27일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분리 조치를 시행하기를 권고하였다(20-진정-0270400).

피진정인은 약 5개월 동안 진정인의 근무 장소를 본관동 지하 1층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상황에서 행위자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을 분리하기 위해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학교 내 진정인의 근무 장소로 위 장소 외 달리 지정할 만한 다른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본관동 지하 1층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사무실은 자연채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입구 근처 제초기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심한 기름 냄새가 나는 등 사무 공간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피진정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전라북도교육감도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근무 장소 재지정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북도교육감의 근무 장소 재지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별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무 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단순히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3) 아동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주요 결정례 수록

불가피했다는 피진정인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들과 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 장소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 대학교수의 성적 점수 게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월 27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19-진정-0955900 등 2건 병합).

피진정인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실시된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대학 인권센터의 불복절차 미고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2월 16일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인권센터 의결 시 결정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며, 당사자에게 통지 시 결정의 근거 규정과 불복절차를 고지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69000).

조사 결과,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인권센터 규정의 취지, 인권센터 결정의 불이익한 정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통지하는 방식,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나 징계 처분 시 고지 내용과 정도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피조사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경우 처분 결과와 이유, 규정상 근거, 불복절차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4차례의 심의위원회 결정 중 3차례의 결정 내용을 진정인에게 발송하지 않았으며, 1건의 경우 진정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진정인의 항의 이후에 통지하였는데, 통지할 때에도 결정의 근거 규정, 불복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정인은 인권센터 규정상 재심 절차 가능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징계 절차로 이어졌고, 실제 징계처분을 받은바 본인의 소명을 위한 기회 중 하나를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초등학교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2월 23일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43200).

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주변의 교통 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안전교육 및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초등학교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학생의 안전수칙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허용하였다.

■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대학교가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에게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해당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4월 12일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211800).

조사 결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은 보건의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진정대학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 전파를 위하여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면서,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입생 모집 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진정대학의 채플 수업 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사립종립대학이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립종립대학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원회는 4월 29일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이하 ‘학생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 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909000).

위원회는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중학교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생자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 배제

위원회는 5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85301 등 41건 병합).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하였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최대한 신속하게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준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 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및 각종 재난 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 그리고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는 점, 이주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아동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사업 수립·집행 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학교의 복직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해임 처분되었다가 복직된 교사를 학교장 등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6월 4일 피진정인에게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70900).

조사 결과, 피진정학교 행정실장은 해직 처분 후 복직되어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피진정학교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이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 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러한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학생이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부착한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학교 측이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9월 3일 ○○고등학교장에게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622800).

피진정인은 게시물 내용이 학생 선동 및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교내 게시판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 사실을 알리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지 학생들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므로 게시판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 게시물을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학교 측이 철거한 피해자 측의 게시물은 그 내용상 사학 비리 고발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요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 제21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9조,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3일 교실 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담임교사(피진정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렸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묵과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67400).

피진정인은 가해 학생도 방어 차원에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직접 가해 학생이 설문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지침 등의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권고하였다.

■ 학생에 대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3일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별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340400 등 32건 병합).

위원회는 ○○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 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개 학교는 그러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9월 17일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252700).

조사 결과,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기숙사생들에 대해 장기 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 외출 시 사전 신고 및 외출시간 준수, 외출 서약서 제출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보건소의 요구와 비교할 때 과도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매우 크며, 외출·외박과 관련해 외출서약서를 받는 것 자체도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교원 다면평가 시 휴가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0월 8일 ○○중학교장에게 교원 다면평가 시 휴가사용일수를 성과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513400).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2022년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연가사용일수를 포함하여, 교원이 10일을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연가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을 고려하고, 동시에 성과상여금의 상대평가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며, 감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교원의 휴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도 개인의 자유로운 휴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학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지 교원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재량 범위를 일탈한 부적절한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원의 휴가사용일수가 ‘근무 기여’를 측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장이 수업 결손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승인한 휴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학교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에 대해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도록 그 기준을 설정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휴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진정기관에 관련 기준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교수에 대한 부당한 복직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던 교수들(이하 ‘진정인들’)이 대학총장(피진정인)으로부터 2015년 파면처분을 받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심사위’)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7년과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진정대학 측은 진정인들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킴에 따라 진정인들은 다시 동일한 쟁송 과정을 거쳐 2020년 부당한 재임용거부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진정대학 측은 진정인들의 임용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자가 대기를 명령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11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계속된 피진정인의 쟁송으로 인해 진정인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것은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재임용거부 취소 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진정인들을 즉각 재임용할 것과 장기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온 피진정인인 대학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552100).

위원회는 피진정인 측이 진정인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방기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었으며, 애초의 파면 사유 또한 진정인들이 피진정인 등 관리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한 처분이었음을 인정하였다.

■ 대학교의 질병휴학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기록 요구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19일 ○○대학교총장에게 질병휴학 시 증빙서류로 의무기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338700).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질병휴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진단서 외에 의무기록을 요구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의 민감정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의무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질병휴학은 통상적인 휴학의 수업료 반환 기준과 무관하게 수업료 전액을 반환하는 제도이며, 질병휴학 승인을 위한 검토 자료가 필요해 요구한 것이며,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최소한도 기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된 서류는 담당자만 접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그 자체로 이미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의무기록을 요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단서 기재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환자의 민감정보까지 기재된 의무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최소한도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교장의 교사에 대한 괴롭힘

위원회는 12월 17일 ○○도교육감에게 ○○○○고등학교장인 피진정인이 피진정학교 교사인 피해자들에게 인격권 침해성 발언을 할 것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87600).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교직원회의에서 공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소속 교사의 문제 제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조직과 분리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발언의 내용으로 볼 때



위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의제기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조직 운영에 협조적이지 않은 특정 행위나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적인 권리구제절차의 기능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권고한 것이다.

제5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21년 말까지 차별 관련 진정 누적 건수는 3만 6,504건에 이른다. 차별 영역별 접수 비중을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이 1만 4,771건(40.5%)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승진·임금 등 고용에서의 차별이 1만 507건(28.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영역에 속하지 않는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이 8,499(23.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에서의 차별 1,956건(5.3%) 등의 순이다.

2021년 접수된 차별 진정은 2,559건으로 전년(2,426건) 대비 133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감염병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활동 축소 등으로 장애 차별 진정 접수는 2020년에 이어 연속 감소하였으나,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과 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상승으로 인한 기타 사유 차별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차별금지 영역별로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이 1,234건(48.2%), 고용에서의 차별이 598건(23.4%), 기타 영역 차별 444건(17.3%), 성희롱 208건(8.1%),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이 75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진정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교사, 학원·요양시설·의료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강제 관련 병합 진정(201건)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16]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계	36,504	10,507	1,547	2,060	185	654	429	1,680	392	8	267	283	876	2,126
2021	2,559	598	57	98	6	60	42	137	18	1	9	11	38	121
2020	2,426	704	60	109	9	50	36	191	22	-	3	1	25	198
2019	2,730	852	60	110	22	66	34	223	31	1	11	27	31	236
2018	2,209	603	75	112	23	48	31	89	24	-	6	10	48	137
2017	3,170	797	76	183	20	41	39	136	37	-	3	36	71	155

연도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이용 등 차별			성희롱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소계	고용 관계	업무 관계	그 밖의 관계	
누계	14,771	5,818	5,806	1,458	1,158	39	492	1,956	1,826	130	771	525	45	201	8,499
2021	1,234	617	276	62	126	4	149	75	68	7	208	138	13	57	444
2020	1,192	404	399	286	73	2	28	90	79	11	217	152	13	51	223
2019	976	403	369	53	121	-	30	107	94	13	309	204	19	86	486
2018	1,056	523	365	70	83	1	14	95	84	11	-	-	-	-	436
2017	1,232	590	285	212	111	4	29	131	124	7	-	-	-	-	1,007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성희롱 영역은 2019년 접수 사건부터 분류하였다.

나. 사유별 접수 현황

2021년까지 접수된 누적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장애차별사건이 1만 6,580건(45.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타 5,085건(13.9%), 성희롱 3,496건(9.6%), 사회적 신분 3,063건(8.4%), 나이 2,000건(5.5%), 성별 1,796건(4.9%)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1년의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745건(29.1%)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가운데, 기타 사유 668건(26.1%), 성희롱 215건(8.4%), 사회적 신분 149건(5.8%), 나이 95건(3.7%)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19개 차별금지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가 668건으로 전년(430건)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선별검사 강제, 백신 미접종자 시설 이용 제한,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등 감염병 상황 관련 차별 진정(261건)의 급증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차별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사건(466건)도 전년(1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편당 플랫폼 업체의 성별 이유 프로젝트 심사 거절,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남성 차별 등 역차별 관련 집단진정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17]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희롱	용모신체 조건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누계	36,504	1,796	167	387	268	3,496	397	16,580	2,000	3,063
2021	2,559	466	10	23	13	215	8	745	95	149
2020	2,426	128	9	25	13	217	12	1,051	83	227
2019	2,730	225	7	31	21	309	21	1,216	102	363
2018	2,209	103	10	41	21	263	18	1,139	106	182
2017	3,170	135	19	40	31	299	34	1,435	108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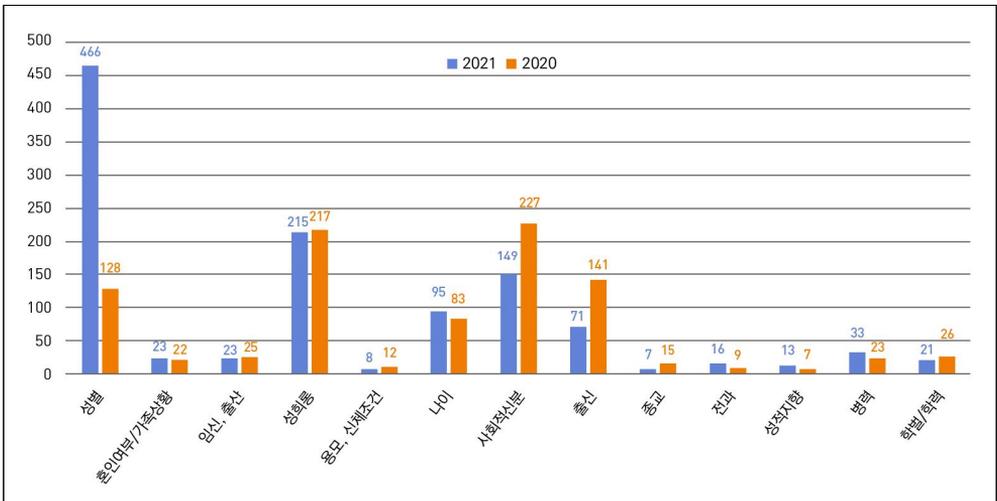
연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력	기타
누계	202	657	18	128	19	246	73	271	395	540	716	5,085
2021	6	65	-	3	-	7	3	16	13	33	21	668
2020	16	125	-	4	1	15	5	9	7	23	26	430
2019	8	36	-	2	1	14	4	17	20	30	18	285
2018	17	29	1	7	1	23	8	12	11	28	21	168
2017	20	26	2	5	-	25	9	17	261	33	45	390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그래프 2-2-3]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장애, 기타 제외)

(단위: 건)



※ 접수 건수 2년 연속 10건 미만 차별 사유 제외

※ 출신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의 합계이다.

다.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21년 2,410건의 차별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전년(2,856건)에 비해 처리 건수가 일부 감소(△446건)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장애차별 진정 감소에 따른 장애차별 처리 건수 자연 감소(2020년 1,349건→2021년 830건), 그간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차별 진정 증가 추세로 처리 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적시성 강화를 위해 2021년 6개월 이상 장기 미결 사건 처리에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2021년 차별 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2020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점자스티커 미설치, ○○지역 지자체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야간운행 중단, 코로나 아동 긴급재난지원금 이주아동 배제 등 2020년과 달리 인용 또는 조사중해결로 처리될 수 있는 장애, 출신국가 차별 관련 대규모 집단진정이 예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처리 건수 감소와 더불어 권리구제율도 2020년 34.3%에서 2021년 19.8%로 하락하였다.

[표 2-2-18] 최근 5년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누계	36,504	35,194	9,640	22	2,421	58	841	6,298	17,535	158	7,677	184
2021	2,559	2,410	477	1	161	-	30	285	1,241	8	666	18
2020	2,426	2,856	981	1	279	1	32	668	1,284	7	579	5
2019	2,730	2,456	514	2	248	1	39	224	1,306	5	630	1
2018	2,209	2,460	947	3	338	7	19	580	1,029	3	481	-
2017	3,170	2,384	727	1	148	15	29	534	1,106	6	543	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한편 2021년 처리한 차별사건(2,410건)의 사유별 처리 비중을 보면, 장애 830건(34.4%), 기타 647건(26.8%), 성희롱 283건(11.7%), 성별 163건(6.8%), 사회적 신분 136건(5.6%), 출신 국가 및 인종 113건(4.7%), 나이 95건(3.9%) 등의 순이었다.

[표 2-2-19] 2021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종결				
합계	2,559	2,410	477	1	161	-	30	285	1,241	8	666	18
성별	466	163	67	-	8	-	-	59	60	-	34	2
혼인 여부	10	5	1	-	1	-	-	-	2	-	2	-
임신·출산	23	28	5	-	1	-	-	4	17	-	5	1
가족 상황	13	10	1	-	-	-	1	-	4	-	5	-
성희롱	215	283	37	-	14	-	8	15	184	3	51	8
용모·신체조건	8	9	1	-	-	-	-	1	5	-	3	-
장애	745	830	216	1	49	-	17	149	378	4	231	1
나이	95	95	24	-	6	-	3	15	37	-	32	2
사회적 신분	149	136	19	-	13	-	-	6	65	-	52	-
출신 국가	65	110	45	-	42	-	-	3	56	-	9	-
출신 민족	-	-	-	-	-	-	-	-	-	-	-	-
인종	3	3	2	-	1	-	-	1	-	-	1	-
피부색	-	-	-	-	-	-	-	-	-	-	-	-
종교	7	9	5	-	3	-	-	2	2	-	2	-
출신 지역	6	6	-	-	-	-	-	-	2	-	4	-
사상·정치적 의견	3	3	-	-	-	-	-	-	3	-	-	-
전과	16	16	3	-	3	-	-	-	8	-	4	1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종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성적 지향	13	12	-	-	-	-	-	-	10	-	2	-
병력	33	24	6	-	2	-	1	3	11	-	7	-
학벌·학력	21	21	6	-	3	-	-	3	10	-	5	-
기타	668	647	39	-	15	-	-	24	387	1	217	3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조사중해결: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2. 직권조사

■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위원회는 1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 외에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상급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이나 입장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에 위와 같은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외부 온라인 악성 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여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또 시장 비서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서 업무를 공적 업무에 국한하고 업무 분장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고, ‘공공부문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 접수 시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국가 및 지자체에 배포하고, 각 부처의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자격 제한 직권조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교육청의 법률지원단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용 자격 기준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규칙을 별도 제정하여 법률지원단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을 통해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사실 확인과 차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 12월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2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5개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로만 특정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상위법인 교원지위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규정한 것은 법률지원단의 주요 역할이 소송 실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상담, 민원처리,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의도한 것으로, 만약 소송 실무를 전담할 법률가가 필요하다면 구성원 중 일부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면 될



것임에도 전체 구성원을 변호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학 전공자를 포함한 법학 연구자, 타 기관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접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3월 2일 ○○교육청 등 12개 시·도 교육감에게, 법률지원단 자격을 정하고 있는 교육규칙 및 관련 지침의 내용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를 받은 12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교육규칙 개정을 완료하거나 개정을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차별 요소가 있는 제도가 개선되었다.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선정 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위원회는 4월 23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19-진정-0643100).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이처럼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 계획을 회신하였다.

■ 학교장의 여성 교사에 대한 성차별

위원회는 6월 29일 진정인이 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303100).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 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해당 학교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에 부장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사륜오토바이 여성 단독운전 제한으로 인한 성차별

사륜오토바이 업체가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9월 2일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 규정을 차별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332900).

조사 결과, 피진정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의 2016~2020년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 통계에 따르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30% 미만이고, 2020년 사륜오토바이 가해 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게 의한 사고율이 더 높다. 그러나 해당 통계의 사고 건수 등으로는 실제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모든 사람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자 대비 사고율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일탈감과

쾌감을 느끼는 유희적 성격을 가지는데, 체험 과정에서의 위험성(사고 발생 가능성)은 주행의 외적 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 능력, 주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체력이나 근력, 운전 능력, 주의 정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이기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기업 직원채용 면접 시 여성 지원자에 대한 차별

위원회는 11월 9일 공기업의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 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사건에서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80000).

위원회는 면접위원의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인해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면접 응시자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확인 하기 어렵고 일반화할 수 없는 관념이지만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될 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는 발언 혹은 전제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일로 인해 회사 일에 매진할 수 없으므로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은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성희롱

■ 시의회 의원의 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예술단원들에게 “회식 때 ○○씨 옆자리에 앉겠으니 옆자리를 비워두라”거나 “예쁘다. 결혼 안 한 줄 알았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등의 발언, 단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빠가 이렇게 손 올리면 기분 나빠?” 같은 발언으로 성희롱을 한 것과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면서도 시장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3월 25일 피진정인 시의원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각 5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장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20-진정-0055100).

위원회는 시의원이 해당 지자체 예술단원들과는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고, 시의원의 언동은 시의원과 예술단원이라는 공적 관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며, 이는 피해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정해진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였고, 진정인도

지속적으로 ○○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였다.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도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3월 26일 ○○○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582200).

조사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 점, 남녀는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술사 면접시험 응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위원회는 6월 21일 기술사 비대면 면접시험에 응시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

통역(속기사) 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현행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및 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문자통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게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에 있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반영하여 ‘문자통역’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742700).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국가자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해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진정인이 응시할 당시 관련 편의 제공 기준을 공단 홈페이지에 일부 문구를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누락하는 등으로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관련 시험을 비대면 시험으로 추진하면서 수화(수어)가 아닌 구화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이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에 따른 편의 제공 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에 근거하여 수화통역사가 아닌 ‘문자통역(속기사)’이라는 의사전달 보조원의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피진정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만든 ‘처리지침’의 ‘수화통역사 배치’라는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결국 진정인이 2020년 7월 21일 1차 비대면 화상면접 시험에서는 문자통역 없이 시험을 보도록 하였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를 뒤늦게 허용하여 시험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신의 능력을 균등하게 발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체장애 거주자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인 피진정인들이 1월 14일부터 2월 10일 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7월 19일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31800).

위원회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인 피진정인들에게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에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으며, 피진정인의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하여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하였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7월 19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미제공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점장에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45900).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로를 설치할 시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월등히 크며, 실제 경사로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도 없으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점의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한 외에 없었고,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회신이 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편의 제공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2월 22일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본사 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공표하였다.

■ 지상파방송사의 선거 개표 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8월 20일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21-진정-0126500).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 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 방송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거 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미흡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시각장애인 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11월 3일 피진정기관장에게 웹접근성 개선 권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예산 확보 노력을 권고하였다(21-진정-0557400).

피진정인은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 개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한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 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11월 3일 ○○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568200).

조사 결과, ○○마을 주민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였고, 집회 기간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이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고용센터 위탁기관의 나이를 이유로 한 수강 제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6월 29일 ○○○○직업전문학교 이사장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교육 훈련을 신청하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246800).

만 65세의 피해자는 정부에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직업전문학교’에 굴삭기 실기 과정을 수강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훈련생을 선발할 때 40~50대 훈련생을 우선 선발하고 타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에게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위배되는 점, 발급 대상을 만 75세 미만으로 두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령대별 합격률상 60대 이상의 시험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마다 노화 정도는 차이가 있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교육생 선발에서 획일적으로 고령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 중 연령평가 항목 삭제 등 내부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학 신청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회신하였다.



■ 위탁 계약 업무에 대한 나이 제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7월 22일 ○○○○공사 사장에게 ‘△△△△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의 ‘만 70세 연령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060500).

○○○○공사는 ‘△△△△ 순시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2019년 외부 용역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 순시위탁 관리절차서’를 개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 순시효율 제고라는 명목으로 순시원 자격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피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나 고용과 관련하여 실질적 또는 간접적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차별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실질적인 차별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며, 순시원의 주된 업무가 현장 참관이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 당사자를 대응하는 것 등이므로 운전 능력과 관련된 우려를 이유로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만 70세 이상 연령 제한이 필요하게 된 구체적인 안전문제 발생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부터 운전을 전담하는 순시 보조원과 순시원이 2인 1조의 팀제로 운영 중이므로 순시원 모두가 만 7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한 피진정인의 제한은 목적과 수단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위탁계약 발주서에서 ‘만 70세 이하’ 문구를 삭제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체력측정제도를 도입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심리상담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10월 5일 ○○도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199200).

피진정인들은 심리상담 직종의 경우에도 1~2년간량의 현장 복무 기간이 존재

하고,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음을 연령 제한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상담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쌓기 위한 현장 복무 기간은 통상 1~2년 이내로 운영되어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 기간에 비해 짧은 기간이고, 심리상담 직종은 상담 또는 심리학 전공, 연구, 근무 경력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추진하거나,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위기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무의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보기 어렵고, 채용 후 상담심리 업무를 수행 중 현장 출동 필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주된 업무 역시 심리상담으로 예상되며, 의무복무 기간 경과 후 다른 직역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이 당사자의 신체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외 직역으로 전환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 심리상담 분야 채용에서 응시자의 나이를 만 4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차별 시정 권고

위원회는 3월 2일 □□의료원장에게 무기계약직인 조리원들을 기관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19-진정-0695300).

□□의료원은 매년 기관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관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기관성과급을 무기계약직인 조리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기관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이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해당 기관 직원들의



업무수행 실적과 노력이 총망라되는 것으로 경영평가 대상 업무의 범주가 전반적인 경영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조리원들은 직원들의 급식과 입원환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어 복리후생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원이라는 기관 특성상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기관성과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관경영평가 기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한 진정인들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바, 이는 무기계약직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2일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직무에 맞는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861300).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검사계에서 미생물 분야 필수실험인원으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위험업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피해자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험근무수당의 취지가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부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역시 위험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상시 종사자로서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에 속하고 채용 목적 역시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한

바, 별도의 사유 없이 공무원 근로자라는 신분의 차이만을 이유로 해당 수당의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시는 공무원 근로자의 각종 급여 및 수당을 공무원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의사를 노조에 밝히고 진행 중인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5월 20일 ○○○학원 이사장에게 수당 지급에서 비정규직 교원인 진정인과 정년전임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377300).

○○○대학교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정년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해 정년전임교원과 달리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장기간 임금을 동결하고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학협력중점교원과 비교 대상인 정년전임교원은 그 임용 절차와 담당 업무, 채용 목적, 임용 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임금이 2012년에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점, 정년전임교원과 자격·임용 절차에서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격차가 현저히 큰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진정인이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부단장 등의 보직을 맡아 학생 상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연구비, 보직수당,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전임교원으로서 상시 근로를 해온 진정인에게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군복무 경력 불인정 개선 권고

위원회는 6월 29일 □□□□□□ 사장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 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50100 등 2건 병합).

□□□□□□는 소속 직원을 운영지원직과 사무·기술직(이하 ‘일반직’)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 적용하는 인사 규정을 별도 운영하면서, 일반직은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환산해 호봉에 산입해 주는 반면, 운영지원직에게는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다.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호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시기를 놓치거나 취업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와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며, 군복무 경력은 일반직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이나 업무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제대군인의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군복무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하여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무기계약직의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경우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운영 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정부 평가 불이익이 예상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의 군 경력 호봉 반영을 우선 고려할 경우 다수 직원이 상대적으로 급여 인상률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11월 9일 ○○○○○○ 원장에게 일반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무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격차가 해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292100).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은 일반정규직에게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연간 120만 원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 직원에 대한 선택형 복지포인트를 40만 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일반정규직과 공무직은 입직 경로 및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금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 직원들이 일반정규직 직원들과 입직 경로 및 수행 업무, 책임성 등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복리후생성의 급부에서는 이들을 달리 처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피진정인이 소속 일반정규직과 공무원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외 금품)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교사 채용 시 종교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25일 구체적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종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처우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피진정인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동일·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067800).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기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초등학교 2020년도 정교사 채용 공고상 종교, 나이, 정교사 우대 관련 사항이 없었음에도 정교사 4명 채용 모집 과정에 응시한 진정인(무교) 면접 시 집중적으로 종교 관련 질문을 하더니 채용 예정 시험에서 4등이었던 진정인을 나이가 많고 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초등학교 건학 이념은 기독교 관련성이 있고 학교 정체성은 건학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면접에서 종교 질문이 있었던 점, 다른 지원자보다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교 정체성은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종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하면 될 것임에도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 없이 최종합격 대상 순위에 포함된 진정인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9년 말 ○○초등학교 학급 수 감소를 감안하지 못하고 정교사 4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지만, 학급 수 감소로 인해 정교사를 3명 밖에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0년 인지하게 되어 부득이 3명의 정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해당 사안은 차별이 아닌 단순 행정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종립대학의 비종교 교과 강사 채용 시 응시자격 제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9월 2일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 취지에 맞게 ○○○대학교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82000).

종립학교인 ○○○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간호학과·경영학과·상담심리학과·음악학과·교양학과 등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사의 지원 자격까지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피진정대학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 설립 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후에도 교육부 장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하는 등 피진정대학은 일반적인 종교 단체와는 구별되므로 피진정대학의 모든 교육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진정인이 교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시정 권고

위원회는 1월 22일 피진정인들(△△손해보험 대표 및 □□손해보험 대표)에게 불안장애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의 상해·질병보험 가입에 있어서 증상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가입 시기 또는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196300).

진정인은 과거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신경안정제를 약 1년간 복용하고 약을 중단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상해·질병보험에 가입코자 하였으나, △△손해보험은 치료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면 가입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손해보험은 암보험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제한·거절하는 경우 법률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불안장애와 상해 발생률 간의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손해보험은 불안장애 치료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인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손해보험은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완치 확인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상 불안장애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였다.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은데 실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위험을 낮추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상해·질병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불안장애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 기준·범위를 치료 종료 후 특정 기간을 경과하거나 일괄적으로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밀턴 불안척도 결과’ 등을 보험심사 기준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HIV환자에 대한 치과치료 거부 조사중해결

위원회는 HIV 보균자로 ○○○치과의원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HIV 보균자임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해당 치과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에서 권고한 보호 가운, 마스크, 눈 보호를 위한 고글 등 의료안전장비를 갖추고 진정한 내원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정 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피진정인 조치에 만족한 진정인이 3월 12일 해당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사건을 조사 중 해결하였다(21-진정-0106400).

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 성소수자 관련 광고게재 거부 시정 권고

인권단체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 광고를 게시하려다 거부된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10월 5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

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674100).

광고 게재 거부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8명의 위원 중 5명이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등 공사의 광고 규정 및 광고 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광고 게재가 불승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광고심의위원들이 광고 게재를 반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광고관리규정 제3조에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자.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 외국인 강사에게만 고학력 요구 학원강사 자격기준 개선 권고

위원회는 6월 29일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내국인 강사와 달리 외국인 강사에게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의 [별표 3]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19-진정-0862400).

외국인 강사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 교육부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 교습의 질,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보편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여 내국인 강사 대비 엄격한 기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상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교습의 질에 대해 피진정인이 증명하지 못한 점,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의 변천사로 볼 때 내국인 강사의 경우 그 조건이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로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졸업자를 학원강사 자격으로 인정했던 연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4년제 대학 졸업 여부가 강사 자격에 불가피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나 교습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법률 규정은 자격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 교육의 폐단을 방지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국적을 이유로 증권사 계좌 개설 거부 조사중해결

캄보디아 국적으로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인 피해자가 ○○증권사 △△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캄보디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정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속하며, 해당 국가 국민은 투자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전업주부여서 소득 확인이 어려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조사관은 ○○증권사 △△지점 및 본사 담당자에게 민법이나 세법의 취지는 부부를 일정 수준의 경제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인 피해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을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해당 증권사는 피해자의 배우자(진정인)가 차명거래금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진정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피해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5월 21일 진정인은 진정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며 진정을 취하하였다(21-진정-0275200).

차. 혼인여부, 가족상황, 외모,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시 비혼·독신자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4월 23일 □□생명 보험회사 대표에게 보험상품 가입 고객이 비혼·독신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대리청구인 제도²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이 있는 ○○○○원장에게,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시중 보험회사에

24) 보험상품 청약 고객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파하여 지도하는 등 피진정인 외 다른 보험회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19-진정-0545500).

□□생명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 자격을 피보험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비혼·독신 계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험수익자의 권리 확대와 수익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예방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한 대안적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임에도 비혼·독신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에서만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 기준을 피보험자의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같은 비혼·독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명 보험회사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업무지침(매뉴얼) 개선과 담당 직원 숙지 등을 통하여 비혼·독신 고객이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원은 시중 보험회사에 위원회 결정문 및 지정대리청구인제도 개선안을 전파하였다.

■ 안경 착용 이유 장제사²⁵⁾ 교육생 지원대상 제외 조사중해결

피진정기관 □□□□□가 ‘2020년 말산업 장제분야 교육생 모집’을 하면서 교정시력 0.8 이상 중에서 라식수술, 라섹수술, 렌즈 착용자는 ‘말산업 장제분야 교육생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에 안경 착용자는 응시 자격에서 배제함으로써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직업훈련에서 차별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장제 업무는 체력이 좋은 말(馬)을 다루고 고온의 화력

25) 장제사는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漿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제 순서는 편자 빼기 → 굽깎기 → 줄질하기 → 수평 확인하기 → 편자 맞추기 → 못 박기 → 못 조이기 → 제유 바르기 순으로 이루어짐.

에서 편자를 다루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편자 장착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정밀한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경 착용 시 땀으로 인하여 작업 시야를 가리는 등 교육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 대상에서 안경 착용자를 제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작업 중 땀이 나서 시야를 가린다면 헤드밴드 등 보호 수단을 이용하여 땀의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발한(發汗)의 양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안경을 쓰면 시야를 가린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말산업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안경을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의 말산업 선진국의 경우 장제사가 안경을 착용한 사례가 많고, 작업 중 안경 또는 고글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제 업무 수행 중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심각한 업무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 필요 안건으로 검토하던 중 피진정인이 말산업 장제 분야 교육생 모집 응시자격에서 시력, 안경 착용 등 신체 조건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1년도 말산업 장제분야 교육생 모집 공고를 내면서 자격요건에서 시력 조건 등 신체 조건 항목을 폐지함에 따라 진정인은 진정 원인이 해소되었다며 해당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조사 중 해결되었다(20-진정-0534700).

가.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학력을 사유로 한 임금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6월 29일 피진정인 ○○방송(주)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호봉 체계 및 기본급 산정을 달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043600).

2019년 피진정기관 ○○방송(주)의 학력·성별·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피진정기관에 입사한 피해자는 대졸 신입사원과 동일한 근무 형태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 신입사원과 다른 임금을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채용 시 특정 분야의 학력이나 학위를 선발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직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인재 채용 방식인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의 호봉 체계와 기본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저(低)호봉자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과 비교 대상인 대졸 신입직원 간의 격차가 최대 5% 정도만 차이가 난다는 피진정인의 항변 또한 저호봉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조정수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자체 인사 규정에서 학력에 따라 임금을 달리 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11월 1일 자로 호봉을 재획정하였다.

■ 지자체 재능봉사 장학생 선발 시 대학순위 제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11월 9일 피진정인 ○○시장에게 대학 재능봉사 장학생 선발 시 국내 대학 순위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60000).

○○시는 2020년부터 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매년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한 세계대학평가 순위 내 국내 대학 순위 20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학년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시장이 정한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자격요건으로 재능봉사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재능봉사 활동의 취지는 ○○시 출신의 대학생과 관내 중학생을 멘토, 멘티로 연결함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능력을 향상하고,

선배 멘토와의 학업·진로 상담 등을 통해 멘티 학생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멘토링 수업을 통한 ‘지식 재능 나눔’ 기부 활동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결정하는 평가기관의 주요 평가지표는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연구생산성, 연구 영향력, 국제화 수준 등과 같이 주로 교육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멘토로서 중학교 교육과정 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는 불명확하고, 다른 지자체가 유사하게 추진하는 대학생 멘토 선발 에서는 자격요건으로 대학교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피진정인이 대학생 멘토 선발 시에 지원자의 직전 학년 평균 성적, 자기소개서, 재능봉사 계획서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우대 요건으로 관련 학과 재학생, 영어공인점수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선발 기준만으로도 지원자의 멘토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계 대학 순위 중 국내 대학 순위 20위 안에 포함된 대학의 재학생으로만 장학생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소속 대학의 평가에 따라 순위 밖 대학의 학생 들을 재능봉사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타. 전과

■ 운수회사의 전과 경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시정 권고

위원회는 11월 9일 피진정인 (주)○○운수 대표이사에게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버스기사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진정인에 대한 서류심사 등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과 향후 응시자의 전과를 이유로 동일·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283200).

진정인은 2000년 7월 차량에 불법 부착물을 붙인 진정인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2000년 9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 2001년 9월 12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을 시작하였고,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진정인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전과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되므로 진정인의 전과는 2008년 9월 10일 실효되었다.

진정인은 2021년 (주)○○운수 버스기사 채용 모집에 지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사 지원 서류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운전면허 취소 경력을 사유로 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전과를 이유로 직업을 제한하려면 전과 이력(내용)이 그 업무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종류, 범죄 사실의 심각성과 문제 되는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범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범법의 경향(상습성 등)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차량에 불법 부착물을 붙이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비록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 된 것이나 진정인이 지원한 운전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에 지원할 당시 이미 형이 실효되었으며, 진정인에게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범죄 사실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20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 중이며, 채용 공고상 가점 대상인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파.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2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향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²⁶⁾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20-진정-0243400).

진정인은 20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 예정인 사람으로, 군복무 당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을 받은 바가 있는데, 피진정인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전형 중 서류심사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감점 규정을 두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수사 전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고도의 청렴성,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의무와 기본 정신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군 인사법규에 규정된 결격 사유, 징계 기준 준용 및 국방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감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사 및 자격 검증을 위한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공공 영역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임용에 고려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26) 비상대비업무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말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군 전역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선발하여 국가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에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 수사경력조회 회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실효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수사 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 수사 경력을 회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불기소처분과 같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불기소처분 경력을 서류전형 감점 사유로 두고, 형실효법상 근거가 없는 수사 경력 조회를 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대응지침에 맞게 각 기관의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 공공기관의 직급별 정년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9월 2일 ○○○○○○○○○○원장에게 선임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수석급·책임급 직원들의 정년인 61세로 동일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512200).

피진정기관 ○○○○○○○○○○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직원들은 연구직 직종으로 원급·선임급·책임급·수석급으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정년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는 수석·



책임급이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였는데,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수석·책임급은 그대로 61세 정년이 유지되고,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연장되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등 각 기관의 직급별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왔다.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 직급에 속한 직원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 인사 발령에 따라 상호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 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 난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 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주된 판단 이유였다. 이 사건 진정에서도 위원회가 기존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직원 의견 수렴, 노조와 권고 사항 이행 단체협약 방향 협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정부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단독 응시 채용 절차 취소 시정 권고

위원회는 10월 5일 ○○시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1-진정-0483300).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의 안전요원 채용 절차에 단독 응시하여 면접을 준비하던 진정인이 과거 같은 수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해당 채용 절차를 중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과거 근무 당시 직원들과의 의견 충돌 등 근무환경 여건을 저해한 자로서 채용이 부적합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근무환경을 저해한 시점을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를 포함하는 기간을 특정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력’을 이유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응시 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인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이 아닌 사항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근무자들 간 긴밀한 근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진정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채용 절차 중단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면담을 통하여 2022년 채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공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진정인은 채용 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조직 내 갈등과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여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제6절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는 2002년부터 진정사건 등 처리 결과에 대한 심리·의결을 해오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한 이후(2013헌마214결정, 2015. 3. 26.) 행정심판 청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1년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85.5% 증가한 262건이고, 처리(종결)건수는 229건이다.

2019년부터 진정사건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를 의무화하면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력 보강, 효율적 처리 절차 검토 등의 개선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표 2-2-20]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접수(청구)					처리(종결)				계
	진정 사건	정보 공개	기타	진재 사건	계	인용	기각	각하	이송 취하 등	
누계	626	56	50	5	737	67	332	76	59	534
2021	213	25	20	4	262	21	156	32	20	229
2020	171	13	6	-	190	23	80	10	11	124
2019	164	15	15	1	195	13	43	26	23	105
2018	50	2	7	-	59	8	24	4	5	41
2017	28	1	2	-	31	2	29	4	-	35

* 진재사건: 행정심판으로 취소재결(인용)된 진정사건을 다시 조사한 사건

제7절 평가

위원회는 2021년 7만 5,948건의 상담·민원을 처리하였고, 1만 29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9,28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506건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2021년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1만 29건으로 전년 대비 1,013건(11.2%)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활동 축소로 일부 영역의 진정 접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백신접종 증명 등 방역 조치 관련 진정사건 증가,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처리 건수는 9,287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권리구제 건수는 1,172건으로 전년 대비 440건(27.3%) 감소하였고, 권리구제율도 12.6%로 전년 대비 4.7%p 하락하였다.

2021년 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진정사건 처리 만족도는 전년 대비 2.3점, 최근 3년 평균 대비 3.9점 상승하였고, 특히 신속성 7.1점, 전문성 5.9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가 진정사건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진정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와 함께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진정 처리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개시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1건(7.1%) 감소하였으나, 권리구제 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6건(66.7%) 증가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21년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7,430건으로 전년 대비 873건(13.3%)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했던 교육기관, 경찰, 중앙행정기관 사건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증가한 영향이 크다.



한편 처리 건수는 6,839건으로 전년 대비 460건(7.2%) 증가하였고, 권리구제 건수 또한 695건으로 전년 대비 64건(10.1%)이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권리구제율 역시 10.2%로 2020년에 비해 0.3%p 상승하였고, 2020년 하락세에서 2021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21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권고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북한 피살 공무원에 대한 수사 발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고 이를 공표하는 등 수사 기관과 관련된 현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행범 체포, 과도한 수갑 사용, 변호인 조력권의 침해 등 형사절차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특히 검경수사권의 조정 사항이 이행되는 첫째이므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하여 고소사건의 불송치종결 미통지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를 통해서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원회의 반복적인 권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권고의 실질적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군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공군 및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등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군 복무 중 사망 병사 순직 인정 권고, 군의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신원정보 조회,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및 중징계, 부대장의 표적 조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군내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 방문조사를 통해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국방부 등에 제시하였다.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구치소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구치소의 코로나 유증상자 혼거 수용, 구치소장의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미통지,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미흡

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기관 10개소, 외국인 보호소 5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동선 신고 요구, 노인요양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청소 등 부당한 노동 부과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에 한계가 있었으나, 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상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2개소, 갱생보호시설 9개소, 아동양육시설 10개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와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보호 개선을 권고하였고, 지적장애인거주시설·아동양육시설·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도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지침 위반 개인 영상정보 유출, 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관리, 지방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직장·군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한 교사의 사전 검토 행위, 학생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고등학교의 우열반 운영 등에 대해 권고하였다. 특히 서울 소재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학생들의

채식선택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동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때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외국 국적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선별진료를 거치도록 한 병원의 조치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021년 차별 분야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2,559건으로 전년 대비 174건(7.3%) 증가하였다. 감염병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외부 활동 축소 등의 원인으로 장애차별 진정 접수는 2020년에 이어 연속 감소하였으나,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과 공정과 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상승으로 기타 사유 차별 진정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차별 분야 처리 건수는 2,410건으로 전년 대비 469건(16.3%)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누적된 장애차별 진정 감소에 따른 장애차별 처리 건수 자연감소와 더불어 2021년 처리 난도가 매우 높은 6개월 이상 장기미결 사건 처리에 주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과 달리 인용 또는 조사중해결로 처리될 수 있는 장애, 출신 국가 차별 관련 대규모 집단진정이 예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2021년 권리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2020년 대비 499건 감소하였다.

성별, 장애, 혼인 여부, 나이 등을 사유로 하는 각종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 출범 초창기에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2,000여 건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 차별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점점 높아져 차별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차별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이와 함께 위원회는 차별 진정사건 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19가지 차별금지 사유에서 단일 사유로 연간 접수량이 가장 많은 장애 차별(40~50% 비중) 진정사건의 경우,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비장애인 대비 사회활동이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여건상 관련 진정 접수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떨어져 예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장애 차별과 관련한 주요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채용 과정 또는 교육과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미제공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권리의 구제 외 관련 규정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사와 구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외, 언론기사에 쓰인 장애인 비하 용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집단 일반에 대한 부정적 관념 표시의 경우에도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조사를 수행하는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경우, 최근 이른바 MZ세대라 하는 특정 연령층의 형식적 성평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집단진정이 증가하여 사건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2020년 성차별 진정 89건 → 2021년 465건)하였으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고 방대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페미니즘 백래시의 하나로 제기되는 역차별 주장의 집단진정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위원회가 처리해 온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사건을 분석하여 성희롱 2차 피해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진정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 성차별·성희롱 사건과 함께 매년 높은 차별사건 접수 비중을 보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진정의 경우 고용 영역과 관련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사건이 많다. 주요 처리 사례로는 차별적 처우가 문제가 된 구체적 내용에서 그 비교 대상인 공무원, 정규직, 일반직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수당, 기관성과급, 군복무 경력 임금 합산, 복지포인트 부여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였다.

출신국가를 사유로 하는 차별사건은 2020년부터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예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주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선별검사 강제,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 해외 백신접종 외국인에 대한 전자 예방접종 완료 등록 불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주요 처리 사례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 강사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 기간, 국가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밖에도 직업훈련교육생 모집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수강 제한, 종교를 이유로 한 채용 배제, 병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시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황을 사유로 한 비혼·독신자 차별 등 다양한 차별사건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 등 피진정인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적극적인 중재로 조사중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권상담 및 조정

인권상담과 관련하여 2020년에 상담위원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인권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3만 6,343건으로 2020년(2만 8,214건) 대비 28.8%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과 감염병 방역 강화에 따른 사회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권상담은 전화상담이 94.7%에 이른다. 인권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 내용의 전문성, 신속성 확보를 위한 인권전문상담사의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인권상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조정 성립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26조에 근거해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가치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교육과 홍보는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위원회는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 체계화·전문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인권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협력 강화,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등의 요구와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인권교육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및 실질적 협력, 수준 높은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시의성·활용도를 고려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다가가기 쉬운 형식의 인권 콘텐츠 개발·보급, 다양한 인권옹호 주체와의 협력 강화, 지역인권보장체계 활성화 기반 마련,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교육과정 다양화, 원격교육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인권교육을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위원회는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인권교육.하다(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안내서)〉, 〈놀이로 배우는 인권(에퀴타스 인권교육 교재 ‘플레이 잇 페어(Play it fair)’ 번역)〉, 학교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6종), 〈돌봄과 인권〉, 〈노인 환자의 인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혐오·차별 대응 영상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공용 콘텐츠(14종) 등 2020년에 개발한 콘텐츠를 보급하였다.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인권교육전문위원회와 〈한국인권교육포럼〉을 운영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군인권교육협의회·학교인권교육협의회·대학인권센터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온라인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적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통한 공공·학교·시민사회 등 영역별·대상별 인권연수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였으며,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교육 가이드북〉 개발·보급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인권교육원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인권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설립 목적에 맞는 건축설계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절차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향후 총사업비 증액,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홍보

위원회는 다양한 홍보 매체와 뉴스레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뉴미디어를 통해 인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웹드라마 형식으로 온라인상의 인권문제를 다룬 <티밍>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보급하였다. <슬기로운 인권생활>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시민기자단인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을 운영하여 생산된 콘텐츠를 네이버 ‘함께N’에 게시하는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인권작품공모전을 포스터와 시·에세이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혐오·차별 언어표현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성 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등에 대해 총 214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2월 10일 73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2021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한민국 인권상을 기관 및 개인 총 10곳에 수여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가. 인권교육 제도화

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근거 규정 마련,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찰이 형사절차 전반에서 큰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2020년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인권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 확대 및 체계적 반영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론화를 진행하고, 교과서 집필 관계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교원 인권교육 역량 향상 지원 등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광역시·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인권강사 양성 및 위촉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인권강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대중화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인권강사 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촉 후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최초 1년, 재위촉 2년으로 절차에 따라 재위촉 심사를 거치는 등 인권강사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은 매년 3월 초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²⁷⁾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인권강사를 선발하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학대 및 이주민 인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였다.

특히 전일 비대면 원격교육을 최초 도입하고, 소회의실과 온라인 학습 도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양성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2021년에는 인권강사 양성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강사 능력 향상 등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다.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공간이다. 특히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권 전문성과 현장성을 교육과정에 녹여냄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권문화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27)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위원회는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구)관세청 통관물류센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인권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절차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시공, 감리 등 설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위원회와 지자체 간 인권교육 협력 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추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한 후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의 일상적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지자체 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인권담당자 및 인권보호관 역량강화 과정은 지자체 인권교육 및 조사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심도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의 인권업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였다. 교육 참여 범위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 활성화 및 업무 담당자 간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참여하는 군인권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간 인권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국군 인권교육 교재>를 개정하여 군 인권교육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 인권교육과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인권교육 전문가 미참여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권교육 협의회에 외부 인권교육 전문가를 포함하여 확대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 인권교육 강사진 구성 및 강사진 공동 활용,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군 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하였다.

학교 분야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와 교육부, 광역시·도교육청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제15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모색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교장·교감 인권리더십 과정 및 학교 노동인권 교육 교사 역량 강화 과정 등 학교 분야 인권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 10월 대학인권센터 역량 강화 지원 및 인권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62개 대학인권센터와 함께 ‘대학인권센터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2021년에 개최한 제3차 협의회(10월 26일)에는 위원회·교육부·대학인권센터 담당자 85명이 참석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권교육기획과 및 부산·광주·대구·대전인권사무소 등 5개 부서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인권센터가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5월 17일)에서는 위원회 및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62명이 참석하여 대학인권센터 표준규정안 적용 방안과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들 간 업무 경험과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약 2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센터 업무 관련 질의응답과 유용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일상적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촉한 노인인권강사 및

위원회 위촉 노인인권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총 2회)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교육기관 간 회의를 실시(5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참가자 모집에 협조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표 2-3-1] 2021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분야	일자	인원	참석 기관 및 학교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3. 29.	26명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군 인권교육협의회	5. 31.	서면 회의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12. 22.	19명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군 인권교육 강사진
학교 인권교육협의회	3. 30.	28명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대학인권센터 협의회	10. 26.	75명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52개 대학인권센터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교육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인권교육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7월 7일에 개최된 <한국인권교육포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 반영 방안,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학교 인권교육 전문가, 교사, 교대 재학생 등과 함께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학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학교 문화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인권



의식이 중요하므로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인권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한 내용은 202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고, 중장기 추진계획에도 고려할 것이다.

위원회는 11월 30일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건축설계 논의, 위원회 인권교육 업무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하였다. 인권교육전문위원회는 업무과제 발굴, 업무계획 수립, 주요 현안 대응 방안 마련, 업무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가. 인권교육 실시 현황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인권교육센터²⁸⁾ 고도화 및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인권사무소에 인권교육 센터 공간 마련 및 운영, 강사 양성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권강사 위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비대면 원격교육 도입,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 및 전문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4,599회, 35만 1,463명에게 실시하였다. 2019년까지 실시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의무교육 중단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권교육 이수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동활용기관을 확대하여 2019년 30개 기관에서

28)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2021년 8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인권교육에서 콘텐츠의 활용 및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표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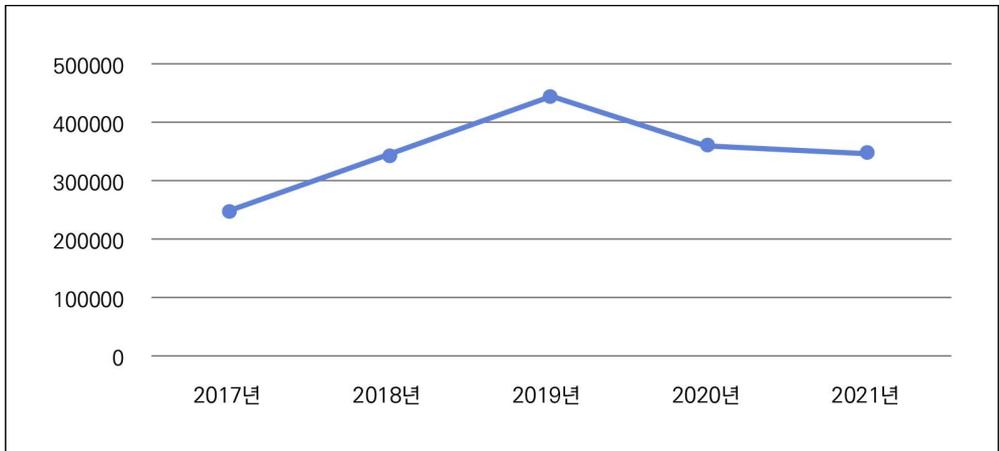
(단위: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누계	42,115	3,095,482	4,218	188,783	3,718	79,736	8,224	1,196,535	18,877	1,195,363	7,078	435,065
2021	4,607	351,463	257	6,279	322	4,332	1,677	205,738	1,012	33,669	1,339	101,445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18	5,189	344,562	427	19,957	484	8,542	1,133	166,183	2,116	106,189	1,029	43,691
2017	4,447	249,428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537	28,257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3-1]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나. 다양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1) 공공 분야 인권교육

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인권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6년 이후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공동 운영 방식으로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군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육군·해군·공군을 대상으로 한 군 인권교관양성과정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해 왔다. 2021년에는 일선 부대 전 장병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관양성과정을 운영하여 331명의 인권교관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수사, 법무, 의료, 상담, 교도, 훈육, 인권모니터링 등 군대 내 인권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군 인권업무 종사자 243명을 대상으로 인권업무종사자과정을 운영하였다.

한편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인권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권 기반 직무수행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위원회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지방의회의원 대상 인권리더십과정을 7회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리더십과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리더십과정,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과 인권보호관 대상 인권역량과정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인권업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중앙부처는 그렇지 않아 국가직 공무원의 인권교육 활성화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사회복지 분야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지자체 인권역량과정을 2회 실시하였다.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실제로 교육에 참가한 지방의회 의원이 <○○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여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확대되나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건강권과 노동권 향상을 위한 지자체 인권역량과정을 실시하였다.

노인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 병원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 노인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활동가 등 보건의료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노인인권 교육가 인권역량과정을 실시하였다.



[표 2-3-3] 2021년 공공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횟수	인원	대상
군 인권교관과정	16	331	각 군 인권교관 및 인권교관 임명 예정자
군 인권업무종사자과정	9	24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십과정	7	91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인권위원 인권리더십과정	3	45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지자체 공무원 인권리더십과정	2	17	지방공무원 6급 이상
지자체 인권담당 인권역량과정	5	39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보호관 인권역량과정	1	57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 인권역량과정	2	70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건강권과 노동권 향상을 위한 지자체 인권역량과정	1	46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노인인권교육가 인권역량과정	1	27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2) 학교 분야 인권교육

학교 분야 인권교육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일부 교육청에서도 교사 연수과정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도 학교 분야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연수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하였고, 40여 개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및 위원회 직원 등 62명이 참여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운영 규정 분석과 표준규정안 적용 방안 논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해와 인권적 해결 방안 논의, 대학 인권교육 시도와 과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대학인권센터 업무가 상담과 조사 등 구제 업무에 치중되어 인권교육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대학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인권센터 직무역량향상 연수과정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로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육 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사무소와 공동 기획으로 확대 개설하였다. 인권의 이해, 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조사의 기술, 노동인권 이해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특히 인권 침해사건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조사 실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교육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체계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22년 교육 과정 운영 기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7개 권역(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강원, 제주)으로 나누어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리더십과정을 운영하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등으로 초·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대상 인권교육가과정을 운영하였다.

인권사무소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 등을 실시하였다.

[표 2-3-4] 2021년 학교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횟수	인원	대상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1	62	대학인권센터 및 위원회 담당자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6	97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8	161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학교 노동인권교육가(교사)과정	1	12	초·중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학교 인권역량과정	5	90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3)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위원회는 「노숙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2013년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의무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복지 분야 교육 대상을 해당 분야 시설 종사자에서 관리자, 업무 담당자, 해당 분야 인권강사로 구분하고 교육시간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4시간에서 2일로 연장하였으며, 교육 방식도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의 전문화 등에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참가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수과정 확대를 위해 인권사무소와 협력해 권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인권 연수과정을 총 12회 운영해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필요한 참고 교안을 제작하여 각 인권사무소에 배포하였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연구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총 48회 1,9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민 분야에서는 기업인권 담당자, 언론인,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별로 인권연수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총 34회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인권교육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도 공공기관 내 인권교육 현황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인권교육 가이드북>을 발간, 위촉 인권강사와 인권교육 활동가에게 배포하였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 직원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운영으로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표 2-3-5] 2021년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횟수	인원
사회 분야	사회복지 인권리더십과정(3권역)	6	131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3	67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	2	51
	정신건강 인권교육가과정	1	14
시민 분야	기업과 인권 직무역량과정(5권역)	12	522
	인권교육단체 인권교육가 과정	1	22
	인권상담가 인권역량과정(3권역)	4	82
	인권활동가 인권역량과정(4권역)	7	100
	스포츠인권교육가과정	3	138
언론 분야	언론과 인권 과정	7	102
의무교육	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7권역)	48	1,992

4) 인권특강 및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위원회는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에 부응하는 인권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인권특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총 1,012회 실시하여 3만 3,669명이 수강하였다.

[표 2-3-6] 최근 5년간 인권특강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계		공공 영역		학교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1	1,012	33,669	202	9,012	519	17,734	291	6,923
2020	733	29,846	176	7,024	330	14,379	227	8,443
2019	2,699	107,372	406	25,844	1,725	63,463	568	18,065
2018	2,116	106,189	385	41,681	1,180	44,841	551	19,667
2017	1,968	101,482	327	37,136	1,191	39,681	450	24,665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도서관과 각 지역 인권체험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권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체험관 방문 프로그램을 322회 운영하였다. 방문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업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교육의 친화력을 높이고, 체험식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3-7]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계		공공 영역		학교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1	322	4,332	48	472	58	855	216	3,005
2020	163	2,700	24	295	34	474	105	1,931
2019	556	10,694	81	1,761	242	4,601	233	4,332
2018	484	8,542	92	2,195	230	3,672	162	2,675
2017	533	10,974	63	1,551	273	4,624	197	4,799

다. 인권강사 양성 및 강사 역량강화과정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강사 양성, 위촉, 역량강화 교육, 인권강사 정보공개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주민·아동의 인권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아동청소년·영유아 3개 분야에 대한 신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총 373명의 지원자 중 84명을 선발하였고, 심화과정 수료자 72명 중 강의 시연 평가 등 심사를 통해 선발된 41명을 위원회 인권강사로 최종 위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일 원격집합교육(총 12일) 방식을 최초 도입하였다. 선행과제, 모둠토의, 발표도구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대면집합교육과 같은 환경과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기본과정 1·2, 전문, 심화과정의 단계별 교육은 내용의 연관성을 높이고, 학습과 점검 그리고 재교육의 순환 형태로 운영하고자 했다.

위촉된 인권강사는 더 나은 인권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50시간의 역량 강화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2021년에는 「평등법」, 재난 등 최근 인권 현안, 인권의 결정례 분석, 분야별 인권 연구,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 비대면 교육을 위한 원격 교육 방법, 강의 시연 등 인권강사 역량강화 필수과정을 46회 운영하여 최종 715명이 수료하였다. 2021년 특별과정으로 개설된 ‘유엔인권메커니즘 아카데미’를 총 8회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국제인권조약의 내용과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8] 2021년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횟수	수료인원	교육 대상(운영기간)
인권강사 역량강화 (필수과정)	인권교육운영과	15	233	위촉 인권강사 (3. 16. ~ 11. 2.)
	부산인권사무소	6	98	
	광주인권사무소	7	116	
	대구인권사무소	6	83	
	대전인권사무소	5	79	
	강원인권사무소	4	65	
	제주인권사무소	3	41	



라. 사이버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상시 학습체계 구축



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접근성 확대, 자기주도적 사이버학습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관련 소양 함양 및 전문 역량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사이버인권교육센터²⁹⁾를 개설하여 2006년부터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센터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공직자 인권교육센터’³⁰⁾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접근 편의를 위해 교육사랑연수원³¹⁾을 통해 사이버 직무연수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인권의 이해’ 등 33개 과정을 총 1,677회 운영하였다. 이수 인원은 20만 5,738명으로(플랫폼 공동 활용 실적 제외), 전년 대비 1만 4,654명이 줄어 6.64%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원회 소관 및 외부기관(사회복지기관 평가 관련 등)의 사이버 인권교육 수요가 일시 증대하였기 때문이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의 집합교육 전환 등 비대면 원격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전환됨으로써 이수 인원이 일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각 분야의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근간이 되며 인권교육 콘텐츠의 구성 내용, 교육 방법에 따라 인권

29) 사이버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30) 나라배움터 공직자 인권교육센터(<http://humanrights.nhi.go.kr>)

31) 교육사랑연수원(<http://edulove.co.kr>)

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의식의 사회적 저변 확대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콘텐츠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에서도 개발과 품질 향상, 영상형 촬영 등 사업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콘텐츠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사이버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웹프로슈어, 콘텐츠 팩트북을 제작·보급하였고, 분기별 신규 콘텐츠 안내를 겸한 사이버교육 홍보 등 신규 사업을 연중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특히 콘텐츠 공동 활용에 18개 대학인권센터를 추가하는 등 콘텐츠 외부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였으며, 확산 채널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웹하드 기반 콘텐츠 배포 방식을 도입·운영하였다. 콘텐츠 공동 활용은 2017년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보유한 공기업 60개 기관에 위원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87개 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총 11만 2,338명이 수료하였다.

[표 2-3-9]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

연도	이수 인원(명)				이수율(%)		
	계	공직자	교사	시민	공직자	교사	시민
2021	205,738	46,958	1,892	156,888	67	66	83
2020	220,392	80,667	5,606	134,119	80	83	87
2019	261,505	56,140	5,663	199,702	82	82	86
2018	166,183	85,592	6,627	73,964	78	91	76
2017	79,799	33,738	2,348	43,713	79	80	76



4. 인권교육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의 주요 개념과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의 장에서 공유되는 인권교육 콘텐츠는 시의성과 전문성 및 활용성이 높은 내용으로 개발·보급될 때 교육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초기부터 인식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콘텐츠는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인권교육 환경과 교육자·학습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2021년까지 총 232종(공공 52종, 학교 35종, 시민사회 78종, 공통 67종)을 개발하였다. 인권교육 콘텐츠는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관기관·단체·인권강사 등의 교육자와 공공도서관·온라인 사이트 등에 제공 및 보급해 오고 있다.

2021년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인권교육.하다(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안내서)>, <놀이로 배우는 인권(에퀴타스 인권교육 교재 ‘Play it fair’ 번역)>, 학교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6종), <돌봄과 인권>, <노인 환자의 인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혐오·차별 대응 영상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공용 콘텐츠(14종) 등 2020년 개발 콘텐츠를 보급하였다.



교사. 인권교육. 하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안내서)



놀이로 배우는 인권
(에퀴타스 인권교육 교재 'Play it fair' 번역)

나. 인권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1) 웹드라마 제작·보급



위원회 웹드라마 <티밍>

위원회는 인권 현안을 시청자가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로 구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을 이해·예방하고자 웹드라마를 제작하였다.

2018년 위원회 조사관들의 일상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진정하세요>, 2019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인권 및 다문화, 학생

인권을 다룬 <비밀의 비밀>, 2020년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편견, 일상에서의 성차별, 스포츠인권 등을 다룬 <차타공인>을 제작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인권문제를 다룬 <티밍>을 제작하여 유튜브로 보급하였다. 4부작으로 제작된 <티밍>은 정보인권, 사생활 침해, 디지털 불법복제 등을 다루었다.



2) 인권작품 공모전

위원회는 인권이 모든 생활 영역 전반에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1년 인권작품 공모전의 주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문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 인권 관련 자유 주제로 확대하였으며, 참여도와 대중성을 고려하여 포스터와 시·에세이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청소년부와 초등부를 분리하여 참여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여 포스터 부문에서는 일반부 140편, 청소년부 60편, 초등부 667편을, 시·에세이 부문에서는 일반부 289편, 청소년부 78편, 초등부 92편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총 1,326편의 작품을 접수하였다. 이 중 코로나 상황에서 빚어진 혐오 문제, 이주민, 재혼가정 등 다양한 인권 이슈를 다룬 작품 총 36편을 선정하였다. 포스터 부문 수상 작품은 휴대하기 편한 엽서와 2022년 위원회 달력 디자인으로 활용 제작하여 인권도서관·인권사무소·시민에게 배포하였고, 위원회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다.



일반부 대상 수상작



청소년부 대상 수상작



초등부 대상 수상작

[표 2-3-10] 2021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부문		수상 내역	작품명
포스터	일반부	대상	조금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누군가의 인생은 퀴즈가 아니다
		우수상	인권존중 人, 평등한 행복의 V
			차별 없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
	장려상	그냥 직업일 뿐이야	
		모두가 값진	
	청소년부	대상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최우수상	무관심한 시선
		우수상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인권을 지키자
			권리, 또 다른 시각
	장려상	사람이 사람을 지킵니다	
		차별은 돌아오는 거야	
초등부	대상	보는 눈이 달라도 보는 시점은 같다	
	최우수상	성차별 멈춰	
	우수상	3초의 말, 다른 사람에겐 30년	
		인권배터리를 채워주세요	
장려상	편애하지 마세요		
	엄마도 휴식이 필요해요		
시 · 에세이	일반부	대상	코로나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최우수상	비계(飛階)
		우수상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여자가 아니라 수리전문가예요!”
장려상	어른이 지운 어린이		
	인권은 입는 게 아니다		



부문		수상 내역	작품명
시 · 에세이	청소년부	대상	나의 등은 휘었고, 내 마음은 곧다
		최우수상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수상	별 일 아니에요
			모두의 블랙리스트
	장려상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	
	초등부	대상	인권지킴이
		최우수상	양치기 소년이라도 괜찮아요!
		우수상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니!
			장난이었어요.
장려상	내일이 안 왔으면		
	정인의 일기		

5. 인권도서관 운영

인권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 도서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2년 소속기관인 인권자료실로 개관하였고, 2012년 인권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 서비스, 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보존,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 인권도서관 운영 및 장서 관리

1) 장서개발,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인권도서관은 위원회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 따른 부서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중점 수집하여 위원회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인권환경의 흐름과 사회적 현안을 주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립된 장서개발 계획에 따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문화된 최적의 자료를 입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장서 구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 담당 사서가 조사하여 작성한 인권 분야 신간 자료 목록을 외부 인권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적합 자료를 선정·추천하는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 2-3-11]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자료 유형	소장 현황	자료 유형	소장 현황
단행본	51,325권	전자저널	1,117종
비도서자료	10,111점	Web-DB	9종(학술정보 7종, 법률정보 2종)
연속간행물	66종	전자책	3,118권

2) 위원회 간행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위원회 간행물의 발간 번호 등록, 보존, 납본,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간행물 서지정보, 목차정보, 원문정보, 발간현황

목록은 위원회 간행물 정보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1년에는 2017~2021년 상반기에 발간된 간행물의 목차정보 190건을 구축하여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표 2-3-12] 위원회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다운로드 건수	36,142건	13,177건	9,283건	8,694건	4,661건

다양한 정보 접근을 위해 2011년 9월부터 누리미디어 등 외부 정보원에 위원회 간행물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인권 분야 연구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연구용역 과정에서 생산되는 양적 설문 조사자료를 2011년부터 데이터 아카이브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 기탁하여 관련 자료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지역민에게 인권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분관(부산·광주·대구·대전분관 2015년 개관, 강원분관 2017년 개관)을 운영하는 등 인권정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3-13] 인권도서관 분관 장서 현황

(단위: 권, 점)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합계	2,271권	2,356권	2,572권	2,285권	1,805권
단행본	1,896권	1,985권	2,177권	1,914권	1,484권
비도서자료	375점	371점	395점	371점	321점

4) 인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수행

인권 기록의 역사적·사회적 활용을 위해 국가 수준의 인권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있었고, 국내외 연구자 및 인권단체 등에서도 인권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권도서관에서는 인권 관련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 보존 방법, 구축 방안, 활용 방법 등을 전문적 관점에서 연구·검토하고, 인권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인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인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1) 열람 및 대출

인권도서관은 인권자료와 인권정보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위해 2005년 11월부터 개인(자료회원)과 단체(학교, 기관, 단체 등)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회원과 단체는 택배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이용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와 만 65세 이상의 자료회원은 무료 택배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 2-3-14]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구분	자료 대출(도서, 비도서)		도서관 이용자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개인, 단체)	
2021년	613명 2,291권	179명 570권	18,361명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라 도서관 방문 이용 제한 시에는 비대면 자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자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정보 서비스

인권도서관은 위원회 직원과 인권 분야 연구자, 인권정보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용자 맞춤형 정보조사 서비스, 도서관 이용 교육, 상호대차 및 원문 제공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위원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요 인권 현안 관련 자료목록 제공 서비스, 인권 기념일별 자료 추천 서비스 등 내부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3) <2021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제작

인권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책과 독서 관련 부대 행사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전국 도서관과 함께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 이어 2021년 도서 전시회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인권도서관 소장 아동도서 중 123종의 내용을 소개한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1,000부를 제작하였다. 각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 인권도서 관련 대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도서관에 740부를 배부하였다.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위원회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인권전문학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대상별 역량강화과정 등 총 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314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인권전문학교는 조사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사기법, 실무 조사의 이론과 실제, 조사관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한 ‘조사관학교’, 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인권정책 권고 수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인권정책학교’, 인권교육협력 기획과 운영 전반의 이해, 실무 역량 학습을 위한 ‘인권교육협력학교’를 진행하였다.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70년대생이 운다>의 저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탄소중립 시대의 인권과 지역인권 투쟁을 주제로 체험형 국내인권현장탐방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대상별 교육과정으로는 ‘간부 리더십 교육’, ‘신규직원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부서별 역량 강화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을 6개 부서에서 7회 운영하였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플랫폼 등 사이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2-3-15] 2021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단위: 명)

과정명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인원
신규 조사관 학교	1. 25.~ 1. 27.	인권교육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조사관 대상 조사업무 이해, 조사 실무교육 조사 이론 및 실제, 보고서 작성 요령 조사관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 역량 학습 	29
신규직원 교육	3. 17.~ 3. 19.	그레이프 라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직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및 실무역량 학습 위원회 조직과 기능, 부서별 업무 관련 기본교육 위원회 비전 공유, 인권업무 이해 향상 	22
인권교육 협력학교	11.22.~ 11. 23.	바비엡 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협력 기획과 운영 전반의 이해, 실무역량 향상 인권교육 주요 이슈,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향상 소통강화, 인권사무소와 협력 방안 모색 	45
조사관 학교	11.29.~ 12. 1.	바비엡 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개선 TF 운영 결과 공유 조사 이론 및 실제, 보고서 작성 요령 조사관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 역량 학습 대상 및 유형별 기법, 문답조사, 행정심판 사례 	77
인권정책 학교	12. 7.	롯데시티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담당자의 공통역량 과정 효과적인 정책권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방법 인권정책 권고 수용성 제고 방안 사회 환경변화의 이해 향상 	24
간부리더십 교육 (인권 북토크)	3. 31.	인권 도서관 영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15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새로운 역할과 방향 모색 	16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노인 빈곤 : 가난의 문법 	14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감염과 인권 : 나는 감염되었다 	16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 리더십 강화 : 경영은 사람이다 - 4회 정보화와 인권 : 디지털의 배신 - 5회 여성인권 : 페미니즘의 역사 및 백래시 	14
인권감수성 향상	11. 20.	인권교육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간 공감과 소통<<70년대생이 운다>> 저자 초청 	148
국내인권 현장탐방	11.10.~ 11. 12.	삼척, 강릉 평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시대의 인권 	4
	11.10.~ 11. 12.	대구, 경산,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권투쟁 	4
부서별 전문교육	연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 진행 - 총 6개 부서, 7회 운영 	84
법정 의무 교육	4. 5.	인권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10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10
	연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폭력예방교육 	248
	10. 12.	인권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식개선교육 	255
	연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폭력 예방교육 	222
	6.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교육 	259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위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214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표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국내외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었다. 매주 위원회 내부 담당자와 수시 협의하여 주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언론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언론, 위원회 내부 직원,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협업하여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언론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20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경향신문 3회 기획 시리즈(1면 톱, 6면 전면 등), 한겨레(사회면 사이드 톱)·법률신문(사회면 4단 기사, 법률신문 7단 기사)·연합뉴스·평화방송에 기획 특집이 보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섭외, 통계 분석, 위원회 내부 전문가 인터뷰 지원, 외부 전문가 인터뷰 지원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 위원회 출입기자 대상 상시 대면 접촉을 확대하여 위원회 활동 및 정책, 결정례 등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기획보도의 단초를 제공하여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기후위기와 인권 등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였다. 해군사관학교 이성교제 금지 시정 권고,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권고,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등 위원회 주요 권고 발표 시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인터뷰 등을 기획하고 지면 반영 및 방송사 뉴스 제작을 유도하는 등 홍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 한편 여성 전용 도서관 관련 진정사건 조사 등 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아울러 출입기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위원회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했으며, <인권보도준칙> 확산, 언론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지원 등 언론인의 인권의식 제고에도 앞장섰다. 한편 기사 스크랩, 주 단위 언론 동향 보고 등 위원회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위원회 내부 소통 강화에 기여하였다.

나.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위원회는 다양한 홍보 매체와 뉴스레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뉴미디어를 통해 인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 고객 4만여 명에게 매월 발송하여 위원회 주요 결정과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렸다.

특히 2021년에는 더 많은 국민과 만날 수 있는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위원회 자체 운영 매체만이 아니라 EBS 지식채널e팀과 협업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 TV에 방영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혐오차별이 증가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 등을 계기로 혐오차별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보급하는 등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변화와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다양성의 존중’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슬기로운 인권생활’ 시리즈

온라인 및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슬기로운 인권생활>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여 ‘직장내 괴롭힘’, ‘노인인권’, ‘문화다양성’,

‘미얀마 민주주의’, ‘아동인권’ 등의 주요 인권 이슈를 유튜브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시민기자단인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함께N’에 ‘알아두면 쓸데 있는 인권 인물 사전’ (로자 파크스·루이 브라우의 이야기 등), ‘추천 인권영화’(<무산일기> 등),

‘코로나19 위기 속 끊임없이 일어난 인종차별’, ‘대체텍스트·배리어프리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표 2-3-16] 홍보 매체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블로그 방문자	632,956	646,454	630,697
카카오스토리 구독자(누적)	5,045	6,009	7,253
유튜브 구독자(누적)	2,630	13,149	14,302
웹드라마 조회수	736,658	912,624	1,312,651

다. ‘인권의 날’ 행사 진행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12월 10일 ‘2021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하되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온라인 생중계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로잘린 크로처(Rosalind Croucher)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의 축사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기념식 행사와 함께 2021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상하였다. 대한민국 인권상 홍조근정훈장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수여되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대통령 표창은 2009년 지역 최초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무지개인권연대’를 조직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에게 수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자 개인 부문은 노경수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홍춘호 제주도청 해설사, 신인수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단체 부문은 사단법인 두루, 울진사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체육시민연대에 수여되었다.

[표 2-3-17]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명단

훈격	성명	소속	공적 요지
홍조근 정훈장	최영미	한국가사 노동자협회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직후 여성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 조직 - 2006년 국내 최초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 가사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사회여론 형성 -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기여 ※ 2021. 11. 25. 인권위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시상
대통령 표창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지역 최초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 ‘무지개인권연대’ 조직하여 국민 인식 개선 기여 - 성소수자 대상 인권침해 관련 상담 활동
위원장 표창	노경수	사상구장애인자립 생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자립생활 이념 및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법제화에 기여



훈격	성명	소속	공적 요지
위원장 표창	홍춘호	제주도민	- 4.3사건 생존자로, 제주도청 해설사로 활동하며 9,196명 이상의 4.3길 방문자에게 해설과 증언
위원장 표창	신인수	보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9년 8개월 동안 장애인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 관련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
위원장 표창	(사)두루		- 공익소송, 입법, 연대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
위원장 표창	울진사회정책연구소		-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대응, 개발로 인한 환경권 침해 감시 활동 진행
위원장 표창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며,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당 부대 관행 개선을 요구하여 장병 인권증진에 기여
위원장 표창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출신학교 등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소수자 인권침해 구제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권 현안 해결
위원장 표창	체육시민연대		- 체육계의 인권 사각지대와 부조리를 바로잡아 인권친화적 스포츠 문화 조성

라. <인권> 잡지 발간

위원회는 인권의식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하여 격월간지로 <인권>을 발간하여 추상적이고 멀게 여길 수 있는 인권문제를 쉽고 친근한 산문, 사진, 일러스트, 만화 등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웹진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사는 카드뉴스, 뉴스레터 등으로 가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보급하고, 연 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권>지는 매호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테마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접근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주요 결정례와 뉴스 등을 소개하고 있다.



[표 2-3-18] 2021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호수	특집	기타 주요 기사
1/2월호 (통권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를 말하다 - '모든 목소리에 가치를' 청년들이 만드는 인권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을 수 있었던 16개월 입양아 사망... 무엇이 문제였나 - 인권 존중을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
3/4월호 (통권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인권, 어디쯤 와 있나? - 코로나 19가 드러낸 정신질환자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 인권'이 없다 - 20년 역사 돌아보기 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였던가
5/6월호 (통권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현재-미래, '국경'을 넘어선 연대 -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에 찬성하는 반대는 허용될 수 없다 - 택배기사가 편히 일해야 고객들도 편리해 집니다! - 20년 역사 돌아보기 ② 임신한 청소년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7/8월호 (통권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군은 여성인가, 군인인가? - 군대 내 성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폐쇄적인 군 조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쇠신해야 - '약자'에게 '약한' 군사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성희롱 극복과 연대의 힘 - 연예인, '저들도 사람이다'를 잊지 않는 것 - 20년 역사 돌아보기 ③ 그때 인권위가 있었다
9/10월호 (통권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 수단이 될 수 없어 - 죄와 (인간의 얼굴을 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당당한 타투'는 없다 - 일상을 보는 눈) 과도한 친절은 사양할게요 - 20년 역사 돌아보기 ④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가?"
11/12월호 (통권 137)	<p>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특집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진통 끝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스무 살의 이야기 - 20년,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어온 발자취 - 시민과 함께 20년, 시민과 소통하며 나란히 걸어온 시간 - 20년 역사 돌아보기 ⑤ 인종차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 인권보도상 시상

위원회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의 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데 이어, 2012년부터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제10회 인권보도상 심사위원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6명의 외부 위원과 홍보협력과장·인권상담조정센터장·성차별시정팀 등 3명의 내부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언론사 및 언론인권단체, 학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확대한 결과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 총 80건이 접수되었으며(2020년 32건 접수, 2021년 80건 접수), 매체별로는 일간지 31건, 방송 25건, 통신사 2건, 인터넷 19건, 잡지 2건이 접수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표 2-3-19] 2021년 제10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대상	포항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 포스코 사례를 통해 제철소 노동자 직업병, 인근 주민의 환경성 질환 실태, 권력기관 카르텔 조명	장성훈, 양재혁
본상	국민일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기획 보도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추적 탐사 보도	박민지, 정현수, 황윤태, 김지애, 최지웅, 정우진, 강보현, 송경모
	한겨레		김완, 오연서
	뉴스민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이주민,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 지점 조명	김규현, 박중엽, 이상원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본상	부산일보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 교정시설 의료 공백, 미비한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 실태 등 조명	김백상, 이우영
	서울신문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 • 야간노동자 질병·사고에 따른 손실 규모, 사회적 비용 분석 등 야간노동자 노동인권 조명	안동환, 박재홍, 송수연, 고혜지, 이태권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교제살인' • 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살인 판결문 108건 분석을 통해 살인 실태, 양형, 폭력 대응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등 보도	이주연, 이정환, 이종호

바. 결정례 동영상 제작·배포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진정사건 중에서 위원회가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결정을 내린 사건 중 결정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14년부터 결정례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재연 드라마 방식에서 2020년부터 대담 형식의 '선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선톡)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편이 제작되었다.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CD로도 제작되어 학교·복지시설·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표 2-3-20] 2021년 결정례 동영상

선독 3	선독 4
<p>〈정신장애인 인권〉 경찰의 언론 브리핑 시 사건 관계자의 정신병력 공개 관련 인권침해</p>	<p>〈아동청소년/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전학 신청 시 부모 이혼 증명 요구 관련 인권 침해</p>

제3절 평가

2021년 위원회가 추진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는 내실 있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인권교육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개선 방안 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돌봄분야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한국인권교육포럼> 등을 개최하여 업무 계획 공유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수과정 운영으로 직무 관련 인권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인권교육 기획-교육과정 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각 분야의 자립적 인권 역량 구축과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인권전문가 및 활동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한층 힘을 쏟았다.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에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요구하고 있다. 활용도 높은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의제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배포·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언론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언론사에서 기획 특집으로 보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 위원회 출입기자 대상 상시 대면 접촉을 확대하여 위원회 활동 및 정책, 결정례 등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기획보도의 단초를 제공하여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기후위기와 인권 등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하였다. 해군사관학교 이성교제 금지 시정 권고,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권고,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 조사,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등 위원회 주요 권고 발표 시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인터뷰를 기획하고 지면 반영 및 방송사 뉴스 제작을 유도하는 등 홍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

2021년은 국민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주요 인권과 관련된 위원회의 입장과 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모색한 해였다. 기존의 전통적 홍보 방법뿐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웹드라마, 인권 캠페인 동영상, 결정례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접근 채널을 다양화하여 조회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환경과 혐오의식의 확산이라는 사회환경에서 시의성 있는 홍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협의를 강화하고, 혐오차별 예방,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온라인상에서의 인권 등의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였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활용과 인권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격월간지 <인권>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과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해 인쇄물과 웹진 형태로 제작·보급하고 있다. 매호 인권 현안을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립 20주년 특별기획과 미얀마 민주주의, 사형제 관련 기획은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격월간지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보급 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새기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2021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유튜브로도 중계된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도 이뤄져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공로를 인정하여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두 번째 비대면 행사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웠으나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제4장 •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반기에는 2022년 예산 및 업무계획 수립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에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반기에는 2022년 업무계획 수립을 앞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시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인권보장체계 관련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인권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인권전문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3회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지역 인권사무소 협력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사무소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8월 25일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권옹호자대회를 개최하여 인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위원회, 지역 인권기구,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권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친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2021년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 정기 등급 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의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인권 현안 대응을 위해 외국 국가인권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로 미얀마 인권침해 사태 해결 및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의 성명 발표를 이끄는 한편 국내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이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및 몽골 내에서 한국인이 집단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몽골인권위원회와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상호 협력하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을 주제로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하여 ‘혐오·차별 대응과 평등법 제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일상적 협력

위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주요 전략과 사업 계획에 인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반기에는 2022년도 예산 및 업무계획 수립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2022년도 업무계획'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시로 인권단체를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 위원장 상장을 지원하였고, 저스피스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에 위원장의 축사를 보내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보고대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나.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접근,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위원회 주요 전략과제와 연계한 5개 과제(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인권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과 인권경영, 「평등법」 제정과 혐오·차별 예방,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를 지정 주제로 제시하여 위원회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과제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4-1]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구분	사업주제	신청	선정 (예비선정)
자율주제	인권 관련 새로운 분야 개발 및 활성화	12	4
	인권단체 또는 국제기구 연대강화	2	-
	국제인권조약	3	-
	인권 관련 지역단체 간 연대활동	1	-
	소계	18	4
지정주제	재난·위기 상황 인권 개선	-	-
	안전한 노동환경과 인권경영	2	1(1)
	「평등법」, 혐오·차별 예방	3	1(1)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4	1
	지역인권 증진	14	4
합계		41	11(2)



[표 2-4-2]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예비선정)	구분	신청	선정 (예비선정)
장애	7	-	북한인권	2	-
여성	5	2	성소수자	2	1
이주·난민	5	-	인권경영	1	(1)
인권일반·인권교육	4	1	스포츠	1	1
아동·청소년	3	1	미디어	1	1
지자체 인권	3	1	노인	1	1
의료·보건	3	1	해외입양인	1	1
차별일반	2	(1)			
소계	32	6(1)	소계	9	5(1)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조사 시범사업,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인권 교육 교재 개발과 교육 사업,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인권 보호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인, 아동·청소년 등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활동 프로그램과 시민사회 인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 인권 영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모범적인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7개 우수 사업을 선정 하였다.

[표 2-4-3]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1	한국NVC센터	학교 체육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코치와 부모의 언어 훈련
2	충남반차별교육문화공동체	충남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구술기록 사업
3	모든사람	인권의 언어로 말벗하기-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사단법인 부리의집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조사 시범사업
5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인권교육 교재 개발과 교육사업
6	경기여성단체연합	5060세대 여성 프리랜서 고군분투기
7	제주YWCA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인권보호 프로젝트'
8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인권운동 어떻게 해? 경험 나누고 더하기
9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완월동'을 묻다 - 부산형 여성인권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한 '완월동' 온라인 인권전시회 개최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10	언론인권센터	#인권이_존중받는 #미디어_환경_만들기 #프로젝트
11	사단법인 인권도시연구소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별 인권도시 기반조성 사업

[표 2-4-4]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 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단체명 (사업명)	선정 이유
사단법인 부리의집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조사 시범사업>	과거 해외입양 절차의 인권침해 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당사자 및 입양기관 관계자에 대한 충실한 인터뷰를 통해 아동 해외 입양의 참혹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당사자 관점에서 해외 입양 문제를 인권 의제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큼. 전문가 간담회, SNS 등을 활용한 보고서 전파 등으로 관련 의제에 관한 네트워킹 및 공론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해외 입양 아동들의 인권침해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인권교육 교재개발과 교육사업>	전문 집필진을 구성하여 의료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사례에 근거한 활용도 높은 교재와 교안을 개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방식을



단체명 (사업명)	선정 이유
	<p>전환함으로써 전국 8개 대학 140여 명 의대생의 교육 참여를 이루었고 그 효과성까지 검증하여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함.</p>
<p>제주YWCA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인권보호 프로젝트'〉</p>	<p>아동 대상 인형극 및 예방교육, 청소년/성인 대상 세미나, 청소년 UCC 공모전, 현장 캠페인 등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 특히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감수성에 부합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용성을 높였으며, 사업 추진 결과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을 넘어 경찰청, 도청에서도 강의 요청이 잇따르는 등 해당 의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확인됨.</p>
<p>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인권운동 어떻게 해? 경험 나누고 더하기〉</p>	<p>인권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 인권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인권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촉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룸. 특히 저년차 활동가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경험 나눔, 활동가 네트워크 촉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사업 이후에는 교육 자료를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인권운동 전략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성과를 공유한 점도 높이 평가됨.</p>
<p>충남반차별교육문화공동체 〈충남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구술기록 사업〉</p>	<p>인권조례가 폐지된 지자체의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여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함.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반을 둔 성소수자 89명의 경험에 대해 양적·질적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 공유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내 연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충실한 성과물을 도출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 내 성소수자 인권의 제를 확장하는 데 기여함.</p>
<p>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완월동'을 묻다 - 부산형 여성인권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한 '완월동' 온라인 인권전시회 개최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p>	<p>소외받던 성매매 여성의 삶과 성매매 집결지로 낙인찍힌 지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인권교육 현장으로 의미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이 쉽지 않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류, 전시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함.</p>

단체명 (사업명)	선정 이유
<p>한국NVC센터 〈 학교 체육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코치와 부모의 언어 훈련〉</p>	<p>스포츠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인 양성정책에 대한 재검토뿐 아니라 성과와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코치와 부모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함. 소책자, 동영상 자료 등 사업 성과물의 질이 우수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후속 모임이 결성되었으며, 주요 스포츠 협회의 교육 협조 요청이 이어지는 등 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산 가능성을 확인함.</p>

다.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현안 논의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인권현장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다양한 인권현장을 방문하였다. 해고노동자 복지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여 단식 농성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30여 년 전 옛 한진 중공업에서 해고됐던 김진숙 씨의 복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의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서울시 목동에 소재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방문하고 탈시설 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주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당사자 및 관계자들과 만나 탈시설 이후 당사자의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삶의 만족도와 탈시설 이후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경청하였다.



[표 2-4-5] 2021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연번	방문일	현장	유형	비고
1	2. 2.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단식 농성장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복직 관련 의견 청취	최영애 위원장
2	3. 4.	프리월지원주택	장애인 지원주택 방문,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주택 관계자 간담회	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위원
3	6. 17.	대전보훈요양원	보훈요양원 운영 현황 의견 청취	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4	6. 18.	천안교도소	대체복무요원 복무현장의 인권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의견 청취	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5	10. 21.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성장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관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남규선 위원
6	11. 4.	포항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을 통해 인권 현황 및 과제 청취	이상철 위원
7	11. 12.	작은 안나의 집	노인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인권 현황 및 의견 청취	박찬운 위원
8	11. 16.	경북북부제2교도소, 천안교도소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 인권 현황 및 과제 청취	박찬운 위원
9	11. 17.	공군 제8비행단	군 미결구금시설 방문을 통해 인권 현황 및 과제 청취	이상철 위원
10	11. 17.	정화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을 통해 인권 현황 및 과제 청취	남규선 위원
11	12. 7.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 쉼터 방문,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 인권 단체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황 및 의견 청취	송두환 위원장

위원회는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현장을 살피고 대체복무요원과 관계자를 만나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주노동자 쉼터 인권현장 방문

12월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이주노동자 쉼터를 방문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금체불, 열악한 주거시설, 직장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경청하였다.

라.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전담기구 신설이 확산되고 국제인권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인권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지역인권전문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인권사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역인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권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권사무소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와 광주인권사무소 <인권 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간담회>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사무소와 지자체,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권업무를 발굴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며 협력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8월 25일 <2021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단체 등과 더불어 인권옹호기관과 대학인권센터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190여 명이



참가,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사회 인권 현황과 전망-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으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인권 현황(특별분과), 지자체 인권위원회 활동 현황 및 전망(제1분과), 지자체 인권보호관 활동 현황 및 전망(제2분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 및 전망-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제3분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 현황 및 전망(제4분과), 대학인권센터 활동 현황 및 전망(제5분과), 인권옹호자 활동 현황 및 전망(종합분과)으로 분과를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하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였다.



2021년 인권옹호자회의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과 협력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협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은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및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목적

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6월 GANHRI 연례회의에 참가하고, 6월과 12월에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그룹의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노인인권 의제를 공론화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GANHRI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서 GANHRI 의장 변경 등 주요 의제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GANHRI의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세계행동계획’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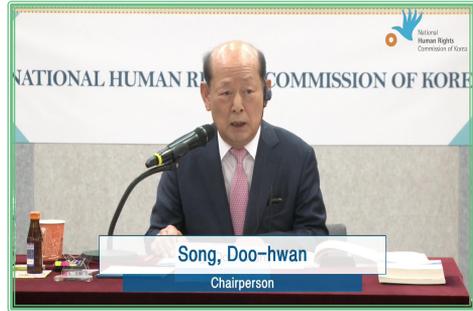
또한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상·하반기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명칭을 ‘GANHRI 고령화와 노인인권 실무그룹(GANHRI Working Group on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으로 변경하여 실무그룹의 활동에서 ‘노인의 인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2021년 개최된 제47차,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기후변화가 노인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성명 발표, 노인의 권리 향유에 관한 <유엔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성명 발표를 견인하였다.

GANHRI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등급을 심사한다. GANHRI 승인소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원성, 업무에 대한 독립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 권한, 재정적 자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을 각 국가인권기구가 충실히 준수하는지를 심사해 등급(A 또는 B)을 부여하고 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모든 의제에 대한 발언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발언권, GANHRI 내에서 의사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GANHRI 승인소위 정기 등급심사를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위원회에 대한 심사 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 승인소위의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위상과 지위가 결정되는 만큼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위원회로서는 이번 A등급이라는 심사 결과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GANHRI 승인소위 심사 화상회의

GANHRI 승인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등급 심사에서 A등급을 다시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원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협력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인권 현안 협력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을 통해 제26차 APF 연례회의에 참가하였다. 연례회의에서는 APF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 의결 및 주요 직위 선출, 유엔 여성차별금지 실무그룹 보고서 및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APF의 주요 의결기구인 ‘APF 거버넌스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선출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4월 15일에 열린 <APF 여성지도자 포럼> 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하여 여성 대표성 및 성 주류화 현황을 논의하는 한편 6월 22일 APF 사무총장 네트워크 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두되는 인권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12월 14일에 개최된 APF 포럼이사회 회의에서는 GANHRI 의장 지명자 선출, APF 거버넌스위원회 헌장 개정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위원회는 4월 27일, APF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미얀마 인권침해 사태 등 주요 국제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는 위원장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APF 의장에게 보낸 것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위원회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APF의 성명 발표를 전인하였다. 이에 5월 10일, APF 의장은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훼손 규탄, 폭력 중단 및 정치범 사면, 아세안정상회의 폭력 중단 합의 이행,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국내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따라 APF 회원기구 및 APF 사무국과 상시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APF와의 양자 간 리더십 소통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APF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유엔기구 및 기타 인권 관련 기구와 협력

위원회는 3월 29일에서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1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하여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 ‘사법 접근성’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노인인권협약」 성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월에는 외교부, 아시아·유럽재단,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제20차

아셈노인인권세미나를 주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의 현주소를 다루었다. 이외에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주최한 노인인권 전문가 회의에 참가하고, 유엔·시민사회·국가인권기구가 공동 추진한 ‘노인인권 주간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면서 유관기구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등과 함께 ‘혐오·차별 대응과 평등법 제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6월 11일 개최된 간담회에는 유럽연합(EU) 대표부 및 13개국 주한 대사 및 외교관,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이 참여해 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 내용과 혐오·차별 개선 효과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평등법」 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

또한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스웨덴 대사, 캐나다 대사, 호주 대사, 독일 대사, 미국 대사대리 등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요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8월 25일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영화와 인권>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위원회의 인권영화 제작 경험 등을 공유하였으며, 10월 12일 러시아 국가인권기구(러시아연방 인권옴부즈맨)가 주최한 국제인권회의(화상회의)에 참여하여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12월에는 국내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이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및 몽골 내에서 한국인이 집단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몽골인권위원회와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3. 국제회의 개최

202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위원회는 8월 2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유럽연합(EU) 및 APF와 공동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인권기구·시민사회단체·주한 외교사절·학계 등에서 전문가 80여 명이 현장 참석하였으며, 화상을 통해 해외 국가인권기구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성소수자·노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에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유럽대외관계청 부국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등권재단(Equal Rights Trust) 대표 등 유럽권역의 인권 전문가들과 해외 국가인권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그리고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 취약성이 더 커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사례와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평등법」을 제정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당면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유럽연합(EU)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 인권 현안에 대응함에 있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절 평가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위원회는 전국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인권기구,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 예산 및 업무계획,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등에 대하여 온라인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시로 인권단체를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과 인권옹호관(보호관), 인권행정공무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더불어 인권옹호기관 및 대학인권센터 관계자도 참석하여 '한국사회 인권 현황과 전망-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권보호관, 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동), 인권옹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학인권센터 등 현 시기 주요 인권 옹호 활동 현황과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회의 개최·참석 등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여도를 높이고, 유엔인권기구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들과 온라인 업무 협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국제협력 사안을 밀도 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및 외교 파트너들과 ‘혐오차별 철폐 및 평등법 제정 추진’과 같은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2021년 위원회는 GANHRI 승인소위원회 정기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위원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국제 무대에서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국제인권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강화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인권 무대에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실무그룹의 활동과 회의를 이끌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밖에도 2022~2023년 중 진행될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2023년으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내 인권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심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5장 •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 기관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에 5개의 인권사무소와 제주에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 부산인권사무소와 광주인권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인권사무소, 2017년 6월 강원인권사무소, 2019년 10월 제주출장소를 개소하였다.

[표 2-5-1] 인권사무소와 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제주출장소	제주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 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구급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주요 활동

1.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2021년 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1,588건, 상담 9,810건, 민원·안내 4,019건을 접수하였다. 2020년에 비해 진정사건은 47건(2.9%) 감소하였다. 광주 인권사무소는 2021년 병합사건이 증가하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2020년 병합사건이 많았던 강원인권사무소는 접수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상담은 638건(7.0%) 증가한 반면, 민원·안내는 1,120건(%)이 감소하였다.

[표 2-5-2]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인권사무소	연도	진정	상담	민원 / 안내	합계
합계	2021	1,588	9,810	4,019	15,417
	2020	1,635	9,172	5,139	15,946
부산	2021	409	2,102	353	2,864
	2020	473	2,337	405	3,215
광주	2021	421	3,459	1,394	5,274
	2020	279	2,315	1,614	4,208
대구	2021	345	2,190	318	2,853
	2020	284	1,677	582	2,543
대전	2021	325	1,707	483	2,515
	2020	319	2,459	661	3,439
강원	2021	69	207	1,418	1,694
	2020	260	231	1,820	2,311
제주	2021	19	145	53	217
	2020	20	153	57	230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2021년 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는 1,724건이며, 종결 처리는 1,689건이다. 종결 처리 중 221건(13.1%)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832건(49.3%)이 상담종결, 636건(37.7%)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면전진정 접수는 21건(1.2%) 감소한 반면, 종결 처리는 53건(3.2%)이 증가하였다.

[표 2-5-3]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인권 사무소	연도	접수	처리						
			소계	진정 접수	상담종결	철회			
합계	2021	1,724	1,689	221	13.1	832	49.3	636	37.7
	2020	1,745	1,636	171	10.5	792	48.4	673	41.1
부산	2021	412	412	45	10.9	191	46.4	176	42.7
	2020	559	542	38	7.0	276	50.9	228	42.1
광주	2021	452	472	52	11.0	251	53.2	169	35.8
	2020	365	344	19	5.5	176	51.2	149	43.3
대구	2021	428	415	75	18.1	198	47.7	142	34.2
	2020	483	438	62	14.2	195	44.5	181	41.3
대전	2021	330	294	45	15.3	157	53.4	92	31.3
	2020	268	240	38	15.8	123	51.2	79	32.9
강원	2021	94	90	4	4.4	32	35.6	54	60.0
	2020	59	57	12	21.1	15	26.3	30	52.6
제주	2021	8	6	-	-	3	50.0	3	50.0
	2020	11	15	2	13.3	7	46.7	6	40.0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3. 진정사건 처리

2021년 인권사무소에 배당된 진정사건은 3,495건이고, 3,174건이 처리되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304건으로 권고 등 108건, 합의종결 19건, 조사중해결 178건이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진정사건 배당은 499건(16.7%)이 증가하였고, 처리는 전년 대비 6건 증가하여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2-5-4]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인권 사무소	구분	배당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개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2021	3,495	3,174	304	-	108	-	19	178	1,914	9	926	20
	2020	2,996	3,168	724	-	231	-	9	484	1,668	19	755	2
부산	2021	931	819	83	-	26	-	9	48	552	5	177	2
	2020	806	785	88	-	36	-	2	50	514	7	175	1
광주	2021	760	789	73	-	27	-	1	45	482	-	231	3
	2020	550	574	160	-	138	-	1	21	298	3	113	-
대구	2021	770	758	69	-	31	-	1	37	448	1	229	11
	2020	666	700	43	-	19	-	-	24	438	1	218	-
대전	2021	736	553	39	-	13	-	3	23	276	1	233	4
	2020	537	567	79	-	31	-	5	43	287	5	195	1
강원	2021	208	176	31	-	10	-	3	18	102	1	42	-
	2020	378	485	342	-	6	-	1	335	109	2	32	-
제주	2021	90	79	10	-	1	-	2	7	54	1	14	-
	2020	59	57	12	-	1	-	-	11	22	1	22	-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파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

※ 조사중해결: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멘토링 제도 운영, 조사관 토론회 및 특강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안전조치 없는 과도한 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기술사 면접시험 응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수용자 사망사건, 대학의 집회 참여 교수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조사 영역에서 적극적인 권고를 추진하였다. 또한 ○○조선 고공농성 장기화(단식)에 따른 타 국가기관의 긴급 중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 현장에서 중재, 조율하여 진정사건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우선적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안건 상정까지 단계적 집중 관리와 사건 내용에 따라 조사관들이 협업체계를 마련해 공동조사관제를 운영하였으며, 팀 간 협업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인한 개인 주택 페인트칠 강요 사건, 시의회 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미분리 사건, 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발언 사건, 학교의 복직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사건, 대학교 채플 참석 강요 사건 등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도모했다. 또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사건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 사망사건 등과 같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하였다. ○○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1년 이상 민·관 협의체 구성을 못 하고 난항을 겪으며 장애인이 ○○군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상황에서 광주인권사무소의 중재 및 자문을 통해 극적으로 탈시설 지원과 함께 합의를 도출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정기 조사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조속한 사건처리 및 구제율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용모 제한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그리고 정신병원 보호사 폭행이나 입원 절차 위반, 정신병원의 부당한 노동 부과, 장애인 편의 미제공 등 장애인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동의 절차 없는 지문인식기 사용이나 신상정보 노출, 사업장 CCTV 근로 감시, 경찰의 부당 불심검문이나 과도한 수갑 사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연속 금치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검토로 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여 사건 조사에서 제도개선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주 사드기지 장비반입 저지 농성 현장 등 인권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역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상시적 사건 진행 관리를 통해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사건을 연중 20건대 이내에서 관리하였다. 언론보도, 지역 동향,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관별 전담 분야 지정, 주1회 조사관 사건 토론회, 보고서 검토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조사보고서의 완결성 및 충실성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방송 인터뷰 불허,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시 편의 제공 미흡, 고등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지자체의 서약서 제출 강요, 인감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과도한 장구 사용, 근로감독관의 민원인에 대한 반말 및 폭언,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혐의 사실 미고지 등과 같은 지역 내 이슈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2021년 지역 내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릉 ○○○○ 부당노동행위, 동해안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건강권·환경권 침해 가능성, ○○ 건강보험공단 집회 현장, 원주 지역 고공 크레인 농성 건설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조율과 협의 등을 진행하여 신속한 기본권 침해 예방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 권고, 경찰의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강원지역의 권리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출장소

제주출장소는 2019년 10월 개소 이후 진정사건이 2019년 26건, 2020년 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총 65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다. 2021년 처리한 진정사건 중 구제조치 권고 3건, 조사중해결 6건으로 권리구제율은 13.88%이며, 평균 소요일수는 67일이다.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압수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교수가 학생의 나이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과 숙박업체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 종결하였다. 경제 빈곤 영주권자에 대한 생계 지원 거부, 집배원의 근무시간 외 우편배달, 평생교육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지자체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증 장애인 이용 제한, 그리고 ○○ 경찰청 직원의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등은 조사 중 해결하였다.

제주출장소는 진정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와 조사중해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4. 인권교육

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방문교육,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

2021년 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총 1,197회, 2만 9,955명으로, 전년 대비 교육 횟수는 463회(63.1%), 교육 인원은 5,262명(21.3%) 증가하였다. 교육 유형별로는 인권강사양성과정 31회 509명, 인권감수성향상과정 103회 2,996명, 방문교육 322회 4,332명, 인권특강 741회 2만 2,128명이다. 이 중 인권특강을 통한 인권교육이 가장 많았다.

[표 2-5-5] 2021년 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 명)

인권 사무소	합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방문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1,197	29,955	31	509	103	2,996	322	4,332	741	22,128
부산	463	12,538	6	125	40	1,259	19	371	398	10,783
광주	155	3,980	7	116	16	665	69	1,189	63	2,020
대구	183	4,316	6	83	15	359	65	888	97	2,986
대전	250	4,905	5	79	15	248	113	1,195	117	3,383
강원	98	2,090	4	65	14	318	51	639	29	1,068
제주	48	2,126	3	41	3	147	5	50	37	1,888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가. 홍보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사회에 인권문화를 조성하고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홍보사업으로 부산인권사무소 자체 블로그를 이용하여 위원회 및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다정다감다섯시’에서 아동인권을 홍보하는 등 지역 내 인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평등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사회의 「평등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를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법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찾아가는 평등법 설명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선언기념식·인권문화제·인권특강 등 다양한 인권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인권주간 동안 경남 창원레포츠파크에 부산인권사무소에서 기제작한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마주캠페인 인권포스터’와 ‘UN 인권포스터’를 대여 및 전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찾아가는 「평등법」 설명회 운영



인권포스터 대어 및 전시 운영(창원레포츠타파크)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이외에도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매체로 홍보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여성의 날, 세계난민의 날에 사회적 약자 관련 자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권을 한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권고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도 적극 배포하고 있으며, ‘AI와 혐오표현’, ‘이주노동자 실태와 지원 방향’, ‘직장 내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방송 토론회,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인권 ON, 온, 溜’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인권마당극 ‘인권 GO하자’ 공연, 학생인권조례 10주년 인권댄스 공모전 수상팀 공연, ‘평등법 제정, 차별없는 세상’ 카드뉴스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2021년에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권리옹호기관과 안정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하는 한편, 이들 기관과 지역 인권문화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인권옹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의 주요 인권 사건과 공간을 연계한 영상 제작, 지역 인권 현안을 살펴보는 다양한 형식의 행사(보이는 라디오, 뉴스쇼)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권 강좌 및 강연회, 저명인사 초빙 인권토크 등을 진행하고 공공도서관 활용 인권 프로그램 기획, 월간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지역에 좀 더 밀착한 인권 홍보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학교,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별 인권교육과정을 대상자 특성에 맞게 기획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스포츠인권과 같이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안 제작 및 인권강사 양성 등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다만 앞으로 유관기관 등 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의 인권제도를 점검하고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단체 협력 방향을 지역 인권 현안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고, 지역에 밀착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2021년 지역 내 혐오표현과 차별 해소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중 온·오프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혐오 차별 예방과 「평등법」 제정 홍보를 위하여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상·하반기 2회(각 2주)에 걸쳐 서울·용산·대전·서대전·오송역 등 역사 내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동영상 상영하는 등 대국민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혐오표현과 차별 해소 캠페인

매 홈경기 개최 시 경기장 전광판에 스포츠인권 홍보 영상을 상영하여 운동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 관람객,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기념하여 대전 및 충청지역 지자체, 유관 기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전시민인권페스티벌> 및 <충청북도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홍보 전략으로 비대면·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강원인권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월1회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 유통을 추진하였고, 당초 월1회(총 6건)



강원인권서포터즈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인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언론 및 미디어 환경에 따른 인권 홍보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 연고 스포츠 구단(대전하나시티즌, 충남아산 FC, 한화이글스)과 업무협의를 통해

영상을 제작하려던 계획에서 확대하여 총 15편의 영상을 제작, 2021년 12월 기준 누적 조회수 2,238회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을 인권 필진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의 인권 현안을 콘텐츠화하고, 이를 강원인권사무소 블로그 등에 게재하여 총 10회의 독자적



인권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고, 강원인권사무소-강원도-강원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 독자 사업으로 혐오·차별 대응 교육 ‘마주’ 프로그램(15개교, 258명)을 평소 인권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횡성과 태백을 비롯한 산간벽지 학교에 대해 시행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한 결과, 교육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장애인권토론회, 인권영화제,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등 지역 문화행사와 연동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강원 인권주간을 지정, 도내 각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강원인권사무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민의 인권 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주출장소

제주출장소는 홍보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 제주출장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홍보를 실시하였다. SNS에는 제주출장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조사·구제 절차 안내, 주요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내용 소개, 인권기념일 소개 등으로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제주출장소의 사업 홍보는 지역 언론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어, 출장소 개소 이후 언론 노출이 증가하는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나. 인권체험관(인권전시관)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전시관은 재난과 인권 전시 <코로나19, 청소년일상기록전>, 미안마 응원 전시 <미안마 민주주의, 몸으로 쓰다>, 발달장애인 미술작품전 <2030청년

발달장애인문화! 세상을 담다), 노인인식개선 카툰전, 프라이드 퍼레이드 사진전 <스톤월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시회 등을 통해 아동·노인·장애 등 다양한 인권 분야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부산인권전시관 전시회 방문객 수는 총 1만 354명으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방문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되었다.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해 부산인권전시관은 다른 지역 인권 체험관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체험키트 <인권꾸러미-세계인권선언문편>을 제작하였다.



〈코로나19, 청소년일상기록전〉



〈미얀마 민주주의, 몸으로 쓰다〉

광주인권사무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인권체험관 운영 및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초 교육 계획 단계에서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하였으며, 전북·전남·광주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ON 인권)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인권강사단 연구모임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키트를 제작하여 사전에 교육 신청 기관에 발송함으로써 교육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직접 대면 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66회의 교육(인권테마역사 방문 9회, 온라인 57회)을 실시하여 1,11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체험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 다양한 체험·참여형 인권 콘텐츠 개발 및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형 인권교육 콘텐츠 ‘인권꾸러미’를 제작하여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웹 기반 프로그램(‘스텝프투어’)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스포츠인권을 주제로 참여형 인권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학생·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체험관 방문 프로그램은 65회(참여자 900여 명)로 전년에 비해 참여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 운동선수 대상 스포츠인권교육을 15회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청소년 일상기록전> 온·오프라인 전시, <인권공모전 포스터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인권전시회를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지역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꾀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체험관은 2021년 학교·복지시설·인권단체·경찰·군·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3회에 걸쳐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총 1,901명이 체험관을 이용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권체험키트(인권꾸러미) 개발 및 비대면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약 500명 증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약 50회 증가하며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이루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공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친화적 기업경영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대전인권체험관은 소재지인 시청역 역사 내 계단 및 기둥에 인권포스터·일러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인권 영상을 상영하며 역사 이용객에게 자연스럽게 인권 콘텐츠를 노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강원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지원청, 강원도 등과 협의하여 강원도 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1,000개 이상의 기관에 홍보 공문을 시행하고 19개 시군에 배포되는 반상회보에 체험관을 소개하는 등 강원인권체험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운영 횟수(3배 이상) 및 방문자 수(6배 이상)의 증가(2020년 15회, 97명 → 2021년 51회, 652명)로 이어져 생활 속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활성화 외에도 전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방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인권체험관이 공동으로 신규 콘텐츠를 개발,



비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라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체험관 담당자 및 인권강사들이 협업해 인권체험키트(인권꾸러미-세계인권선언편)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강원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인권체험키트 활용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14개 센터 대상 18회 진행, 289명 참여).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지역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체험관 방문에 제한이 있음에도 산간벽지 등 다양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졌고, 체험관 홍보 효과 제고와 균형적인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인권 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인권 현안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타 지역에 비해 단체 간 협력체계가 미약한 경남지역 인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부경남권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서부경남권 단체활동가 인권 역량과정’ 및 ‘경남 인권상담가 리더십 과정’ 운영 등 경남지역의 인권 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점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부산울산 경남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차별금지 및 평등법 관련 부산지역 시민 공청회> 후원 등 운영 지원, <울산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22년도 부산인권사무소 업무계획 관련 <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 광역지자체의 인권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역량 강화 과정, 제3회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 개최,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위원 리더십 과정, 경남 찾아가는 도민인권학교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광역교육청과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관련한 부산·울산 모니터링단원 대상 온라인 연수교재(동영상) 제작 및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등 정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권교육 확대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의 인권증진과 교육을 위해 ‘경찰청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경찰 대상 인권역량강화과정 운영, 부산경찰청 인권진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소통협력위원회 개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경찰청 등과 함께하는 인권정책 연석회의와 지역 지자체 기관과의 라운드테이블을 매월 개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과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과 과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담론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2021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찾아가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광주 지역 내 인권 현안을 살피고, 광주광역시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인권도시 정책의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한 후 현시점에 인권도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도시 정책 모니터링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시민단체·광주광역시청 인권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인권골든벨' 온라인 퀴즈풀이 과정을 개최하여 각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 이를 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의 안정적인 협력체계 부재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는 지역인권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5월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회의(3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권옹호 업무 상시 지원 및 인권선언 기념주간 사업을 공동 추진하였다. 또한 4월에 지역 내 대학 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4회) 개최로 협력을 강화하였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 프로그램 기획 및 인권 콘텐츠 제공과 함께 인권토크(2회)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권리옹호기관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3회), 부문별 간담회(5회), 기초단위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3회) 등을 통하여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하였다. 특히 단체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지역 기초단위 인권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단체협력의 저변 확대를 꾀하였다.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시 소통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회, 차별금지·「평등법」 토론회, 이소선 10주기 기념행사, 미안마 민주주의와 인권 조명 강좌, 쿼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참여 등 인권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인권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인권사무소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충남권 시민단체 간담회, 충남인권 민관협력 실무협의회, 충북인권협의회, 충남인권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의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5월에는 대전인권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전인권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인권증진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전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발표회

대전·세종·충청지역 인권옹호기관과 인권상담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권 현안을 공유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제고하였다. 또한 관할 지역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들과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기업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장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온라인 토론회, 제3회 대전장애인인권영화제 등을 공동 주최하였으며, 12월에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함께 대전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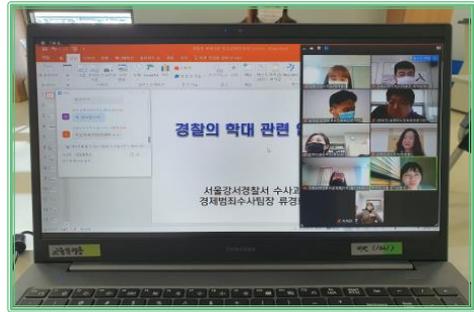
강원인권사무소는 지역의 기관, 단체의 분야별 협의체 ‘소통협력위원회’(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경영협의체’(공공기관), ‘강원인권포럼’(행정기관), 권리보호기관네트워크(권리보호기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인권 현안, 인권 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시 협력체계의 구축은 상호 소통·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역 인권 현안과 기관 간 협업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었다.

기관 협력에서도 강원도 및 기초지자체와의 간담회, 지방의원 인권교육 실시로 인권제도화의 필요성을 전파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초지자체 인권조례를 제정(춘천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차별 대응교육 ‘마주’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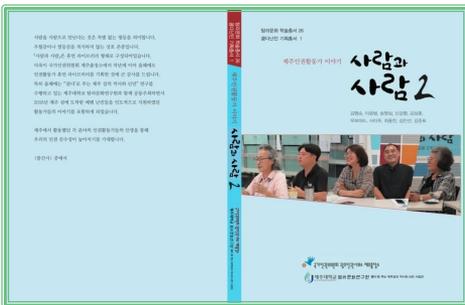


마주 프로그램



권리보호기관네트워크 회의

제주출장소



제주인권활동가 이야기 <사람과 사람2>

제주출장소는 지역 내 인권·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인권카페-사람과 사람Ⅱ, 차별금지·「평등법」 제주시민 공청회, 제주 인권활동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제주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인권카페(휴먼라이브러리)와 대담 내용을 담은 인권도서 <사람과 사람2> 출간은 지역 인권활동가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었다.

또한 지역에서 민관 인권 협력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한 제주인권정책 라운드 테이블은 지역의 주요 인권 현안을 다루는 인권정책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된 제주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평등법」, 인권정책기본법, 난민과 정보인권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 교육청 등이 스스로 주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3절 평가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신규·전입 조사관이 다수 배치됨에 따라 조사 역량을 강화 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분야에서 권리구제를 하였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조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언론 홍보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공론화 및 차별 대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를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찾아가는 평등법 설명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인권단체 등과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 하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전진정, 대면상담, 오프라인 홍보, 대면회의 및 교육에 어려움이 컸던 해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역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각종 협의회 운영, 간담회가 인권 거버넌스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가 추진한 ‘인권도시 정책 모니터링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10년 동안 추진해 온 인권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사업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내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등 최초 기획부터 토론회까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소통·협력체계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지자체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인권사무소 차원에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본 것은 이번이 최초로 지역 인권사무소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AI와 혐오표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성과와 과제’, ‘경찰 개혁과 인권’, ‘스포츠 인권실태 그리고 학생선수’ 같은 사회 이슈와 새로운 인권 의제를 학습하고 논의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매달 개최함으로써 인권 담론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인권 현황에 대한 공유와 실질적 협력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인권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자체·경찰·대학·공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하는 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도 정례화함으로써 장애·여성·이주 등 각 영역에서 지역의 인권 현안을 담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2021년에 지역 내 유관기관과 안정적인 협의체를 마련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시 소통하는 한편, 이들 기관과 지역 인권문화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인권옹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인권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 다양한 인권 강좌 및 강연회, 저명인사 초빙 인권토크 등을 진행하고 공공도서관 활용 인권 프로그램 기획, 월간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지역에 좀 더 밀착한 인권 홍보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학교, 공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별 인권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스포츠인권과 같이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안 제작 및 인권 강사 양성 등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다만 앞으로 유관기관 등 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의 인권제도를 점검하고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단체 협력 방향을 지역 인권 현안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고, 지역에 밀착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언론보도, 동향,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기초 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의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시민사회단체와 인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평등법」 제정을 위한 혐오·차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지역 연고 스포츠구단과 연계하여 스포츠인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혐오차별 예방·대응 미디어교육 공동 운영 및 디지털 시민성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 내 혐오차별 예방·대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대면 참여 프로그램(인권체험키트 개발)을 적극 도입하여 인권 체험관 방문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3종의 다양한 인권교육과정 진행 시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을 설계하고 이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새로운 인권증진행동전략 시행 첫해를 맞아 세부적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지역 내 인권·시민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협치를 강화하고, 인권강사의 역량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시행을 통해 인권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기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기관 협력과 사업 활성화,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찾아가는 혐오차별 대응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당초 인권 박람회로 추진되던 장애인권사진 전시회를 개별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하여 진행하였고, 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인권체험키트를 보급하는 등 물리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더 많은 시민이 인권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새로운 온라인 홍보 방안(인권서포터즈, 인권 필진)을 모색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소통협력위원회, 인권경영협의체, 강원인권포럼, 권리보호기관 네트워크 등 각 기관·단체와 적극적 협력을 지속하여 온라인 인권영화제, 장애인권토론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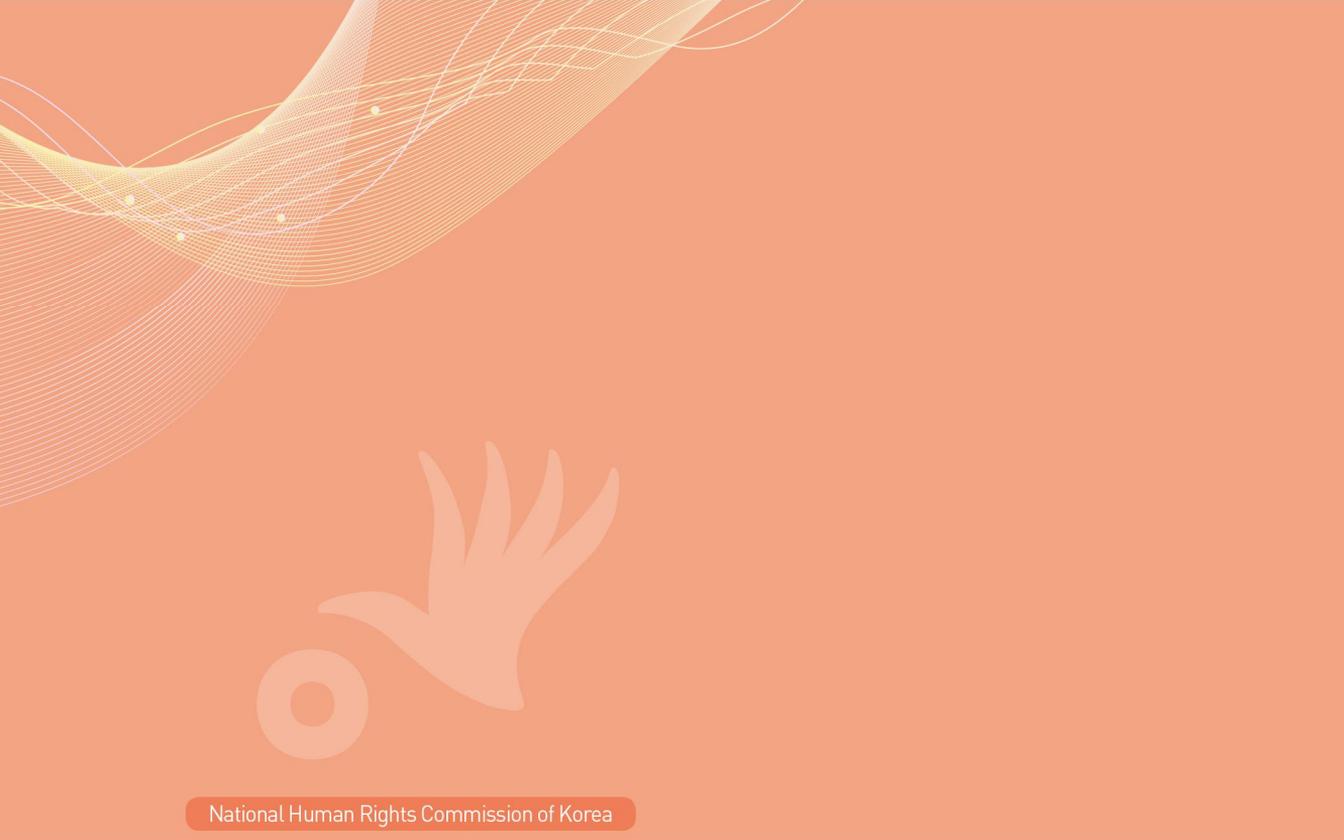
제주출장소

개소 2년 차를 맞이한 제주출장소는 지역 내 인지도 부족으로 다른 인권사무소 등에 비해 진정사건 접수는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개소 이후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경찰·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인권연수과정, 인권특강, 인권교육센터 방문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였고, 여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유연하게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및 지역인권보장체계 등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제주학생인권조례>, 지역 내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의제를 논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적이며 역동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1



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67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84
3. 2021년 결산	395
4. 2021년 상담·진정 통계	396
5. 2021년 업무 총괄도	398
6. 2021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399
7. 2021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421
8. 위원회 간행물	422
9. 보도자료	425
10. 사진으로 보는 2021년	433
11. 위원회 소관 법규	441
12. 위원회 활동일지	44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1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2021.12.31. 기준)

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위원장 송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대북송금 특별검사 ·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유한) 한결 대표변호사 	대통령 지명 (2021. 9. 4.~ 2024. 9. 3.)
 상임위원 이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선출 (2019. 9. 19.~ 2022. 9. 18.)
 상임위원 박찬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권법학회 회장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지명 (2020. 1. 13.~ 2023. 1. 12.)
 상임위원 남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홍보·대외협력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 ·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 ·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국회 선출 (2021. 8. 6.~ 2024. 8. 5.)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p>인권위원 문 순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 참여연대 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대표이사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 국민재산도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주지 • 중앙승가대학교 외래교수 •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 	<p>대통령 지명 (2019. 7. 9.~ 2022. 7. 8.)</p>
 <p>인권위원 이 준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p>대법원장 지명 (2020. 2. 28.~ 2023. 2. 27.)</p>
 <p>인권위원 서 미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유달장애인지원센터 소장 • 보건복지부 성평등자문위원회 위원 • 전남장애인지원센터 상임대표 • 제9대 목포시의원 	<p>대통령 지명 (2020. 5. 1.~ 2023. 4. 30.)</p>
 <p>인권위원 석 원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p>국회 선출 (2020. 7. 3.~ 2023. 7. 2.)</p>
 <p>인권위원 윤 석 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회 위원 •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p>대법원장 지명 (2021. 2. 19. - 2024. 2. 18.)</p>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p>인권위원 김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지향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p>대법원장 지명 (2021. 8. 27.~ 2024. 8. 26.)</p>
 <p>인권위원 한석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국회 선출 (2021. 10. 15.~ 2024. 10. 14.)</p>

■ 역대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 •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2001. 11. 25. ~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12. 24. ~ 2005. 3. 22.
 제3대 위원장 조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5. 4. 4. ~ 2006. 10. 1.
 제4대 위원장 안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2006. 10. 30.~ 2009. 7. 5.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5~6대 위원장 현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 • 한양대학교 사무처장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 	2009. 7. 17.~ 2015. 8. 12. * 2012. 8. 13. 연임
 제7대 위원장 이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원장 •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려화실무그룹 의장 	2015. 8. 13.~ 2018. 9. 3.
 제8대 위원장 최영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8. 9. 4.~ 2021. 9. 3.



■ 역대 위원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 ~ 2004. 12. 23.
상임위원 유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7. 20.
상임위원 유시춘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 ~ 2004. 3. 12.
인권위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3. 2. 23.
인권위원 김덕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 ~ 2005. 3. 14.
인권위원 김오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01. 11. 25. ~ 2002. 11. 29.
인권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조미경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류국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2002. 12. 12. ~ 2003. 2. 23.
인권위원 이흥록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5. 1. ~ 2005. 4. 18.
인권위원 김만홍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8. 1. ~ 2006. 10. 24.
상임위원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4. 7. 23. ~ 2007. 9. 20.
상임위원 김호준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	2004. 12. 24. ~ 2008. 2. 3.
상임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나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12. 24. ~ 2006. 6. 28.
인권위원 이해학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 ~ 2006. 12. 31.
인권위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신혜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05. 3. 15. ~ 2008. 3. 19.
인권위원 원형은	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2005. 6. 1. ~ 2008. 9. 9.
인권위원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 8. 10. ~ 2012. 8. 9.
인권위원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06. 10. 25. ~ 2009. 12. 28.
인권위원 정재근	조계종 금선사 주지	2007. 2. 8. ~ 2010. 2. 7.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최경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2007. 9. 21. ~ 2010. 10. 10.
상임위원 유남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2007. 12. 24. ~ 2010. 11. 4.
인권위원 조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 12. 24. ~ 2010. 11. 15.
인권위원 황덕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7. 12. 24. ~ 2011. 1. 18.
상임위원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08. 2. 4. ~ 2010. 11. 4.
인권위원 최윤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08. 9. 4. ~ 2012. 1. 2.
인권위원 김양원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이사	2008. 9. 10. ~ 2011. 9. 27.
인권위원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 변호사	2009. 12. 29. ~ 2012. 6. 27.
인권위원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010. 2. 8. ~ 2016. 6. 15.
상임위원 장향숙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2010. 10. 11. ~ 2012. 1. 12.
상임위원 김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11. 15. ~ 2016. 11. 27.
인권위원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1. 19. ~ 2014. 1. 18.
상임위원 흥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2011. 2. 21. ~ 2014. 3. 6.
인권위원 김성영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1. 9. 28. ~ 2014. 11. 2.
인권위원 곽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12. 1. 3. ~ 2015. 2. 4.
상임위원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12. 3. 8. ~ 2015. 3. 15.
인권위원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2012. 8. 13. ~ 2016. 9. 22.
상임위원 유명하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	2014. 3. 7. ~ 2016. 1. 12.
인권위원 윤남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1. 19. ~ 2017. 1. 31.
인권위원 이선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4. 1. 19. ~ 2017. 3. 23.
인권위원 최이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	2014. 11. 3. ~ 2017. 12. 14.
상임위원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공동대표	2015. 3. 16. ~ 2018. 6. 21.
인권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015. 2. 5. ~ 2018. 8. 26.
인권위원 한위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8. 10. ~ 2018. 8. 26.
인권위원 장애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2016. 6. 16. ~ 2019. 6. 15.
상임위원 정상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6. 3. 22. ~ 2019. 9. 18.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최혜리	서울지방법원 판사	2016. 11. 28. ~ 2020. 1. 12.
인권위원 김기중	(사) 오픈넷 이사	2016. 9. 23. ~ 2020. 1. 12.
인권위원 배복주	(사) 장애여성공감 대표	2017. 12. 15. ~ 2020. 2. 7.
인권위원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변호사	2020. 1. 13. ~ 2020. 2. 23.
인권위원 한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2. 1. ~ 2020. 2. 27.
인권위원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2017. 6. 21. ~ 2020. 12. 10.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18. 6. 22. ~ 2021. 6. 21.
인권위원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8. 8. 27. ~ 2021. 8. 26.
인권위원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 8. 27. ~ 2021. 8. 26.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사무총장 송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총무 •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 재단법인 진실의힘 상임이사 	 기획조정관 이석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위원회 비서실장 •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정책교육국장 조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침해조사과장 • 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침해조사국장 안성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침해조사과장 •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차별시정국장 엄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변호사 • 프로보노 지원센터 센터장 	 교육협력심의관 김은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 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정책자문위원회 (2021. 6. 30.기준)

성명	주요경력
곽란주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전 인권위원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김상우	JTBC 대외협력본부장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현	큐렉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박영립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보훈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전 대법관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자), 전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 위원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준	경희대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윤범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장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조정연맹 이사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철순	(사)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홍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백미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명	주요경력
이 공 현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조 호 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전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Eunice K. Kim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이 태 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순 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서 창 록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임 을 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

■ 전문위원회

1) 북한인권전문위원 (위원장: 송두환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 엘 렌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 지 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
도 경 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 순 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 현 선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백 범 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서 창 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 지 현	국제엠네스티 사무처장
이 대 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	임 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장 미 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정 강 자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대표

2) 사회권전문위원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경력
사회권 일반	남 재 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찬 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황 인 철	녹색연합 기후행동팀 팀장



분야	성명	주요경력
노동권	박 제 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정 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상 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박 점 규	직장갑질 119 활동가
	이 종 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김 혜 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기업과 인권	권 혜 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센터 연구위원
건강권	나 백 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주 영 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로 본부장
	임 종 한	인하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주거권	이 동 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문화권	최 준 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3) 인권교육전문위원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 은 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김 은 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류 은 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
박 영 철	울산 인권운동연대 대표	박 형 철	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장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 병 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이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재	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주 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전 진 성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허 창 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담당

4) 국제인권전문위원 (위원장: 송두환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신혜수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전 유엔미안마인권특별보고관
정진성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훈	전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김기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임홍재	전 아세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서창록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5) 지역인권전문위원 (위원장: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명숙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채민	전북평화외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안은정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활 상임활동가
박영철	(사)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조성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상임활동가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6) 자유권제1전문위원 (위원장: 이상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한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경용	법무법인 L.K.B.&Partner 변호사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7) 자유권제2전문위원 (위원장: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 성 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윤 옥 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권 수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윤 종 철	노인전문용인병원 진료부장(정신과)
김 미 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이 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 사 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 상 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 정 란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은 주	인천사랑요양원 원장
김 철 효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현 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김 희 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 형 길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남 철 관	(사)나눔과미래 국장	정 원 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 호 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조 문 기	송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 영 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주 영 수	한림대학교의학전문대 교수(예방의학)
박 지 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 해 경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정 화	열린여성센터	한 명 섭	비전트레이닝센터
우 삼 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허 용 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아동인권전문위원 (위원장: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 고 은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김 용 옥	법무법인 IB 변호사	이 배 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손 지 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이 승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제연구실장
강 미 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강 화 천	경기도교육청 안양중학교 교장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 교수
김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 지 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9) 차별시정전문위원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 엘 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 상 옥	법무법인 올촌 변호사
전 윤 구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 주 영	민주노총법률원 노무사
심 재 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 형 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윤 애 립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 부 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 상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 준 식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황 수 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 속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임 윤 옥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
구 미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 상 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장애인인권전문위원(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경력
장애차별	김 정 열	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제 철 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종 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김 현 아	(주)마크로젠 변호사
	조 원 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 영 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 효 진	장애인과함께하는모두의포럼 상임대표
	윤 영 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김 동 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오 욱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애시설	이 용 석	(사)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김 귀 자	강남세움복지관 관장
	김 명 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임 소 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고 명 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은 종 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문 용 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분야	성명	주요경력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복 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정신장애	조 성 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홍 선 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 진 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해 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백 재 중	신천연합병원장
	유 시 완	한국정신장애인지리생활센터 소장
	전 준 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박 재 우	서초열린세상 시설장
	하 경 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 원 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조정위원회

1) 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 명 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류 혜 정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김 희 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2) 성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백 미 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 기 중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 현 아	법무법인 GL변호사		

3) 장애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장 명 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인권위원장	이 상 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박 승 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조 원 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4) 인권침해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 형 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름	이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태 원 우	법무법인(유)로고스		

■ 행정심판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경력
당연직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상 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 찬 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 규 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석 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조 영 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안 성 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염 형 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 은 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
위촉직	황 성 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선 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 희 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재 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박 진 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영 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 경 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김 종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속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오 선 희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최 윤 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전원위원회

-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 개최

〈 2021년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2	55	18	1	36

〈 전원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

회차	의안명	구분
2021-0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의 건	의결
2021-0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20-직권-0001600)	의결
2021-03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채택 및 활용 권고의 건	의결
2021-04	2020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 의결의 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결
2021-05	2020년 법령·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보고
	2020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현황 보고	보고
	2020년 진정 상담 민원 기초조사 및 조정 현황 보고	보고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20-진정-0211800)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의 건	의결
2021-06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관련 아동 긴급재난지원금 이주아동 지급 배제(20-진정-0685301)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영·유아용 상품의 색깔별 성별 표기로 인한 차별 등(20-진정-0004000)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1-07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20-진정-0211800)	의결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권고 불수용 보고(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20-진정-0052500)	보고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08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2021년 10월 등급심사 제출자료(안)의 건	의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2021-09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644000)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의 건	의결
2021-10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처분(20-진정-0056500)	보고
	2022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의 건	의결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관련 아동 긴급재난지원금 이주아동 지급 배제(20-진정-0685301)	의결
2021-11	성별을 이유로 한 미술학원 이용 차별(19-진정-0587900)	의결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권고 수용 여부 보고(19-진정-0242600)	보고
2021-12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 수용 보고	보고
	「평등법」 발의 경과보고 및 관련 성명의 건	의결
2021-13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결
	권고 수용 여부 보고-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권고수용 보고(20-직권-0001600)	보고
2021-14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1-15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 집회 시위 자유 제한 관련 긴급구제 신청의 건 (21-긴급-0002200)	의결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19-진정-0786400)	의결
	권고 수용 여부 보고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보고
	침몰 선박에 대한 심해 수색 미추진에 따른 인권침해(20-진정-0197500)	의결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회차	의안명	구분
2021-16	2021년 상반기 진정/민원/상담/기초조사 및 조정 현황 보고	보고
	2021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 현황 보고	보고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17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권고 수용 여부 보고(20-진정-0211800)	보고
	2021년 상반기 법령·정책 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보고
	교사에 대한 육아시간 사용 불허(21-진정-0314700)	의결
2021-1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19	2022년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기본계획(안)	보고
2021-2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의 건	의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	의결
	권고 수용 여부 보고-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	보고
2021-21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제청(안)	심의
	2022년 위원회 업무계획 의결의 건	의결
2021-22	언론기사에서 장애인비하 용어 사용(20-진정-0446600)	의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등 침해(20-진정-0715700)	의결
	2022년 위원회 업무계획 의결의 건(재상정)	의결

나.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 4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3명)
-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 2021년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43	118	51	16	51

〈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

회차	의안명	구분
2021-0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의 건	심의
	202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과제(1차) 채택의 건	의결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국회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	의결
2021-02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국회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	의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21-03	2021년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검토 화신의 건	의결
2021-04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 건강권 침해 방지 등(긴급구제)(21-긴급-0000200)	의결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의 건(재상정)	심의
2021-05	권고 수용 보고-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보고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감치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의 건	의결
	광역시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회차	의안명	구분
2021-06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의 건(3회 상정)	의결
	2020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심의의 건	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	심의
	「인신매매, 착취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의 건	의결
2021-07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노인의 생애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21-08	각급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조치 선진 사례 현황 조사 및 제도 연구 보고의 건	보고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2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위한 선진사례연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방안 연구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21-09	2021년 갯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1년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 의결의 건	의결
2021-10	권고 수용 보고-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보고
	권고 수용 보고-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	보고
202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회신의 건	의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의견회신의 건	의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2021년 10월 등급심사 제출자료(안)의 건	심의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2021-12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과제(2차) 채택의 건	의결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심의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20년도 연간보고서(안) 보고의 건	보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기본계획 보고의 건	보고

회차	의안명	구분
2021-13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 수용 보고(20-진정-0385100)	보고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 수용 보고(20-긴급-0001600)	보고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 수용 보고(20-긴급-0001900)	보고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권고 수용 보고	보고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보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재)	의결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2020년 하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보고
2021-15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2021-1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2022년도 실태조사(특정과제) 추진 방안 의결의 건	의결
2021-18	2022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의 건	심의
	2022년도 실태조사(특정과제) 추진 방안 의결의 건	의결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의 건	보고
2021-19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의 건	보고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의 건	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공소장에 실효된 전과 기재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1-20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21-21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21-21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심의



회차	의안명	구분
2021-22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권고 수용의 건	보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의 건	보고
2021-23	강제퇴거,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1-24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보고	보고
	경찰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1-25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 집회 시위 자유 제한 관련 긴급구제 신청의 건 (21-긴급-0002200)	의결
2021-26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국회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	의결
2021-27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	보고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보고의 건	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	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28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등 직권조사(안)	의결
2021-29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	의결
2021-30	2021년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	의결
	2021년 서울특별시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개선 권고 수용보고의 건	보고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심의
2021-31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	심의
2021-3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1-33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보고	보고
2021-34	2021년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2021년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 및 법령 등 제도개선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회차	의안명	구분
2021-35	장애인거주시설 확대 피해자 긴급구제의 건(21-긴급-0002700)	의결
2021-36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건	심의
	2022년 국가인권보고서 기본계획(안)	보고
2021-37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	보고
	빙상종목 운동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21-3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의결
2021-39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의결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년 상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보고
	2022년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의 건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21-40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의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 울산광역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결
2021-41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의 건	의결
2021-42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의결
	2021년도 하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의 건	의결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	심의
2021-43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	의결



다. 소위원회

- 3~5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
-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별 담당 분야 〉

소위원회	담당분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검찰·경찰·국정원·국회·법원 관련 침해사건 및 직권조사, 군 관련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경찰 및 군 관련 방문조사
침해구제제2위원회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제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사건 및 직권조사, 방문조사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19개 차별사유 중 장애를 제외한 사유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 직권·방문조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침해사건, 직권·방문조사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 관련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장애사건 제외),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등 진정사건, 직권·방문조사

〈 2021년 소위원회별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구분	개회횟수	안건 수			
		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심의안건
합계	73	4,331	3,596	735	-
침해구제제1위원회	15	1,022	899	123	-
침해구제제2위원회	21	1,493	1,318	175	-
차별시정위원회	12	595	469	126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13	907	681	226	-
아동권리위원회	12	314	229	85	-

라. 조정위원회

- 3명으로 구성(인권위원인 조정위원장 1명, 외부 조정위원* 2명)

* 조정위원은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위촉

〈 2021년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회, 건)

합계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	-	-	-	-	-	-	-	-	-

* 2021년 조정 신청 건수는 14건이나, 피신청인 불참으로 모두 각하되어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함

마.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주요업무 보고 • 인권교육원 설립 현황

* 구성 : 31명(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북한인권 등 다양한 분야)

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주요업무 보고 • 인권교육원 설립 현황

* 구성 : 100명(중앙행정기관 44명, 지방자치단체 17명, 교육청 17명, 민간위원 22명)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정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도 회의 소집 가능



아. 전문위원회

구분	개회 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북한인권전문위원회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위원회 설치 배경 및 경과 보고 인권 NAP 권고를 위한 북한인권 관련 연구용역 의견 수렴 제4차 인권NAP 수립 관련 북한인권 정책 분석 및 추진방향 검토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관련 심포지엄 주제 검토 2021년 위원회 북한인권 업무계획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관련 심포지엄 개최 계획
사회권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의 사회권 쟁점사항 2022년도 사회인권과 업무계획(안) 검토
인권교육전문위원회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인권교육부서 2022년 업무계획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현황
국제인권전문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현안 대응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 등급심사 대응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자료 등재를 위한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현황
지역인권전문위원회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사무소 예산 및 조직 현황과 대안 지역인권사회와의 협력 방안 인권사무소의 현황과 과제 지역인권 관련 인권증진행동전략 구체화 방안 인권사무소의 위상과 역할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개선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모니터링 사업
아동인권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정권 증진 방안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추진 과제, 향후 전문위원회 논의 주제 등
차별시정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익명 또는 가명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출산 후 계약 거부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병원 내 청소년 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 등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실 및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기면증에 대한 장애 정도 판단기준의 차별 여부 개인 SNS를 통한 장애인 비하 발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인정 여부

3. 2021년 결산

가. 세입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총계	102	28	29	-	-	
기타 경상이전수입	95	19	19	-	-	
기타 잡수입	1	-	-	-	-	
변상금, 위약금	5	8	8	-	-	
과태료	-	-	1	-	-	'20미수납분 수납
기타 재산수입	1	1	1	-	-	

나. 세출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전년이월포함)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38,248	35,982	406	1,860	
인 건 비	18,973	18,354	-	619	
기 본 경 비	8,838	8,161	372	305	
주요사업비	10,437	9,467	34	936	
일반 · 지방 행정 분야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473	1,452	-	21
	① 인권의식 향상	1,138	1,128	-	10
	② 지역인권문화 확산	335	325	-	11
	인권교육 활성화	1,701	1,629	-	72
	③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701	1,629	-	7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2,350	2,044	34	273
	④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54	151	-	3
	⑤ 취약분야 인권개선	1,287	1,162	-	126
	⑥ 장애인 인권증진	615	473	34	109
	⑦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294	258	-	36
	인권제도 선진화	1,542	1,333	-	209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380	1,247	-	133
	⑨ 북한인권 개선	162	86	-	76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577	1,296	-	281
	⑩ 국제교류 협력	1,288	1,012	-	276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289	284	-	5
	정보화(정보화)	1,794	1,713	-	81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47	1,026	-	21	
⑬ e-진정 시스템 구축운영	747	687	-	60	



4. 2021년 상담·진정 통계

가.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 / 안내	합계
누계	161,013	466,921	543,467	1,171,401
2021	10,029	36,343	27,136	73,508
2020	9,016	28,214	31,813	69,043
2019	9,768	33,440	32,186	75,394
2018	9,288	32,278	34,299	75,865
2017	12,336	36,370	35,164	83,870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21. 12. 31.까지 합계이다.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 상담은 면진진정 상담종결 건수를 포함한다.

나. 2021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종 해결				
합계	10,029	9,287	1,172	1	505	-	58	608	5,075	44	2,924	72
침해	7,430	6,839	695	-	344	-	28	323	3,799	34	2,257	54
차별	2,559	2,410	477	1	161	-	30	285	1,241	8	666	18
기타	40	38	-	-	-	-	-	-	35	2	1	-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다.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법률 구조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161,013	156,816	23,428	169	5,898	20	73	2,736	14,532	88,365	1,762	42,387	874
2021	10,029	9,287	1,172	1	504	1	-	58	608	5,075	44	2,924	72
2020	9,016	9,272	1,612	1	583	-	1	69	958	5,248	49	2,344	19
2019	9,768	9,147	1,045	5	492	-	1	63	484	5,521	131	2,447	3
2018	9,288	10,188	1,614	6	547	-	7	141	913	5,748	78	2,729	19
2017	12,336	11,012	1,601	9	357	-	19	88	1,128	6,571	104	2,709	27
2016	10,647	10,869	1,462	21	249	1	18	158	1,015	6,405	95	2,875	32
2015	10,695	10,894	1,287	8	173	-	1	314	791	6,245	87	3,143	132
2014	10,923	10,331	1,217	23	142	1	1	329	721	6,013	56	2,978	67
2013	10,056	10,427	1,380	2	217	2	2	353	804	5,893	29	3,086	39
2012	9,582	9,580	1,212	3	329	2	2	145	731	5,392	24	2,906	46
2011	7,357	7,085	1,231	11	321	2	2	196	699	3,436	40	2,356	22
2010	9,168	8,392	1,527	9	305	1	1	224	987	4,476	153	2,149	87
2009	6,985	6,788	1,621	4	320	-	2	208	1,087	3,046	88	1,961	72
2008	6,309	6,466	1,556	12	335	1	2	75	1,131	3,003	113	1,729	65
2007	6,274	6,064	1,730	13	276	2	3	98	1,338	2,892	138	1,262	42
2006	4,187	4,206	1,214	17	281	1	10	46	859	1,836	81	1,049	26
2005	5,617	5,350	595	6	224	2	-	85	278	3,142	155	1,408	50
2004	5,368	5,804	181	6	112	4	1	58	-	4,028	154	1,387	54
2003	3,815	3,797	130	9	95	-	-	26	-	2,766	116	785	-
2002	2,790	1,856	40	2	36	-	-	2	-	1,629	27	160	-
2001	803	1	1	1	-	-	-	-	-	-	-	-	-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한다.



5. 2021년 업무 총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난 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⑦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⑤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6. 2021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정책권고

연번	권고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직권-0001200)	1. 19.	보건복지부 장관	수용
2	교육전문직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 미인정 관련 제도 개선 권고(20-진정-0561900)	1. 22.	교육부 장관, 9개 시도교육감	수용
3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채택 및 활용 권고	2. 8.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검토중
4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	2. 18.	○○○○경기연맹 회장, 교육부 장관, 22개 지방자치단체장	일부 수용
5	2021년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3. 11.	서울특별시청	수용
6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 가입 불허(20-진정-0732400)	3. 12.	보건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	검토중
7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	3. 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일부 수용
8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4. 8.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리센터 이사장, ○○○○○체육회장	수용
9	2020년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5. 12.	법무부 장관	검토중
10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6. 10.	법무부 장관	검토중
11	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20-진정-0182300 등 2건 병합)	6. 21.	○○○○공사 사장	수용
12	2020년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방문조사에 따른 감염병 시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	6. 21.	보건복지부 장관	검토중



연번	권고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3	대학교의 부당한 학칙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386000)	7. 2.	○○과학기술원장, ○○대학교 총장, ○○대학교 총장, ○○대학교 총장	검토중
14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7. 12.	법무부 장관	검토중
15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7. 26.	해양수산부 장관	검토중
16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8. 19.	경찰청장	수용
17	2021년 갯생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10. 7.	법무부 장관, 한국○○○○○○공단 이사장, 사단법인○○○ 이사장, 사단법인○○○○ 이사장, 사단법인○○○○○○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이사장	검토중
18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1. 18.	보건복지부 장관	검토중
19	국가기관의 검사 신규임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21-진정-0192600)	11. 19.	법무부 장관	검토중
20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12. 6.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검토중
21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교육보조인력 미제공 등(21-진정-0172200)	12. 16.	경기도교육감	검토중
22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표명(19-진정-0871500 등)	12. 23.	국회의장	검토중
23	트랜스젠더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12. 23.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통계청장	검토중
24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12. 23.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 대한○○회장, 대한○○○○회장	검토중
25	2021년 해양경찰청 유치장 방문조사	12. 28.	해양경찰청장	검토중
26	2021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12. 28.	국방부 장관	검토중

■ 의견표명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법원 집행과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강압 (20-진정-0423000 등 2건 병합)	1. 19.	법원행정처장
2	학교폭력전담교사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749400)	1. 19.	○○중학교장
3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검토 회신	1. 21.	보건복지부 장관
4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20-직권-0001600)	1. 25.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5	정부의 KAL기 납북자 송환 조치 관련 인권침해 (18-진정-0877500)	1. 27.	통일부 장관
6	지자체 인권보호관의 조사과정에서의 괴롭힘 등 (20-진정-0463400)	1. 27.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7	구금시설 화장실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의견표명 (20-진정-0085700)	2. 16.	○○교도소장
8	「인신매매, 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 18.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9	지적장애인에 대한 처분통지 등 미이행(19-진정-0604800)	2. 18.	검찰총장
10	코로나19 관련 독신자 숙소 거주 간부에 대한 부당한 강제 퇴거 조치(20-진정-0832800 등 2건 병합)	2. 24.	육군참모총장
11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20-진정-0635300)	3. 17.	인사혁신처장
12	영·유아용품의 색깔 및 역할의 성별 구분으로 인한 차별 (20-진정-0004000 등 8건 병합)	3. 22.	8개 회사 대표이사
13	유치원 유아모집 시 사회적 약자 배제(20-진정-0814600)	3. 23.	○○광역시교육감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 회신	3. 25.	법무부 장관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의견 회신	3. 25.	보건복지부 장관
16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3. 25.	여성가족부 장관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7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인대회 개최에 따른 성차별 (19-진정-0447500)	3. 25.	○○광역시장, ○○광역시동구청장, ○○북도지사
18	한00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19-진정-0798800)	4. 1.	외교부 장관
19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4. 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20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4. 12.	법무부 장관
21	시각장애인 버스승차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19-진정-051900 등 3건 병합)	4. 16.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도지사
22	청와대 관람 시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19-진정-0290200)	4. 16.	대통령비서실장
23	유치원에서 아동의 정서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의견표명(20-진정-0511500)	4. 16.	○○초등학교장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2조 동의입원에 대한 의견표명(20-진정-0676300)	4. 16.	보건복지부 장관
2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4. 22.	경찰청장
26	0000재단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19-진정-0456600)	4. 23.	○○○○재단 사무총장
27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호봉산정 시 기업 규모를 이유로 민간 경력 불인정(20-진정-0458300)	4. 23.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4.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9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은행창구업무 이용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20-진정-0251200)	5. 20.	○○은행장, ○○은행장
30	성별을 이유로 한 미술학원 이용 차별(19-진정-0587900)	5. 24.	○○○교육 원장
31	초등학교 무상 우유 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21-진정-0148400)	5. 25.	○○남도지사
32	현역 재임용 군인에 대한 군번 표기로 인한 차별 (21-진정-0000200)	5. 27.	국방부 장관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33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6. 21.	법무부 장관
34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20-진정-0246500 등 2건 병합)	6. 2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5	법원의 결정문 이유 기재 생략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004700)	6. 22.	대법원장
36	보험사 지점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등(19-진정-0735700)	6. 29.	○○생명 대표이사
37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지 징벌(21-진정-0108800)	7. 2.	법무부 장관
38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 (19-진정-0696700)	7. 13.	○○초등학교장
39	방송사의 영화 방영 관련 성소수자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21-진정-0098000)	7. 22.	○○방송 대표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40	공직 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21-진정-0140600)	7. 22.	○○○○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4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21-진정-0178600)	7. 22.	○○○○시장
42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가불허 및 연가처리 (21-진정-0546400)	8. 19.	병무청장
43	지체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출장비 미지급으로 인한 차별 (19-진정-0712000)	8. 20.	보건복지부 장관, ○○남도지사
44	침몰 선박에 대한 추가 심해수색 미추진에 따른 인권침해 (20-진정-0197500)	8. 23.	국무총리
45	교도소의 부당한 징벌(21-진정-0425300)	8. 27.	법무부 장관
46	지방의회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의견표명 (21-진정-0016500)	9. 2.	○○○○○○도의회 의장
47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등 (21-진정-0426300)	9. 2.	○○광역시 ○구청장
48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혐의자 등록 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21-진정-0058800)	9. 3.	보건복지부 장관
49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9. 13.	국회의장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50	부대장의 표적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473700 등)	9. 17.	국방부 장관
51	시의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851000)	9. 17.	○○시의회 의장
52	교사에 대한 육아시간 사용 불허 관련 의견표명 (21-진정-0314700)	9. 27.	교육부 장관
53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단일임금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20-진정-0525400)	10. 5.	서울특별시장
54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에 대한 의견표명(21-진정-0164200)	10. 7.	대통령비서실장
55	영화상영 시 장애인에 대한 화면해설 및 자막 미제공에 대한 의 견표명(19-진정-0555800 등)	10. 7.	○○○○○ 대표, ○○○○○○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6	직장 내 괴롭힘 시정권고 불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21-진정-0429900)	10. 8.	○○○도지사, ○○군수
57	사건 처분결과 통지로 인한 인권침해(20-진정-0813900)	10. 12.	법무부 장관
58	교도관의 외부 진료 강요 및 부당처우(20-진정-0267000)	11. 2.	○○교도소장
59	위탁가정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촬영 등(21-진정-0563900)	11. 2.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회회장
60	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요구(21-진정-0723300)	11. 2.	경찰청장
61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20-진정-0056600 등)	11.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62	국립대학의 성차별적 강의 콘텐츠에 대한 의견표명 (20-진정-0324100)	11. 9.	○○○○○○대학교 총장
63	재판 중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의 스마트접견 제한 (20-진정-0604900)	11. 19.	
64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1. 22.	국회의장
6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21-진정-0429800)	11. 25.	국방부 장관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66	경찰조사 시 외국인의 통역받을 권리 침해(20-진정-0273700)	11. 25.	경찰청장
6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1. 25.	법무부 장관
68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미보장(21-진정-0391000 등)	11. 30.	교육부 장관, 6개 시도 교육감
69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관련 의견표명(21-진정-0714500)	11. 30.	보건복지부 장관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2. 2.	국회의장
71	교도소의 재판 방해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361700)	12. 17.	법무부 장관
72	지자체의 용역 전환 직종 공무원에 대한 임금차별 (21-진정-0316800)	12. 23.	○○광역시 ○○구청장
7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21-진정-0668500 등)	12. 23.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74	언론기사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20-진정-0446600)	12. 27.	○○일보 대표
75	법원과 검찰의 범조기자단 외 언론사에 대한 취재권 침해 (20-진정-0891600)	12. 28.	○○○○법원장, ○○○○○○청검사장
76	검사의 변호인 참여 불허 등(21-진정-0312200)	12. 28.	○○지방검찰청장



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검찰·경찰·법원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인신매매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 조사 등	20-진정-0219400	2. 24.	검토중
2	경찰의 신분증 미제시 등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20-진정-0615400	2. 24.	수용
3	경찰관의 부당한 수색 및 영상 삭제 등	19-진정-0980500	2. 24.	수용
4	경찰의 부당한 체포 및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21-진재-0000700	3. 12.	수용
5	과도한 경찰 장구 사용	20-진정-0378400 등 2건 병합	4. 1.	수용
6	경찰의 심야 조사 등에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437700	4. 1.	수용
7	경찰의 부당한 신상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671200	4. 1.	수용
8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19-진정-0697700	4. 1.	수용
9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 관련 경찰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20-진정-0861400	4. 1.	수용
10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진정-0842800	4. 27.	수용
11	경찰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9-진정-0939100	4. 27.	수용
12	경찰의 경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신분증 미제시	20-진정-0193400	4. 27.	수용
13	경찰의 112 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	20-진정-0229300	4. 27.	수용
14	경찰관의 연주 방해 및 신분증 미제시	20-진정-0229600	4. 27.	검토중
15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 등	20-진정-0434400	4. 27.	검토중
16	검사 조사 시 수갑 및 포승 사용 등	21-진정-0138300	4. 27.	수용
17	경찰의 부당한 장기 내사 등	19-진정-0821200	5. 27.	수용
18	체온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뒷수갑 사용	20-진정-0250200	5. 27.	수용
19	범죄경력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578400	5. 27.	수용
20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부당한 무고죄 언급	20-진정-0861200	5. 27.	수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1	경찰의 1인 시위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	20-진정-0662701 등 6건 병합	6. 22.	불수용
22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684300	6. 22.	수용
23	해양경찰청 수사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20500	6. 22.	일부 수용
24	유치장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20-진정-0429300	7. 22.	수용
25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권리 미고지 등	20-진정-0887200 등 5건 병합	7. 22.	수용
26	경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유 미고지	21-진정-0122500	7. 22.	검토중
27	경찰의 1인 시위자에 대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수갑사용 등	21-진정-0325700	7. 22.	수용
28	경찰의 부당한 사건처리결과통지 미비 등	20-진정-0833800	8. 19.	수용
29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007600	8. 19.	수용
30	경찰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21-진정-0452700	8. 19.	검토중
31	경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수사 사실 유출	21-진정-0462000	8. 19.	검토중
32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불응	21-진정-0088000	8. 19.	검토중
33	검찰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재-0000300	8. 27.	수용
34	경찰의 농성인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진정-0722900 등 2건 병합	9. 17.	수용
35	경찰의 부당한 응급입원 등	21-진정-0348100	9. 17.	검토중
36	경찰의 범죄사실 고지 미흡으로 인한 피의자 방어권 침해	20-진정-0695500	10. 12.	검토중
37	검찰의 불법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20-진정-0871500	10. 12.	검토중
38	법원 집행관의 사전고지 없는 현관 개방 및 다수의 개인정보 노출 등	20-진정-0487300	11. 25.	검토중
39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속옷차림 연행 등	21-진정-0179600	12. 28.	검토중
40	경찰청의 백신 접종 강제 및 부당한 개인정보 취합	21-진정-0305900	12. 28.	검토중



■ 군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진정-0609200	1. 29.	수용
2	코로나19 관련한 과도한 휴가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80300	1. 29.	수용
3	공군의 섹약자에 대한 지원 차별	21-진정-0008200	4. 1.	수용
4	군 지휘관의 병사에 대한 위치 추적 앱 설치 지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	21-진정-0068800	5. 27.	수용
5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 교제 금지 및 중징계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114900	5. 27.	수용
6	군 복무 중 사망 병사 사인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	21-진정-0267900	6. 22.	수용
7	군의 조종 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시술자 지원 배제 등	21-진정-0349600	7. 22.	수용
8	부사관에 대한 국외훈련 등 선발 차별	21-진정-0035600	9. 6.	검토중
9	육군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 시 남성 배제로 인한 차별	21-진정-0469300	9. 17.	수용
10	군대 행정보급관의 행정병에 대한 욕설 등 괴롭힘	21-진정-0576500	9. 17.	수용
11	군의 강제추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부당 조사 등	21-진정-0408800	11. 2.	검토중
12	군의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신원정보 조회	21-진정-0474400	11. 25.	검토중

■ 구금시설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구치소의 코로나 유증상자와의 혼거 수용 및 치과 진료 지연	21-진정-0072200	3. 31.	검토중
2	구치소장의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미통지	20-진정-0914100	3. 31.	검토중
3	교도소의 부당한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148200 등 2건 병합	8. 10.	수용
4	수형자에 대한 방송인터뷰 불허	20-진정-0870600	9. 17.	수용
5	구치소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21-진정-0037700	9. 17.	수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6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21-진정-0451000 등 2건 병합	10. 8.	검토중
7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20-진정-0744200	10. 22.	검토중
8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	20-진정-0609301	11. 5.	수용
9	구치소장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영상계호	21-진정-0205000	12. 3.	검토중

■ 다수인보호시설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20-진정-0382200	1. 20.	수용
2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	20-진정-0452000	2. 18.	검토중
3	본인 의사에 반하는 동의입원 등의 인권침해	20-진정-0495100	2. 18.	수용
4	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등	20-진정-0667800	2. 18.	수용
5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이동 동선 신고 요구	20-진정-0910600	3. 31.	수용
6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602400	4. 16.	수용
7	정신병원의 부당한 통신 제한 등	20-진정-0707800	4. 16.	수용
8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동의입원 등	20-진정-0831500	4. 16.	수용
9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 처리 등	20-진정-0839400	5. 17.	수용
10	물건을 훔친 이유로 부당한 장시간 격리	21-진정-0082400	5. 17.	검토중
1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폭행 및 방임	21-진정-0113600 등 3건 병합	5. 17.	검토중
12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등	21-진정-0243700	5. 17.	-
13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폭행 등	20-진정-0449100	6. 21.	수용
14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16400	6. 21.	수용
15	정신병원장의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 강박 등	20-진정-0867100	6. 21.	수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6	정신병원 입원환자 청소 강요 등	20-진정-0878800	6. 21.	수용
17	중증 지적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1-진정-0072700	6. 21.	검토중
18	노인요양시설장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0-진정-0496300	7. 2.	수용
19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20-진정-0468200	7. 19.	수용
21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CCTV 촬영 등	21-진정-0192300	7. 19.	수용
2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및 상해 등 2건 병합	21-직권-0000400 등 2건 병합	7. 19.	수용
23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부당한 징계 조치 등	20-진정-0666100	8. 20.	일부수용
24	정신병원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 처리 및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21-진정-0044901	8. 20.	수용
25	정신병원 관리사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315500	10. 7.	수용
26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 부과	20-진정-0852400	11. 3.	수용
27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기간 중 거주인에 대한 외부교통권 제한 등	21-진정-0161400	11. 3.	검토중
28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퇴원절차 위반 등의 인권침해	21-진정-0486700	11. 24.	검토중
29	응급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21-진정-0327800	12. 16.	검토중
30	정신병원 화장실의 잠금장치 미설치 등	21-진정-0594200	12. 16.	검토중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코로나 자가격리지침 위반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	20-진정-0458000	1. 27.	수용
2	군수의 부당한 지시 등	20-진정-0537700	1. 27.	수용
3	한○○ 회원들에 대한 여론발급 제한 및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19-진정-0798800	4. 27.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4	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	20-진정-0687900 등 3건 병합	5. 12.	수용
5	산재 치료 중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20-진정-0855100	5. 12.	수용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21-진정-0262600	7. 2.	검토중
7	국가기관의 소청 심사 결과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진정-0726700	8. 27.	수용
8	공무직에 대한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	21-진정-0190300	8. 27.	수용
9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정보 유출	21-진정-0318400	8. 27.	수용
10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33300	9. 17.	수용
11	직업훈련원 사감의 훈련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21-진정-0417900	10. 22.	검토중
12	근로감독관의 피조사자에 대한 과도한 수갑 사용 등	21-진정-0602600	10. 22.	수용
13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10900	12. 3.	검토중
14	지방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20-진정-0622500	12. 17.	검토중
1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20-진정-0715700	12. 27.	검토중

■ 각급 학교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20-진정-0270400	1. 27.	수용
2	대학교수의 성적 점수 게재에 따른 인권침해	19-진정-0955900 등 2건 병합	1. 27.	수용
3	사립대학 인권센터의 불복절차 미고지 등	20-진정-0669000	2. 16.	검토중
4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20-진정-0843400	2. 23.	수용
5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20-진정-0211800	4. 12.	일부 수용
6	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진정-0909000	4. 29.	수용
7	경찰관의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수갑 사용 등	20-진정-0678000	4. 29.	수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8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휴대전화, 복장 등의 과도한 제한	21-진정-0136000	4. 29.	검토중
9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 배제	20-진정-0685301 등 41건 병합	5. 24.	검토중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보호아동의 아동학대 주장에 대한 과잉대응	20-진정-0648500	5. 25.	수용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당한 분리조치 등	20-진정-0873000	5. 25.	수용
12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131200	5. 25.	수용
13	학교의 복직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70900	6. 4.	검토중
14	교사의 공익신고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20-진정-0843400	6. 15.	수용
15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21-진정-0257700	6. 15.	수용
16	고등학교의 우열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평등권 침해	21-진정-0185200	7. 13.	검토중
17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등	21-진정-0273300	7. 13.	검토중
18	학교의 학생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20-진정-0622800	9. 3.	수용
19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조치 미흡 등	20-진정-0867400	9. 3.	검토중
20	학생에 대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340400 등 32건 병합	9. 3.	검토중
21	오토바이 통학 금지로 인한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21-진정-0401100	9. 3.	검토중
22	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지도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445600	9. 3.	수용
23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21-진정-0504200	9. 3.	검토중
24	사립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및 외출 제한, 서약서 제출 강요	21-진정-0252700	9. 17.	검토중
25	중학교의 교원 다면평가 시 휴가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등	21-진정-0513400	10. 8.	검토중
26	특수목적고등학교 생활관의 과도한 규율로 인한 수면 부족 등	21-진정-0504300	11. 2.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7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1-진정-0484900	11. 2.	검토중
28	대학총장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복직 거부	20-진정-0552100	11. 15.	검토중
29	대학교의 질병 휴학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기록 요구	21-진정-0338700	11. 19.	검토중
30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등	21-진정-0793900	11. 30.	수용
31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21-진정-0660800	12. 3.	검토중
32	교장의 교사에 대한 괴롭힘	21-진정-0487600	12. 17.	수용
33	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및 사복 착용 제한	21-진정-0744300	12. 21.	수용

■ 스포츠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부실한 보호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528600	1. 19.	수용
2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251600	1. 19.	일부수용
3	컬링 지도자 간 성희롱 및 소속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사후조치 등	19-진정-0236900	5. 20.	검토중
4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20-진정-0906000	5. 25.	검토중
5	중학교 역도부 감독의 학생선수 폭행	20-진정-0528200	5. 25.	수용
6	0000대학교의 집단행위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	21-진정-0319700	10. 8.	검토중
7	대학 스포츠 지도자 채용 관련 민원 정보 유출	21-진정-0426700	12. 17.	검토중



다. 차별행위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성차별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선정 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19-진정-0643100	4. 23.	수용
2	학교장의 여성 교사에 대한 성차별	20-진정-0303100	6. 29.	검토중
3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제한으로 인한 성차별	20-진정-0332900	9. 2.	수용
4	공기업 직원채용 면접 시 여성지원자에 대한 차별	20-진정-0880000	11. 9.	검토중

■ 성희롱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보건소 동료직원에게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19-진정-0718100	1. 22.	일부수용
2	해외기업 대표이사의 주재 직원에 대한 성희롱	18-진정-0835200	3. 25.	일부수용
3	스타트업 회사 대표의 성희롱 등	19-진정-0841300 등 2건병합	3. 25.	검토중
4	시의회 의원의 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20-진정-0055100	3. 25.	일부수용
5	회사 대표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20-진정-0441800	4. 23.	수용
6	사단법인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19-진정-0079500	6. 29.	검토중
7	복지관 직원의 소문 유포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19-진정-0786000	6. 29.	수용
8	회사 대표의 상습적인 성희롱	20-진정-0417700	6. 29.	수용
9	회사 대표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20-진정-0266000	9. 2.	검토중

■ 장애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장애를 이유로 한 전입학 불허	20-진정-0383800	2. 18.	검토중
2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폭력 등	20-진정-0095300	3. 17.	검토중
3	투표 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불허	20-진정-0257300	3. 17.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4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20-진정-0636500 등 2건 병합	3. 17.	검토중
5	대출 시 지체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20-진정-0720900	3. 17.	수용
6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20-진정-0582200	3. 26.	검토중
7	검사의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19-진정-0735500	4. 16.	수용
8	방송사 아이폰 앱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20-진정-0063100	4. 16.	수용
9	숙박업체의 청각장애인 이용 거부	20-진정-0509700	4. 16.	수용
10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저상버스 미운행 등 편의제공 미흡	21-진정-0012900	4. 16.	일부수용
11	디지털자료 한자음 오류로 인한 정보접근권 제한	19-진정-0219700	5. 17.	수용
12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9-진정-0220900	5. 17.	검토중
13	구급시설 수용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20-진정-0405400 등 2건 병합	5. 17.	검토중
14	장애인 주차구역 지하주차장 미설치	20-진정-0827700	5. 17.	검토중
15	국회의원들의 조현병 혐오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훼손	21-진정-0065800 등 2건 병합	5. 17.	검토중
16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시설 강습 제한	19-진정-0859200	6. 21.	수용
17	기술사 면접시험 응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20-진정-0742700	6. 21.	수용
18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자격시험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차별	21-진정-0021800	6. 21.	검토중
1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적장애 거주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21-진정-0031800	7. 19.	수용
20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21-진정-0045900	7. 19.	불수용
21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불허	20-진정-0197900	8. 20.	수용
22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서비스 미제공에 의한 차별	21-진정-0126500	8. 20.	검토중
23	공무원 상사에 의한 정신장애인 직원 괴롭힘 등	21-진정-0286500	8. 20.	검토중
24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 제한 차별	20-진정-0451200	10. 7.	검토중
25	특수학급 교사의 부적절한 등교수업 고지로 인한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	21-진정-0128800	10. 7.	검토중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26	프로야구 예매 및 관람 시 장애인 차별	20-진정-0712500	11. 3.	검토중
27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미흡	21-진정-0557400	11. 3.	검토중
28	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	21-진정-0568200	11. 3.	검토중
29	경찰서 시설이용에 있어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20-진정-0472800	11. 24.	검토중
30	지자체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한 아동복지시설 취업 제한	21-진정-0326100	11. 24.	검토중
31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강제 연행 등	21-진정-0539300	11. 24.	검토중
32	한국공사의 웹 접근성 미비로 인한 장애인 차별	20-진정-0898300	12. 16.	검토중

■ 나이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고용센터 위탁기관의 나이를 이유로 한 수강 제한	21-진정-0246800	6. 29.	수용
2	지중선로 순시업무 위탁 계약 시 나이 제한	20-진정-0060500	7. 22.	수용
3	심리상담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	20-진정-0199200	10. 5.	불수용
4	회사의 나이를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 계약 배제	21-진정-0493600	12. 23.	검토중

■ 사회적 신분 등 고용상 지위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차별	19-진정-0695300	3. 2.	불수용
2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차별	20-진정-0861300	3. 2.	수용
3	지방 공기업의 연봉 책정 시 계약직공무원 경력 불인정	20-진정-0512500	3. 25.	수용
4	지자체 공사 소속 업무직에 대한 군경력 등 불인정	20-진정-0596000	4. 23.	불수용
5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20-진정-0377300	5. 20.	검토중
6	직업상담원 자격증 관련 수당 지급 차별	21-진정-0086700	6. 29.	수용
7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군복무 경력 불인정 개선 권고	21-진정-0050100 등 2건 병합	6. 29.	불수용
8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21-진정-0045900	7. 19.	불수용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9	호봉산정 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	21-진정-0161000	11. 9.	불수용
10	공무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차별	20-진정-0292100	11. 9.	검토중
11	대학의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21-진정-0058000	12. 23.	검토중

■ 종교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교사 채용 시 나이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20-진정-0067800	3. 25.	불수용
2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등	21-진정-0426300	9. 2.	수용
3	종립대학의 비종교 교과 강사 채용 시 응시 자격 제한	21-진정-0482000	9. 2.	검토중

■ 병력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불안장애 치료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20-진정-0196300	1. 22.	수용

■ 성적 지향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 등	20-진정-0642800	3. 2.	수용
2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재 거부로 인한 차별	21-진정-0674100	10. 5.	불수용

■ 출신국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외국인 강사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학원 강사 자격기준 차별	19-진정-0862400	6. 29.	불수용



■ 혼인 여부, 가족상황, 외모, 신체조건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시 비혼·독신자 차별	19-진정-0545500	4. 23.	수용

■ 학력, 학벌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21-진정-0043600	6. 29.	수용
2	지자체의 재능봉사 장학생 지원자격 제한	21-진정-0460000	11. 9.	검토중

■ 전과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전과를 이유로 한 운전업무 채용 거부	20-진정-0563700	7. 22.	수용
2	운수회사의 전과 경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시정 권고	21-진정-0283200	11. 9.	검토중

■ 기타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20-진정-0243400	3. 2.	불수용
2	공공기관의 직급별 정년 차등 적용	21-진정-0512200	9. 2.	수용
3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단독 응시 채용절차 취소	21-진정-0483300	10. 5.	수용

라.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 직권조사

연번	제목	직권조사 개시결정	조사 대상 기관
1	군 장병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직권조사	4. 1.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등
2	교정시설 내 중증질환수용자 사망관련 직권조사	6. 4.	○○○○구치소 등
3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8. 17.	국방부, 국방부○○단,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등
4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12. 16.	○○경찰서, ○○중학교, ○○교육지원청

■ 방문조사

연번	방문조사명	방문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1	2021년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1 ~ 3월	○○○종합지원센터 2개
2	2020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3 ~ 11월	아동양육시설 7개
3	2021년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3 ~ 11월	한국○○○○복지공단 등 5개 민간법인시설 4개
4	2021년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5 ~ 11월	법인시설 8개, 개인시설 2개
5	2021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9 ~ 10월	○○외국인보호소 등 5개 기관
6	2021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9 ~ 11월	육군 제○2사단, 육군 제○5사단, 육군 제○8사단, 국방부 ○○○○단, 공군 제○비행단, 해병대 제○사단
7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10 ~ 11월	해양경찰서 4개



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현황

연번	과제명	수행기관	기간
1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사단법인 두루	4. 22.~10. 18.
2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6. 17.~12. 20.
3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1.~12. 22.
4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	6. 16.~12. 20.
5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사단법인정보인권연구소	6. 24.~10. 22.
6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한국정보경영평가㈜	7. 21.~12. 17.
7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단법인 참세상	4. 26.~11. 29.
8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6. 22.~12. 14.
9	2021년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6. 22.~11. 30.
10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제학회	7. 7.~11. 30.
11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6. 25.~12. 17.
12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6. 29.~12. 17.
13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6. 21.~12. 17.
14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4. 26.~11. 21.
15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4. 26.~11. 21.
16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5. 18.~11. 12.
17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10.~10. 30.
18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평화인권교육센터	4. 22.~10. 8.
19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4. 27.~10. 23.
20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6. 10.~11. 7.
21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방법 연구용역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 18.~12. 13.
22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7. 5.~12. 24.
2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6. 17.~12. 13.

7. 2021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가.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연번	회의명	출장기간(기간)	출장지/방식	출장자(참가자)
1	제11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3. 29.	화상회의	위원장 외 2명
2	APF 여성 지도자 포럼	4. 15.	화상회의	비상임위원 외 1명
3	APF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4. 27.	화상회의	위원장 외 3명
4	APF 사무총장 네트워크 회의	6. 22.	화상회의	국제인권과장 외 1명
5	202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6. 29. ~ 7. 1.	화상회의	국장 외 2명
6	제26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APF) 연례회의	9. 15. ~ 9. 16.	화상회의	위원장 외 3명
7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12. 14.	화상회의	위원장 외 3명
8	APF 포럼 이사회 회의	12. 14.	화상회의	정책국장 외 1명

나.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

연번	회의명	일시/장소
1	제20차 ASEM 인권세미나(노인 인권)	2. 22. ~ 2. 24. /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화상회의)
2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	8. 24.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화상회의)



8. 위원회 간행물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연간 보고서 · 백서	1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기획재정담당관	5월
	2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기획재정담당관	7월
	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20	기획재정담당관	7월
	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 2019-202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12월
결정례집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3집(2020)	행정법무담당관	8월
	6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2011-2021)	인권침해조사과	12월
실태조사보고서 · 연구용역보고서	7	2020 국가인권통계 심층보고서	기획재정담당관	12월
	8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기획재정담당관	12월
	9	2021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권조사과	11월
	10	2021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아동청소년인권과	11월
	11	공공 홍보물의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7월
	12	공공기관 홍보물 장애차별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7월
	13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교육기획과	10월
	14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교육기획과	11월
	15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사회인권과	10월
	16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회인권과	12월
	17	돌봄과 인권 교재 개발 연구	인권교육기획과	10월
	18	생활물류센터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회인권과	12월
	19	성별 관련 공공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적용 및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7월
	20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성차별시정팀	12월
	21	스포츠인권 현장 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12월
	22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2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권교육기획과	12월
	24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인권교육기획과	12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25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3월	
	26	온라인 인권교육 가이드북 교재 개발 연구	인권교육운영과	9월	
	27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5	혐오차별대응기획단	5월	
	28	인권NAP 권고 등 북한인권 관련 국가정책 분석 연구용역	인권정책과	11월	
	29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권교육운영과	12월	
	30	인권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기획과	8월	
	31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차별조사2과	12월	
	32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장애차별조사1과	12월	
	33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교육기획과	10월	
	34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획조사팀	12월	
	35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36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사회인권과	12월	
	37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차별시정팀	12월	
	38	한국의 인권통계 2021	기획재정담당관	12월	
	교육 자료	39	교사·인권교육·하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	인권교육기획과	11월
		40	놀이로 배우는 인권: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도구	인권교육기획과	11월
		41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인권교육운영과	10월
		42	혐오차별 대응하기: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인권교육기획과	11월
자료 집	43	2021 노인인권포럼	사회인권과	12월	
	44	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1월	
	45	2021 인권옹호자회의	홍보협력과	8월	
	46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기획재정담당관	12월	
	47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사회인권과	12월	
	48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	사회인권과	8월	
	49	부울경 장애인기본계획 개선방안 등 정책토론회	부산인권사무소	12월	
	50	탈시설 흐름 속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도전과 과제-「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기념 토론회	대구인권사무소	4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일반 단행본	51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2001~2021	기획재정담당관	11월
	52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콘텐츠 Fact Book: 콘텐츠 정보편람	인권교육운영과	11월
	53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2021.12.)	행정법무담당관	12월
	54	노년기, 건강과 인권	인권교육기획과	12월
	55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헌 자료집	사회인권과	12월
	56	유럽 차별금지법에 대한 핸드북. 2018년판	국제인권과	12월
	57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증오표현(전3권)	인권교육기획과	12월
	58	유엔 북한인권결의안(2003~2020)	인권정책과	2월
	59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21 개정판)	국제인권과	11월
	6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2021 개정판)	국제인권과	11월
	6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고문방지위원회 일반권고(2021 개정판)	국제인권과	11월
	62	인식의 전환: 권리에 기반한 고령화에 대한 접근	국제인권과	12월
	63	있지만 없는 아이들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창비 발간	인권침해조사과	6월
	64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장애차별조사2과	4월
	65	지방자치단체 인권 정책 안내서. 2021	인권정책과	12월

9. 보도자료

연번	배포일	제목
1	1. 4.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2	1. 6.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3	1. 11.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의견표명
4	1. 13.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5	1. 14.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 환영 성명
6	1. 20.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7	1. 22.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8	1. 25.	인권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9	2. 3.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10	2. 4.	“김진숙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11	2. 8.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12	2. 9.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13	2. 10.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등 권고
14	2. 16.	2021년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15	2. 17.	정신의료기관 ‘필요시(PRN) 강박 처방’ 개선 권고
16	2. 18.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17	2. 19.	윤석희 인권위원(비상임) 임명
18	2. 25.	“정신재활시설 절반, 서울·경기권에 편중”
19	2. 26.	인권위·기자협회, 제10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20	2. 26.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이제는 멈춰야 한다
21	3. 2.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22	3. 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 마련해야”
23	3. 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앱의 아동·청소년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24	3. 3.	고 ○○○ 피해, 지자체의 체전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도 원인



연번	배포일	제목
25	3. 4.	“강제퇴거 관련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26	3. 4.	당당한 군인이었던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27	3. 8.	최영애 위원장, 장애인 탈시설 인권현장방문
28	3. 8.	임의 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 지침 및 시설환경 개선 권고
29	3. 9.	인권위,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30	3. 18.	인권위원장, 국가인권기구연합에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 대응 요청
31	3. 19.	“이주민을 분리, 구별하는 정책, 인종차별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어”
32	3. 22.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33	3. 23.	인권위원장,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참석
34	3. 24.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35	3. 29.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 차별 대응 콘텐츠 공모전’ 개최
36	3. 30.	인권위원장,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여
37	3. 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38	3. 31.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39	4. 5.	인권위, 2021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40	4. 5.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41	4. 6.	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42	4. 6.	“대학 운동부 내 폭력 유발하는 통제 문화와 관행 개선 시급”
43	4. 7.	경북대학교병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대한 차별 해소 권고 불수용
44	4. 8.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관련 26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한다”
45	4. 8.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46	4. 12.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47	4. 13.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 발간
48	4. 14.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신규 인권교육 과정 개설
49	4. 14.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50	4. 15.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종합대책 수립 권고

연번	배포일	제목
51	4. 20.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52	4. 21.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53	4. 22.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54	4. 29.	군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55	5. 3.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56	5. 4.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 등 영·유아 상품 성별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할 수 있어”
57	5. 6.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58	5. 6.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59	5. 11.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관련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
60	5. 11.	국가인권기구연합, 국가인권위원장의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응 요청에 응답
61	5. 12.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 근무 장소 분리하더라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돼”
62	5. 13.	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해야
63	5. 18.	강원관광대학교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수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권고 불수용
64	5. 24.	“대학교의 대체과목 제공 없는 채플 참석 강요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65	5. 24.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66	5. 25.	“건강보험료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 가능해야”
67	5. 26.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68	5. 2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69	5. 27.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70	6. 3.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71	6. 4.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십 연수 과정 실시
72	6. 7.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기혼여성에 대한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
73	6. 8.	“개인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74	6. 8.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75	6. 8.	군 내 인권침해 지속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피해자 보호와 적극적 외부통제 위한 군인권 보호관 도입 촉구



연번	배포일	제목
76	6. 9.	“평화적 1인 시위, 미 대사관저 앞이라도 보장해야”
77	6. 9.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78	6. 10.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79	6. 14.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80	6. 14.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불수용
81	6.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들어가
82	6. 15.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83	6. 16.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선해야”
84	6. 16.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차별 대응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발표
85	6. 1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해야”
86	6. 18.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 현장 방문
87	6. 18.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88	6. 21.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89	6. 23.	N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 일부 수용
90	6. 24.	“사관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인권침해”
91	6. 28.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92	6. 29.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최
93	6. 29.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94	6. 30.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95	7. 5.	“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현 군번표기 방식,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96	7.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군에 송두환, 안진, 염형국, 정강자 추천
97	7. 6.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98	7. 7.	“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되지 않아야”
99	7. 7.	제19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100	7. 8.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의 평등권 보장해야”
101	7. 12.	전 서울시장 직권조사 피권고기관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연번	배포일	제목
102	7. 13.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인권 침해”
103	7. 14.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등 마련 권고 불수용
104	7. 1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105	7. 15.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 ‘불수용’
106	7. 19.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107	7. 20.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를 전가하는 것은 인권침해”
108	7. 21.	“군 내 진급대상자 전원에게 대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09	7. 22.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회
110	7. 22.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111	7. 27.	“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112	7. 28.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개최
113	7. 28.	“‘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114	8. 2.	교장·교감 인권리더십 연수과정 개최
115	8. 3.	강제퇴거·철거 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이행사항 공표
116	8. 6.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인권위원 임명
117	8. 10.	“정부 홍보물,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118	8. 11.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 발표
119	8. 17.	“지적장애인 자의·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120	8. 17.	연이은 군 내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121	8. 18.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122	8. 19.	국가인권위원장-법무부장관, 인권보호 위한 공동의 노력 다짐
123	8. 20.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길 기대”
124	8. 23.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
125	8. 23.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
126	8. 24.	“지자체 시설의 남·여 공용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연번	배포일	제목
127	8. 25.	보건복지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일부수용
128	8. 25.	2021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129	8. 26.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130	8. 27.	국가인권위원회 김수정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131	8. 27.	아프간인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132	8. 3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 개최
133	8. 31.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요 피권고기관 수용
134	8. 31.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135	9. 1.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136	9. 2.	국민 10명 중 9명, “정치인, 언론 혐오표현 자제해야”
137	9. 3.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 필요”
138	9. 3.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139	9. 6.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140	9. 8.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141	9. 8.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142	9. 9.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143	9. 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144	9. 15.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145	9. 17.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46	9. 28.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147	9. 2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148	9. 29.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및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관행 개선해야”
149	9. 29.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150	9. 29.	인권위-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인권 현안 논의
151	9. 30.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152	9. 30.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연번	배포일	제목
153	10. 1.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154	10. 1.	“빈곤, 자살,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성 심화, 노인 인권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155	10. 5.	“지방의회의원, 인권 중심 의정활동 배운다”
156	10. 6.	“지방의회 의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하지 말아야”
157	10. 6.	“사륜오토바이 단독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차별”
158	10. 7.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및 관리·협력 체계 구축해야”
159	10. 13.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권고’에 대한 정부의 일부수용 공표
160	10. 14.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161	10. 15.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162	10. 19.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한 광주보건대학교의 이행사항 공표
163	10. 19.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64	10. 21.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165	10. 29.	0000공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166	11.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권고 수용
167	11. 2.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168	11. 2.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제공해야”
169	11. 3.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수용 공표
170	11. 3.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중단, 관련 규정 개선 필요”
171	11. 4.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해야”
172	11. 10.	부대 내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173	11. 10.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74	11. 16.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권고, 교육부 및 7개 시·도 교육감 수용
175	11. 16.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176	11. 1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팩트북 발간
177	11. 17.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178	11. 18.	군 내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을 배제하는 것은 신분에 의한 차별



연번	배포일	제목
179	11. 18.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180	11. 19.	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181	11. 23.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182	11. 23.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격리강박 관행개선 권고 수용
183	11. 24.	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 개선 권고, 파견고기관 수용
184	11. 2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185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186	11. 29.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187	11. 29.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188	11. 29.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189	11. 30.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190	11. 30.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191	12. 1.	인권위, 서울시에너지공사에 운영지원직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권고
192	12. 1.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10. 사진으로 보는 2021년



» 제10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3월 5일 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0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참석

3월 22일 최영애 위원장은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UNESCO) 주최로 열린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Global Forum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에 화상회의로 참여하였다.



» 이용수 인권활동가 인권위원장 면담

3월 26일 최영애 위원장은 이용수 인권활동가와 위안부 문제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 제1차 노인인권포럼 개최

4월 20일 위원회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제1차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고 노인인권의 국제적 흐름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광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5월 17일 최영애 위원장, 이상철 상임위원은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 국립5.18민주묘지 방문

5월 18일 최영애 위원장, 이상철 상임위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였다.



≫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5월 25일 위원회는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6월 2일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하였다.



≫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6월 8일 위원회는 위원회 14층 전원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 개최

6월 11일 위원회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대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6월 17일 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상임위원, 이상철 상임위원은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하였다. 18일에는 천안교도소 내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관 환경, 급식상황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보고, 복무당사자 및 복무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위원회와 법무부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6월 30일 입법예고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9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7월 7일 위원회는 제19차 한국인권교육포럼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이 스며들다”를 개최하였다.



❖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8월 24일 위원회는 유럽연합(EU),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인권단체, 학계,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난민·이주민 등의 인권보호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한 주요 국가의 성과와 도전사항을 공유하였다.



❖ 2021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8월 25일 위원회는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와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1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9월 6일 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취임하였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 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인권 현안 논의

9월 29일 송두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합동위원회 논의 경과를 경청하고, 군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였다.



2021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11월 16일 위원회는 2021년도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송두환 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11월 23일 송두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11월 25일 위원회는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표어 아래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기념식을 통해 설립 이후 2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고,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11월 29일~30일 위원회는 양일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과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12월 3일 위원회와 법무부는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서울 중구 소재)에서 'ESG 시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과제: 보호·존중·구제의 이행'을 주제로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주노동자 쉼터 방문

12월 7일 송두환 위원장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이주노동자 쉼터를 방문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 인권 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개최

12월 10일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11. 위원회 소관 법규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 2. 4.	행정법무담당관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017. 5. 29.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7.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20)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2016. 5. 4.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2005. 7. 6.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2012. 11. 23.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2018. 8. 27.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5. 19.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9. 2. 22.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019. 8. 19.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2017. 6. 13.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2017. 6. 13.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2011. 1. 28.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2020. 7. 10.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7. 6. 13.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2021. 3. 1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2019. 10. 25.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2017. 6. 13.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2017. 10. 23.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10. 8. 2.	행정법무담당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2017. 6. 13.	운영지원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2017. 6. 13.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2019. 10. 4.	조사총괄과 차별시정총괄과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49)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근로자 운영규정	2021. 3. 1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2019. 5. 1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2019. 1. 1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2021. 4.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2011. 9. 2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21. 6. 28.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2018. 7. 2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2009. 7. 27.	조 사 총 괄 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2012. 10. 1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2015. 2.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2021. 3. 1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2021. 3. 15.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21. 4. 2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21. 7. 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2021. 5. 27.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016. 3. 30.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2016. 9.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2020. 1. 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021. 3.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2021. 3. 15.	기획재정담당관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4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2021. 3. 15.	인권교육운영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2017. 6. 8.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2021. 3. 1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2020. 11. 26.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2021. 3. 15.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2018. 7. 24.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2021. 3. 1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2021. 12. 21.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2019. 9. 1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021. 3. 1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2021. 3. 15.	기획재정담당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2014. 11. 21.	운영지원과
	민간보조금 운용에 관한 규정	2020. 2. 25.	홍보협력과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2021. 3. 15.	인권상담조정센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2019. 2. 7.	기획재정담당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2019. 11. 14.	기획재정담당관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2012. 5. 2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2021. 8. 30.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2015. 6. 12.	홍보협력과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2018. 7. 9.	홍보협력과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2019. 3. 7.	조사총괄과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4. 1.	운영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 4. 1.	운영지원과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예 규 (22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2021. 3. 1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4. 11. 21.	정보화관리팀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2012. 8. 6.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2015. 6. 9.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2021. 3. 1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2014. 10.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2021. 5. 13.	인권교육운영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2019. 10. 1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2014. 5. 27.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21. 4. 2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2015. 3. 17.	운 영 지 원 과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2017. 6. 1.	인 권 정 책 과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2018. 8. 14.	행정법무담당관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2021. 3. 15.	행정법무담당관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2013. 4. 11.	운 영 지 원 과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2018. 7. 9.	홍 보 협 력 과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2021. 3. 15.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2021. 3. 15.	기획재정담당관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2009. 9. 24.	행정법무담당관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2018. 7. 25.	인권상담조정센터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2013. 3. 4.	운 영 지 원 과	

12. 위원회 활동일지

2021년 1월

- 1월 4일 • 2021년 시무식 및 국립묘지 참배
- 1월 26일 • 위원장,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면담
- 1월 28일 • 제1차 지역인권전문위원회

2021년 2월

- 2월 2일 •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단식 농성장 방문
- 2월 5일 •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2월 19일 • 윤석희 신임 인권위원 임명
- 2월 22일 • 제20차 ASEM 인권세미나 공동 개최
- 2월 24일 • 제1차 성평등포럼 개최
- 2월 25일 •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2021년 3월

- 3월 4일 • 고(故) 변희수 하사 관련 위원장 성명 발표
- 3월 4일 •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 위원장, 상임위원 인권현장 방문
- 3월 4일 • 장애인 탈시설 인권현장 방문
- 3월 12일 •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3월 15일 • 제1차 인권교육전문위원회
- 3월 17일 • 상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온라인 의견 수렴(~3. 31.)
- 3월 18일 • 위원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및 인권탄압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 및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에게 송부



- 3월 25일 • 위원장, 주한 스웨덴 대사 면담
- 3월 29일 • 제1차 정보인권포럼 개최
- 3월 29일 •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
- 3월 30일 • 제15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 3월 30일 • 2021년 제1차 군인권포럼 개최

2021년 4월

- 4월 2일 • 정신장애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 4월 9일 •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4월 20일 • 주한 영국대사관과의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 4월 23일 • 위원장,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 4월 28일 • 제1차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4월 28일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4월 28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3주년 기념 토론회(대구)
- 4월 30일 • 제2차 지역인권전문위원회

2021년 5월

- 5월 7일 • 제4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5월 7일 • 제1차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 5월 21일 • 위원장, 주한 호주 대사 면담
- 5월 25일 •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5월 26일 • 제2차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 5월 28일 • 제2차 정보인권포럼 개최
- 5월 31일 • 상반기 군인권교육협의회

2021년 6월

- 6월 8일 •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6월 10일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6월 11일 • 제5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6월 11일 •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 개최
- 6월 18일 • 천안교도소 대체복무 현장 방문
- 6월 29일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참석(~7. 1.)
- 6월 30일 • 제3차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 6월 30일 • 제2차 성평등포럼 개최

2021년 7월

- 7월 5일 •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인권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7월 7일 • 제20차 한국인권교육포럼
- 7월 8일 •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7월 9일 • 제1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2021년 8월

- 8월 6일 • 남규선 신임 상임위원 임명
- 8월 10일 • 제3차 정보인권포럼 개최
- 8월 13일 • 제7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8월 17일 •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개시
- 8월 18일 • 제3차 지역인권전문위원회
- 8월 24일 •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8월 25일 • 2021 인권옹호자회의
- 8월 25일 • 제4차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 8월 26일 • 제2차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8월 27일 • 김수정 신임 인권위원 임명
- 8월 31일 • 대전인권사무소-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진행

2021년 9월

- 9월 6일 •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
- 9월 10일 • 제8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9월 15일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APF) 연례회의 참석(~9. 16.)
- 9월 23일 • 군 훈련소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 9월 28일 • 제3차 성평등포럼 개최
- 9월 29일 •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2021년 10월

- 10월 8일 • 위원장, 주한 독일 대사 면담
- 10월 14일 • 2021년 아동인권전문위원회
- 10월 15일 • 한석훈 신임 인권위원 임명
- 10월 15일 • 제9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11월 26일 • 제2차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10월 26일 • 대학인권센터협의회
- 10월 29일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 개최

2021년 11월

- 11월 5일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 11월 12일 • 제10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11월 16일 •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11월 18일 • 제3차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11월 19일 • 위원장, 주한 미국 대사대리 면담
- 11월 22일 • 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11. 24.)
- 11월 24일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쟁점 간담회 개최
- 11월 25일 • 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11월 29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11. 30.)
- 11월 30일 • 제2차 인권교육전문위원회

2021년 12월

- 12월 7일 • 이주노동자 쉼터 방문
- 12월 7일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인재근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 12월 8일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 12월 8일 •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정책 모니터링 토론회 개최
- 12월 9일 • 제2회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회 “우리들 스스로!”(정신장애인가본법 제정연대 공동주최)
- 12월 10일 •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개최
- 12월 10일 • 제4차 정보인권포럼 개최
- 12월 10일 • 제4차 성평등포럼 개최
- 12월 14일 •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 A등급 확정
- 12월 14일 •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선출
- 12월 17일 • 제11차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12월 22일 • 하반기 군인권교육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2021 연간보고서

|인쇄일| 2022년 4월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인| 송두환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우) 04551
|전화| (02) 2125-9793
|팩스| (02) 2125-0913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주)서일미디어 (02) 503-4800

ISSN 1975-3128

비매품